

최	종
보	고
서	

양식어업의 규제개선 방안

2011. 10.

농림수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양식어업의 규제개선 방안」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0월

연구진

연구 책임자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이광남

참여 연구진

박광호, 이순태, 정진호, 김민주,

김태국, 최진영, 이상주

< 요 약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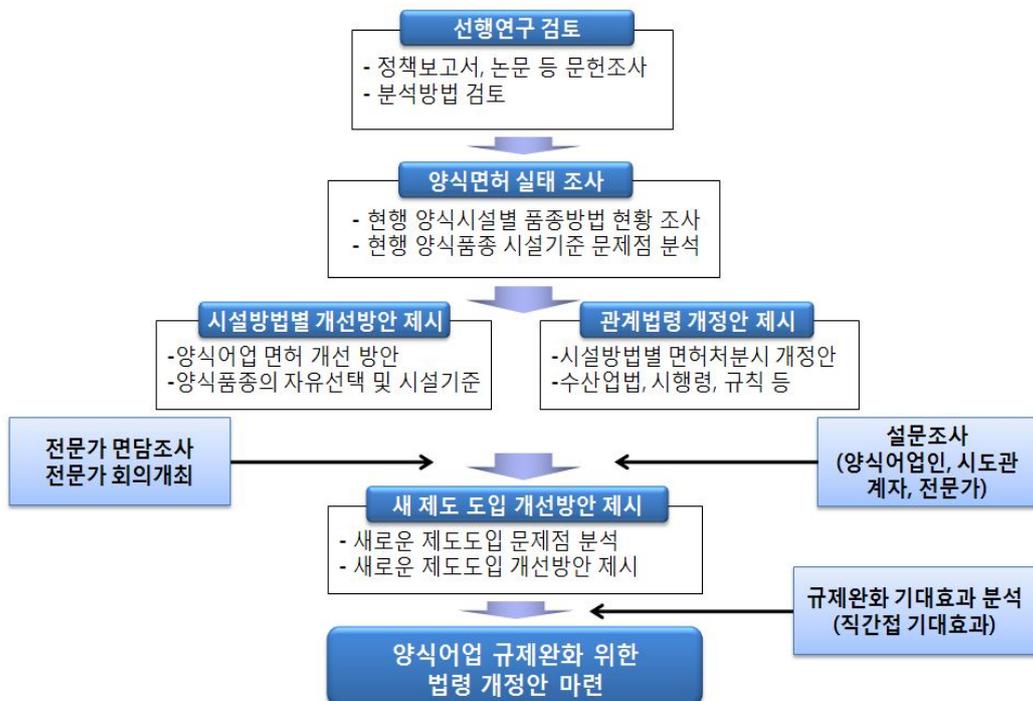
- 어업면허제도가 제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면허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양식 산업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 현실에 맞는 법령개정을 통하여 양식생산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어업환경의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업인이 원하는 품종 등에 대하여 자유로이 선택하여 양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제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양식어업과 관련된 제도를 검토하고, 어업현실에 있어서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성 및 효율성이 높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양식어업 관련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품종의 자유선택 등 규제완화를 위한 수산업법 등 법령 개정안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표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구분	내용
연구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장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 - 제도상 규정하고 있는 양식 시설기준(시설규모 및 어장면적 시설비율)은 어업현실과 맞지 않아 어촌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인식 - 면허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양식 산업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 현실에 맞는 법령개정을 통하여 양식생산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나라 양식어업과 관련된 제도를 검토 - 어업현실에 있어서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성 및 효율성이 높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 현행 양식어업의 품종별 면허를 개선하여 품종의 자유선택 등 규제완화를 위한 수산업법 등 법령 개정안을 마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서론, 제2장의 양식어업 현황 분석, 제3장 규제완화의 이론 및 국외사례 분석, 제4장 양식어업 규제관련 인식도 분석, 제5장 양식어업 면허와 관련한 규제개선 방안 제시, 제6장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추정으로 이루어짐
- 연구 추진에 사용된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분야별 전문분야 연구진 구성을 통한 유기적 연구체제로 연구의 품질을 높였으며, 둘째, 객관적 근거 자료에 기초한 계량 분석을 실시하였음. 셋째, 현지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한 현지 전문가 및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의 결과의 현실성을 제고하였음. 넷째, 연구품질 및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담당 분야별 연구 추진현황에 대해 연구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참여 연구진이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품질을 향상시킴



<그림 1> 연구 추진 흐름도

제2장 양식어업 현황 분석

제1절 양식어업의 법적 성격

- 우리나라에 있어서 양식어업에 규제와 관련된 법·제도는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들 수 있음

양식어업 구분 규정	양식어업 종류 규정	양식방법의 규정
수산업법 제8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18조, 별표2,5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양식어업 등 규정	수하식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가두리양식어업 등 규정	건홍식, 투석식 등 규정
양식물의 규정	양식시설의 규정	기타 규정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18조, 별표2,5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10조, 별표2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15조, 별표5
김, 파래, 미역, 다시마 등 세부 품종 규정	양식시설물의 규모 및 어장 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 등 규정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등 규정

<그림 2> 양식어업의 규제분류

제2절 양식어업 법·제도 문제점

1. 현실과 맞지 않은 양식물 품종의 문제

- 현장에서는 기후와 해류의 변화에 따라 양식방법별로 규정하고 있는 양식물이 현실과 맞지 않아 어업을 영위하지 않는 유휴어장 및 불법적으로 양식물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양식어업의 구분상 동일구분 내에서는 대부분의 어업 및 양식방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양식물에 ‘ 그 밖의 해조류, 패류, 어류’란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양식물의 규정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현실과 맞지 않은 양식 시설물의 문제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및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시설기준(시설규모,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이 양식현실과 맞지 않아 불법어업 및 부정시설물, 과잉시설 등 문제 발생

3. 양식기술에 따른 어장수심의 지정문제

- 해역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식기술이 개발되고 이에 따라 양식업자들은 양식을 하고 있으므로 양식어업의 어장수심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 특히 동일한 권역(서해안 및 동해안, 제주)에서도 해역에 특성에 따라 양식 어장의 수심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적으로 수심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4. 어업규제상 중복성 문제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별표 2]와 [별표 5]에서 양식물, 양식 방법 등 중복되어 규정되고 있어 혼란 초래

제3장 규제완화 이론 및 국외사례 검토

제1절 규제완화의 이론적 배경

1. 규제의 정의 및 분류

- 정부는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 향상 등 각종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도를 설정하거나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며, 정부가 사용하는 이러한 모든 정책 운용수단을 광의 규제라 함. 즉 정부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
- 규제는 목적에 의해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분류됨
 - 경제적 규제 : 시장진입, 가격 및 수량 규제의 형태로 시장기구에 관여하는 규제
 - 사회적 규제 : 환경의 질, 안전, 보건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정된 조치
 - 행정적 규제 : 정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작업이나 행정적인 요식행위

2. 규제완화 이론

- Peltzman(1989)은 규제의 정치적 과정은 물론 규제완화의 정치적 과정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주장
- Hood는 주요 생산자 집단 스스로가 규제완화에 호응하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할 때에도 규제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

3.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원칙

-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 유지. 소비자와 최종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전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가격인하 및 제품과 서비스 질의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함

- 수산분야는 양식어업의 규제가 전국적인 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해역별, 어장별 특성이 충분히 감안되지 못하고 어업인의 자율성 침해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행정적 편의에 의한 규제가 많아 신뢰성과 효과성 감소하므로 규제개선이 필요함

- 규제개선의 원칙
 - 동일목적의 중복규제를 폐지하고 여러 부처에 관련된 규제를 통합
 - 준수율이 낮은 규제는 폐지하거나 다른 합리적 규제수단을 강구
 -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관리적 규제로 전환
 -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인가와 허가조건 및 영업준수사항 등의 규제를 완화
 - 생계유지형 소규모어업의 관련규제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완화

제2절 양식제도 국외 사례분석

-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노르웨이 등 주요 수산국간의 양식방법의 규제에 관련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는 중앙단위에서 양식방법 및 시설규모를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여 일방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지방분권화가 잘 되어있어 도도부현 단위로 지역에 실정에 맞게 양식방법 및 규정이 설정되어 있음
- 또한 중국은 큰 범위에서 전반적 기준만 설정되어 있을 뿐, 양식 규모와 관련되어서는 어떠한 제한이 없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성단위에서 이루어짐
- 노르웨이는 양식경영체가 양식관련 시설을 설치, 가동, 폐기하는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환경에 대한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음

<표 2> 우리나라와 주요 수산국간의 양식방법 규제 비교

국가명	양식방법 규제현황	특징
한국	중앙단위에서 양식방법 및 시설규모를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중앙단위 일방적 규제
일본	지방분권화가 잘 되어있어 도도부현 단위로 지역에 실정에 맞게 양식방법 및 규정이 설정되어 있음	도도부현단위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
중국	큰 범위에서 전반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양식 규모와 관련되어서는 어떠한 제한이 없음	큰 틀의 기준만 있을 뿐, 세부적인 것은 성단위에서 이루어짐
노르웨이	양식경영체가 양식관련 시설을 설치, 가동, 폐기하는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율하고 있음	양식업자 개인에게 양식방법 및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나 환경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음

제4장 양식어업 규제 인식도 분석

제1절 양식어업 규제 인식

1. 설문조사 개요

- 양식어업 규제 관련 설문조사를 위해서 본 연구소에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우선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 전남지역을 중점으로 하여 전남, 경남, 경북,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대형 양식장을 위주로 실시하였음
- 양식산업규제에 관해서는 설문결과에 나타나듯이 양식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대부분이 찬성을 하였으며, 일부 지자체 공무원 일부는 양식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조업의 증가를 우려해서 반대하였음

2. 현행 규제의 적정성

- 현재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등 우리나라 양식어업에 규제에 관한 인식도 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80.9%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앞서 규제의 적정성 여부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행 양식어업과 관련한 법·제도적 규제 중 가장 규제정도가 높거나 문제점이 있는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양식물의 규정이 31.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양식어업의 구분규정 27.4%, 양식어업의 종류규정17.0%, 양식시설의 규모규정16.0% 등으로 나타났음

제2절 집단별 규제 인식

- 집단별로 양식어업 법·제도상 규제의 적정성 인식을 살펴보면 어업인의 약 92.8%가 현행 제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 연구자 순으로 분석됨
- 집단별 양식규제항목의 개선에 대한 세부 필요성 인식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남

<표 3> 집단별 양식어업 법·제도상 규제의 개선 필요성

항목 구분	집단	개선 필요성									
		←개선 불필요					개선 필요→				
양식어업 구분규정	어업인	87%	29%	29%	00%	174%	00%	29%	217%	116%	319%
	공무원	132%	105%	79%	105%	237%	26%	53%	53%	79%	132%
	연구자	222%	111%	00%	222%	167%	56%	00%	56%	56%	111%
양식어업 종류규정	어업인	87%	130%	00%	00%	29%	00%	174%	188%	188%	203%
	공무원	263%	158%	26%	79%	184%	26%	53%	79%	53%	79%
	연구자	333%	222%	167%	111%	167%	00%	00%	00%	00%	00%
양식방법 규정	어업인	116%	72%	00%	00%	29%	174%	72%	145%	174%	217%
	공무원	316%	53%	79%	79%	289%	53%	26%	00%	53%	53%
	연구자	444%	167%	56%	167%	111%	56%	00%	00%	00%	00%
양식물의 규정	어업인	87%	87%	29%	00%	29%	00%	00%	72%	362%	333%
	공무원	132%	105%	105%	53%	132%	105%	105%	105%	53%	105%
	연구자	167%	111%	00%	111%	167%	56%	00%	111%	222%	56%
양식시설 규모규정	어업인	58%	29%	29%	00%	00%	87%	29%	116%	493%	159%
	공무원	105%	105%	132%	53%	211%	184%	26%	53%	105%	26%
	연구자	222%	00%	00%	333%	111%	111%	00%	00%	222%	00%
어장면적 에 대한 시설비율 규정	어업인	87%	29%	00%	00%	58%	29%	58%	217%	174%	348%
	공무원	105%	26%	53%	158%	184%	79%	158%	105%	79%	53%
	연구자	333%	00%	00%	333%	222%	00%	111%	00%	00%	00%

제3절 규제완화 항목 결정 분석

1.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 선정 개요

- 양식어업에 있어서 제도상 주요 규제항목은 9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음. 상위규제(수산업법)와 하위규제(어업면허규칙)로 분류가 가능하며, 상위규제로 갈수록 포괄적인 특성을 가짐



<그림 3>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결정 개요

2.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별(9개항목) 규제완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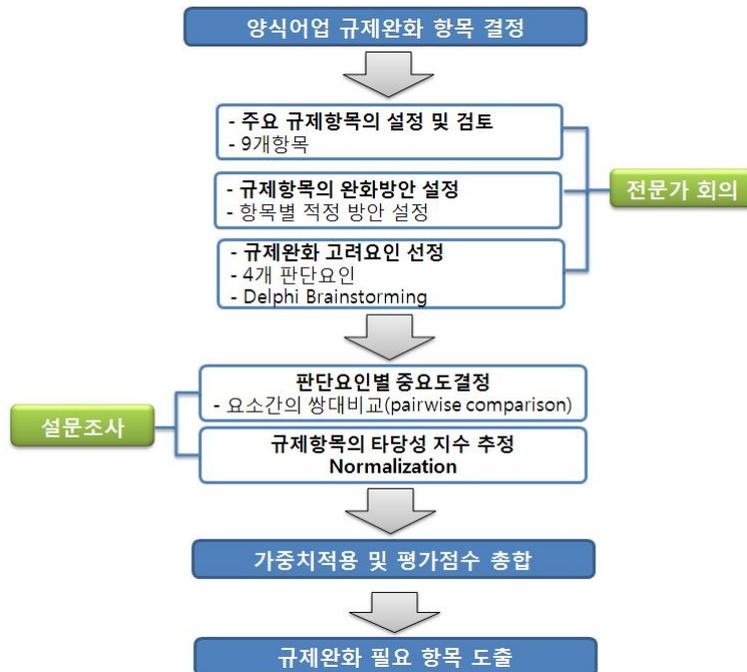
- 앞서 제시된 총 9개의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에 대하여 규제완화 방법 및 변경 시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검토하였음

<표 4>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별(9개항목) 규제완화 방법

규제완화 항목	규제완화 방법	법 개정 필요
양식어업의 구분 규정	1. 양식 구분 삭제	수산업법 제8조
양식어업의 종류 규정	2. 양식어업 종류에 포함 1. 양식어업 종류 삭제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
양식방법의 규정	1. 양식방법 규정 삭제	어업면허규칙 제10조 18조 별표 2, 별표 5
양식물	1. 양식물규정 삭제	어업면허규칙 제10조 18조 별표 2, 별표 5
시설규모	1. 시설규모 완전삭제 2. 지자체에 이관 3. 고시 등으로 시설규모 규정	어업면허규칙 제10조 별표 2
시설비율	1. 시설비율 완전삭제 2. 시설비율 하한치삭제 3. 시설비율 상한치 증가	어업면허규칙 제10조 별표 2
어장의 수심	1. 어장 수심 항목삭제 2. 고시 등으로 시설규모 규정	어업면허규칙 제15조 별표 5
어장구역 한계	1. 어장구역 한계 완전 삭제 2. 어장구역 한계 하한치 삭제	어업면허규칙 제15조 별표 5
어장사이 거리	1. 어장사이 거리 삭제 2. 어장사이 거리 축소	어업면허규칙 제15조 별표 5

3.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 선정 절차

○ 본 연구에서는 앞서 도출된 양식어업의 주요 규제항목(9개 항목)을 대상으로 각 규제항목별로 계량적 기법을 이용하여 규제완화의 필요항목을 제시하였음



<그림 4>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 선정 절차

4. 양식어업 규제완화 결정 판단요인 선정

○ 양식어업의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주요 규제항목에 대하여 ‘어떤 판단기준을 가지고 완화를 결정할 것 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Delphi Brainstorming 기법을 통해 판단요인을 총 4개로 선정하였음

<표 5> 양식어업 규제완화 결정 판단요인 선정

판단요인	내용	지수 추정방법
적정성	- 현행 규제정도가 타당한지 여부 - 어업현실에 있어서 문제점 발생 여부	설문조사 결과 (적정성 및 문제점 발생)
필요성	- 규제완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여부	설문조사 결과 (개선 필요성)
효율성	- 규제완화시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여부	설문조사 결과 (개선시 생산증가)
과급성	- 규제완하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여부(어업질서 혼란) - 제도의 변경 가능성 여부 - 양식어업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조사 결과 (Likert척도, 3개항목)

5. 양식어업 규제완화 결정 판단요인 가중치 선정

- 판단요인별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하여 동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요소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규제완화의 판단요인 중 필요성이 0.3153점으로 가장 중요도가 높은 판단요인으로 분석되었음. 결국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어서 어업인 및 관계인의 필요정도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 다음으로는 파급성, 효과성, 적정성 순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파급성의 경우는 실제적 제도의 개선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6> 양식어업 판단요인별 중요도 가중치 분석결과

판단요인 항목	적정성	필요성	효과성	파급성	종합점수	Consistency Index
점수	0.1950	0.3153	0.2165	0.2731	1	0.0013

6.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별 판단요인 추정결과

- 양식어업에 있어서 주요 규제항목에 대한 각 판단요인별 지수값의 추정을 위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가중값을 도출하여 Normalization을 통해 최소값과 최대값을 0~1사이로 추정한 결과, 적정성 측면에서는 양식물 규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식방법의 규정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7> 규제항목의 타당성 지수 추정 Normalization

구분	양식어업의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규정	양식방법의 규정	양식물	시설 규모	시설 비율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 한계	어장사이 거리
적정성	0.88	0.55	0.00	1.00	0.52	0.12	0.15	0.15	0.15
필요성	0.87	0.56	0.51	1.00	0.97	0.95	0.58	0.48	0.00
효과성	1.00	0.02	0.00	0.82	0.06	0.08	0.03	0.14	0.07
파급성	0.08	0.00	0.17	1.00	0.67	1.00	0.67	0.58	0.00

7.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 결정

- 앞서 도출된 주요규제항목의 지수값과 판단요인별 중요도 가중치를 이용하여 양식어업 규제항목에 대한 완화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양식물이 0.961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양식어업의 구분, 시설비율 순임

<표 8> 규제항목의 완화 중요도 분석결과

	양식어업 의 구분	양식어업 의 종류 규정	양식방법 의 규정	양식물	시설규모	시설비율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 한계	어장사이 거리
적정성 (0.1950 가중)	0.171	0.106	0.000	0.195	0.100	0.024	0.030	0.030	0.030
필요성 (0.3153 가중)	0.273	0.177	0.162	0.315	0.304	0.301	0.182	0.153	0.000
효과성 (0.2165 가중)	0.217	0.004	0.000	0.178	0.012	0.018	0.006	0.031	0.015
과급성 (0.2731 가중)	0.023	0.000	0.046	0.273	0.182	0.273	0.182	0.159	0.000
종합점수	0.684	0.288	0.207	0.961	0.599	0.615	0.399	0.372	0.044

- 양식어업 주요 규제항목 중 규제완화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정된 중요도 점수를 이용하여 규제완화 중점집단, 규제완화 필요집단, 규제완화 불필요집단의 3집단으로 분류를 하였음

<표 9>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 결정

구분	종합점수	순위	집단구분
양식물	0.961	1	규제완화 중점집단
양식어업의 구분	0.684	2	
시설비율	0.615	3	
시설규모	0.599	4	규제완화 필요집단
어장의 수심	0.399	5	
어장구역 한계	0.372	6	규제완화 불필요 집단
양식어업의 종류	0.288	7	
양식방법의 규정	0.207	8	
어장사이 거리	0.044	9	

제5장 양식어업 규제개선 방안제시

제1절 규제개선의 방향

1. 규제개선 주요 방향

- 양식어업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이 필요함

<표 10> 양식어업 규제개선 방향

구분	단기적 규제완화	중·장기적 규제완화
규제 완화 방향	단기적 효율성 중심 - 양식어업 구분 내에서 양식물의 규제 완화 - 시설기준 및 시설비율 규제완화 - 어장의 수심 등 규제완화 - 중복 규정 통합 - 어장구역의 한계 규제완화	중장기 양식질서 재편 중심 - 양식어업 구분 규제완화 - 양식어업 종류·방법 규제완화
	법 개정 항목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별표 5] 개정 수산업법 제8조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 양식어업의 법·제도 개선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11> 양식어업 규제개선 기대효과

구분	세부내용
효율적 생산관리	- 어업경영성 제고 -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가
양식업자의 양식 자율성 확보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양식물 선택 가능 - 양식어업인 주인의식 강화 - 어촌 정주환경 개선
정부의 행정비용의 축소	- 양식규제관련 어업인 민원 감소 - 행정처리 건수 감소
유희어장의 이용가능	- 어장관리의 효율성 확보
어업질서 확보	- 불법 및 부정 시설물의 감소 - 어업인간 상충문제 해결가능

2. 세부 규제개선 내용

- 양식어업에 있어서 세부 규제개선 내용은 양식물 및 시설기준 개선(단기)와 양식어업 구분 개선(중·장기)로 나눌 수 있음

<표 12> 양식어업 규제개선 세부항목별 검토

개선방안		비고	법률 개정
- 양식어업의 구분을 [별표 2] 및 [별표 5]의 양식어업의 종류에 포괄적으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업자의 양식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식 어업 구분 간 변경이 필요함. (어류 양식 ▶ 패류 양식 등) - 양식어업의 구분은 수산업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양식어업의 종류의 변경은 시설물의 신규제작 및 변경이 필요하므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 - 일부 양식물에 대해서 시설 기준 별도 표기 - 어업의 쏠림현상의 방지대책 필요 	수산업법 8조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및 [별표 5]의 통합		-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등 중복항목 존재. 법상 간편화를 위해 통합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8조 [별표 2],[별표 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양식물 규정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어업인의 탄력적인 양식물 선택 및 유희어장의 이용 가능 - 가이드라인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해 관리 할 수 있도록 명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별표 2],[별표 5]
- 어장구역의 한계 하한치 삭제		- 어장구역의 한계의 하한치는 어업현실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함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별표 5]
- 어장의 수심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업의 면허에서 어장의 수심을 규정할 이유는 없음. 어장간 거리 및 시설비율이 중요 (밀식 및 인근양식장으로의 영향 문제) - 가이드라인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해 관리 할 수 있도록 명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별표 5]
- 어장면적 시설비율의 완화		- 자연과학적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현재 비율의 폭을 현실적으로 완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시설규모 기준완화	지자체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규모의 기준에 대한 자연과학적 근거가 모호 - 시설의 규모는 지역적·해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표준 기준을 제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기준재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규모의 기준을 자연과학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재조정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표준 기준을 제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표 13>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

주요 규제개선 방안	단기 개선방안		중·장기 개선방안
	제1-1안	제1-2안	제2안
- 양식어업의 구분을 [별표 2] 및 [별표 5]의 양식어업의 종류에 포괄적으로 포함	×	×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및 [별표 5]의 통합	×	○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양식물 규정 삭제	○	○	○
- 어장구역의 한계(하한치 규제 삭제)	○	○	○
- 어장의 수심 삭제	○	○	○
- 어장면적 시설비율의 완화(재설정)	○	○	○
- 시설규모 기준 삭제(지자체 위임)	○	○	○

제2절 양식어업 규제개선(안) 제시

1. 단기 개선(안)

가. 별표 2, 별표 5 유지 개선안(1-1)

1) 규제개선 방안 및 장단점 분석

<표 14> 규제항목별 선택 (1-1)

개선방안	비고	법률 개정
- 양식어업의 구분	- 기존의 수산업법 제8조의 구분으로 유지	수산업법 8조
- [별표 2] 및 [별표 5]	- 기존의 별표 2와 별표 5 구분 유지 - 양식어장의 시설기준(별표2) - 양식어업의 종류, 방법, 양식물, 어장구역의 한계(별표5)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8조 [별표 2],[별표 5]
- 양식물 규정	- 양식물 품종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별표 2],[별표 5]
- 어장의 수심	- 어장의 수심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별표 5]
- 어장면적 시설비율	- 어장면적 시설비율 재설정 및 완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어장구역의 한계	- 어장구역 한계 중 하한치의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시설규모 기준	- 시설규모 기준 삭제 - 지자체에서 지침으로 규정 - 시설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표 15> 규제개선에 따른 장·단점분석(1-1)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만 변경하므로 변경에 대한 편리성을 가짐 - 양식어업 구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어업질서 혼란 약화 - 양식물 규정 삭제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양식물 선택 가능 - 시설규모 삭제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 가능 - 어장관리의 효율성 확보 (유휴어장의 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업 구분에 있어서 변경 불가능으로 어업인 자율성 제한 - 지역별·해역별 시설규모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비용 발생 - 별표2와 별표5가 기존과 같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일부 중복성 문제 발생

2) 개정안

<별표 2>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해조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 • 지주망홍 • 부류망홍 2. 연승식	5부터 18까지 5부터 18까지 5부터 10까지
나. 바닥식 양식어업	투석식 • 천 해	90 이상

2. 패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 수하연식	5부터 10까지
나. 바닥식 양식어업	• 수평망식	5부터 10까지
	2. 연승식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3. 뗏목식	3부터 10까지
	1. 살포식 • 간석지 • 천 해	90 이상 90 이상
	2. 투석식 등 • 간석지 • 천 해	90 이상 90 이상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3. 침하식 • 천 해 가두리식	5부터 10까지 5부터 20까지

3. 어류등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1. 가두리식	5부터 20까지
나. 축제식 양식어업	2. 삭제 <2010.8.5> 축제식	20 이상
다.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5부터 10까지
라. 바닥식 양식어업	살포식 • 간석지	90 이상
	• 천 해	90 이상

4. 복합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과 연승식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과 투석식	10부터 25까지 80 이상
라. 혼합양식 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5부터 18까지 80 이상
	2.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5부터 10까지 80 이상
	3. 침하식과 연승식	5부터 10까지
	4. 가두리식과 연승식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별표 5>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제18조 관련)

1. 해조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	1 이상	20까지	200 이상
	• 지주망홍 • 부류망홍	1 이상	20까지	200 이상
나. 바닥식 양식어업	2. 연승식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1. 투석식 • 천해	30까지	20까지	200 이상

2. 패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양식어업	1. 간이식	5까지	5까지	100 이상
	2. 연승식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3. 뱃목식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나. 바닥식양식어업	1. 살포식 • 간석지	100까지	20까지	100 이상
	• 천해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2.투석식등 • 간석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 천해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다.가두리식양식어업	3. 침하식 • 천해	0. 10까지 0. 10까지	0. 5까지 0. 10까지	100 이상 100 이상
	가두리식			

3. 어류등양식어업

양식어업의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가두리식양식어업	1.가두리식	0. 10까지	0. 10까지	300 이상
나. 축제식 양식어업	2.삭제 <2010.8.5> 축제식	0. 20까지	20까지	-
다. 수하식양식어업	연승식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라. 바닥식양식어업	1. 살포식 • 간석지	100까지	20까지	100 이상
	• 천해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4. 복합양식어업

양식어업의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 리 (단위 : 미터)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양식어업	1. 건홍식과 연승식	20까지	20까지	200 이상
나. 바닥식 양식어업	1.살포식과 투석식	100까지	20까지	100 이상
다. 축제식 양식어업	축제식	0. 20까지	20까지	-
라. 혼합양식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100까지	20까지	200 이상
	2. 연승식과 천해 투석식	20까지	20까지	200 이상
	3. 침하식과 연승식	0. 10까지	0. 5까지	100 이상
	4. 가두리식과 연승식	0. 10까지	0. 10까지	100 이상

3) 개정시 법·제도 개선 항목

<표 16>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1-1)

개정 전	개정 후
<p>제6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5. 양식어장의 시설량 6. 어업의 시기 7. 면허유효기간 8. 면허일자 9.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10.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p>제6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어업의 시기 5. 면허유효기간 6. 면허일자 7.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8.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p>제10조(어장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하여야 할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10조(어장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하여야 할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별표 2 이외에 시설의 규모, 시설방법 등은 가이드라인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18조(양식어업의 양식방법 등) ① 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어장의 수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범위에서 양식물의 종류, 시설방법, 어장오염의 정도, 해역별 특성과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18조(양식어업의 양식방법 등) ① 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은 별표 5와 같다.</p> <p>② 별표 5 이외에 양식물의 종류,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하한치 등은 가이드라인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나. 별표 2, 별표 5 통합 개선안(1-2)

1) 규제개선 방안 및 장단점 분석

<표 17> 규제항목별 선택 (1-2)

개선방안	비고	법률 개정
- 양식어업의 구분	- 기존의 수산업법 제8조의 구분으로 유지	수산업법 8조
- [별표 2] 및 [별표 5]	- 기존의 별표 2와 별표 5 통합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8조 [별표 2], [별표 5]
- 양식물 규정	- 양식물 품종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별표 2], [별표 5]
- 어장의 수심	- 어장의 수심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별표 5]
- 어장면적 시설비율	- 어장면적 시설비율 재설정 및 완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어장구역의 한계	- 어장구역 한계 중 하한치의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시설규모 기준	- 시설규모 기준 삭제 - 시설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해 관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표 18> 규제개선에 따른 장·단점분석(1-2)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만 변경하므로 단기적 변경 가능 - 양식물 규정 삭제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양식물 선택 가능 - 시설규모 삭제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 가능 - 어장관리의 효율성 확보 (유휴어장의 이용 등) - 별표2와 별표5가 통합하여 규칙의 간결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업 구분에 있어서 변경 불가능으로 어업인 자율성 제한 - 지역별·해역별 시설규모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비용 발생

2) 개정안

<별표 2>, <별표 5> 통합 <별표 5>

1. 해조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견홍식	5부터 18까지	1 이상	20까지	200 이상	
	• 지주망홍 • 부류망홍	5부터 18까지	1 이상	20까지	200 이상	
나. 바닥식 양식어업	2. 연승식 투석식	5부터 1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 천 해	90 이상	30까지	20까지	200 이상	

2. 패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5부터 10까지	5까지	5까지	100 이상	
	• 수하연식	5부터 10까지	5까지	5까지	100 이상	
나. 바닥식 양식어업	• 수평망식	5부터 1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2. 연승식	5부터 1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3. 뗏목식	5부터 10까지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1. 살포식	3부터 10까지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 간석지	90 이상	100까지	20까지	100 이상	
	• 천 해	90 이상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2. 투석식 등	90 이상	20까지 3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100 이상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 간석지	90 이상	20까지 3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100 이상	
	• 천 해	90 이상	20까지 3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100 이상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3. 침하식	90 이상	20까지 3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100 이상	
	• 천 해 가두리식	5부터 10까지 5부터 20까지	10까지	10까지	100 이상	

3. 어류등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1. 가두리식	5부터 20까지	10까지	10까지	300 이상	
나. 축제식 양식어업	축제식	20 이상	20까지	20까지	-	
다.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5부터 1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라. 바닥식 양식어업	살포식	90 이상	100까지	20까지	100 이상	
	• 간석지					
	• 천 해	90 이상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4. 복합어업

양식어업의종류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과 연승식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20까지	20까지	200 이상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과 투석식	10부터 25까지 80 이상	100까지	20까지	100 이상	
라. 혼합 양식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5부터 18까지 80 이상	100까지	20까지	200 이상	
	2. 연승식과 천해 투석식	5부터 10까지 80 이상	20까지	20까지	200 이상	
	3. 침하식과 연승식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0. 10까지	0. 5까지	100 이상	
	4. 가두리식 과 연승식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0. 10까지	0. 10까지	100 이상	

3) 개정시 법·제도 개선 항목

<표 19>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1-2)

개정 전	개정 후
<p>제6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 대장에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5. 양식어장의 시설량 6. 어업의 시기 7. 면허유효기간 8. 면허일자 9.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10.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p>제6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 대장에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어업의 시기 5. 면허유효기간 6. 면허일자 7.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8.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p>제10조(어장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하여야 할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10조(양식어업의 양식방법 및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하여야 할 양식어장의 시설기준 및 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별표 2 이외에 양식물의 종류, 시설의 규모, 시설방법, 어장 수심, 어장구역 하한치 등은 가이드라인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18조(양식어업의 양식방법 등) ① 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어장의 수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범위에서 양식물의 종류, 시설방법, 어장오염의 정도, 해역별 특성과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삭제)</p>

2. 중·장기 개선(안)

1) 규제개선 방안 및 장·단점 분석

<표 20> 규제항목별 선택 (2)

개선방안	비고	법률 개정
- 양식어업의 구분	- 양식어업의 구분을 [별표 2] 및 [별표 5]의 양식어업의 종류에 포괄적으로 포함	수산업법 8조
- [별표 2] 및 [별표 5]	- 기존의 별표 2와 별표 5 통합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8조 [별표 2], [별표 5]
- 양식물 규정	- 양식물 품종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별표 2], [별표 5]
- 어장의 수심	- 어장의 수심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별표 5]
- 어장면적 시설비율	- 어장면적 시설비율 재설정 및 완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어장구역의 한계	- 어장구역 한계 중 하한치의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시설규모 기준	- 시설규모 기준 삭제 - 시설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해 관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표 21> 규제개선에 따른 장·단점분석(2)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업의 구분 및 양식물규정의 삭제로 어업인의 자율성 최대 확보 - 양식물규정 삭제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양식물 선택 가능 - 시설규모 삭제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 가능 - 어장면적의 비율의 재성정으로 생산성 증대 - 어장관리의 효율성 확보 (유휴어장의 이용 등) - 별표2와 별표5의 중복부분을 통합하여 법적 간결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업의 구분 삭제로 인해 어업질서의 혼란 발생 우려 높음 - 양식어종의 쏠림현상 및 과잉양식어업 발생 우려 가능 - 지역별·해역별 시설규모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비용 발생

2) 개정안(통합 별표 5)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업 구분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어업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연승식	5부터 1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건홍식	5부터 18까지	1 이상	20까지	200 이상
		• 지주망홍	5부터 18까지	1 이상	20까지	200 이상
		• 부류망홍	5부터 18까지	1 이상	20까지	200 이상
		간이식	5부터 10까지	5까지	5까지	100 이상
		• 수하연식	5부터 10까지	5까지	5까지	100 이상
		• 수평망식	5부터 10까지	5까지	5까지	100 이상
		뗏목식	3부터 10까지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나. 바닥식 양식어업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살포식				
		• 간석지	90 이상	100까지	20까지	100 이상
		• 천 해	90 이상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투석식				
		• 간석지	90 이상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 천 해	90 이상	30까지	20까지	200 이상	
		3. 침하식				
		• 천 해	5부터 10까지	10까지	10까지	100 이상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5부터 20까지	10까지	10까지	300 이상
라. 축제식 양식어업	어류등양식	축제식	20 이상	20까지	20까지	-
마. 혼합 양식어업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건홍식과	5부터 18까지	100까지	20까지	200 이상
		살포식				
		연승식과	5부터 10까지	20까지	20까지	200 이상
		천해 투석식				
		침하식과	5부터 10까지	0. 10까지	0. 5까지	100 이상
		연승식				
		가두리식과	5부터 10까지	0. 10까지	0. 10까지	100 이상
		연승식				

제6장 규제완화 기대효과 분석

제1절 규제개선 효과 개요

- 규제의 완화는 양식경영성 제고, 생산량 증가, 행정비용 축소, 유희어장 이용 가능, 어업질서 확보, 어업인 정주성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킴

제2절 양식수산물 생산 증대 효과 추정 방법

- 규제완화에 따른 생산량 증대 효과 추정은 3단계를 따름
 - 1단계 : 생산량 증가비중 추정
 - 2단계 : 양식부류별(패류, 해조류 등 구분) 생산량 증가량 추정
 - 3단계 : 생산증가량, 생산증가금액 추정
- 규제 완화의 총합적 효과는 설문조사 생산량 증가 결과의 가중지수 전화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11.0%~13.3% 정도 현재 생산량에서 증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 규제완화시 양식수산물의 총생산에는 1,127억원 ~ 1,363억원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총 증가량은 최저 39,119톤 ~ 최대 47,315톤 증가, 총 증가금액은 최저 1,127억원 ~ 1,363억원으로 추정됨

<표 22> 증가량 및 증가금액

	최소		보통		최대	
	증가량 (톤)	증가금액 (억원)	증가량 (톤)	증가금액 (억원)	증가량 (톤)	증가금액 (억원)
패류	23,591	338	26,062	373	28,534	409
해조류	5,375	23	5,938	25	6,501	27
어류등	5,674	615	6,268	679	6,863	743
기타수산물·식물	4,479	152	4,949	168	5,418	184
합계	39,119	1,127	43,217	1,245	47,315	1,363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양식어업 현황 분석	7
제1절 양식어업의 법적 성격	7
제2절 양식어업 법·제도 문제점	14
제3장 규제완화 이론 및 국외사례 검토	21
제1절 규제완화의 이론적 배경	21
제2절 양식제도 국외 사례분석	27
제4장 양식어업 규제 인식도 분석	41
제1절 양식어업 규제 인식	41
제2절 집단별 규제 인식	49
제3절 규제완화 항목 결정 분석	55
제5장 양식어업 규제개선 방안제시	71
제1절 규제개선의 방향	71
제2절 양식어업 규제개선(안) 제시	77
제6장 규제완화 기대효과 분석	93
제1절 규제개선 효과 개요	93
제2절 양식수산물 생산 증대 효과 추정	95

<참고문헌>	99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101
<부록 2> 저지양성수산종묘관리법률	105
<부록 3> 양식어업 규제완화를 위한 설문조사	112

표 목 차

<표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표 2-1> 수산업법상 양식물 구분 규제	10
<표 2-2> 수산업법 시행령상 양식물 종류 규제	12
<표 2-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양식어업 규제	13
<표 2-4> 양식방법별 양식물의 종류 지정 현황	15
<표 2-5> 양식방법별 시설규모 현황	16
<표 2-6> 양식방법별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17
<표 2-7> 양식방법별 어장의 수심	19
<표 2-8> 양식방법 및 양식물 중복 규정 부분	20
<표 3-1> 일본어업법상 양식분류의 정의	28
<표 3-2> 양식방법분류의 정의	29
<표 3-3> 양식어종분류의 정의	30
<표 3-4> 우리나라와 주요 수산국간의 양식방법 규제 비교	40
<표 4-1> 양식어업 법·제도상 규제의 적정성 인식	42
<표 4-2> 집단별 양식어업 법·제도상 규제의 개선 필요성	51
<표 4-3>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별(9개항목) 규제완화 방법	58
<표 4-4> 양식어업 규제완화 결정 판단요인 선정	62
<표 4-5> 양식어업 판단요인별 중요도 가중치 분석결과	63
<표 4-6> 규제항목의 타당성 지수 추정 Normalization	64
<표 4-7> 규제항목의 완화 중요도 분석결과	68
<표 4-8>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 결정	69
<표 5-1> 양식어업 규제개선 방향	72
<표 5-2> 양식어업 규제개선 기대효과	73
<표 5-3> 양식어업 규제개선 세부항목별 검토	75
<표 5-4>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	76
<표 5-5> 규제항목별 선택 (1-1안)	77
<표 5-6> 규제개선에 따른 장·단점분석(1-1안)	77

<표 5-7>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1-1안)	82
<표 5-8> 규제항목별 선택 (1-2안)	83
<표 5-9> 규제개선에 따른 장·단점분석(1-2안)	83
<표 5-10>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1-2안)	86
<표 5-11> 규제항목별 선택 (2안)	87
<표 5-12> 규제개선에 따른 장·단점분석(2안)	87
<표 5-13> 수산업법 개정 내용(2안)	89
<표 5-14>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2안)	90
<표 5-15>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2안)	91
<표 6-1> 양식수산물 생산 증대 효과 추정 방법	96
<표 6-2> 부류별 증가 비중	96
<표 6-3> 증가량 및 증가금액	97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 추진 흐름도	6
<그림 2-1> 양식어업의 규제분류	9
<그림 4-1> 현행 규제의 문제점 인식정도	43
<그림 4-2> 양식어업의 구분규정 개선필요 인식	44
<그림 4-3> 양식어업의 종류규정 개선필요 인식	45
<그림 4-4> 양식방법의 규정 개선필요 인식	45
<그림 4-5> 양식물의 규정 개선필요 인식	46
<그림 4-6> 양식시설의 규모규정 개선필요 인식	47
<그림 4-7>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 규정 개선필요 인식	47
<그림 4-8> 양식어업 규제완화 시 문제점 발생 인식	48
<그림 4-9> 집단별 양식어업 법·제도상 규제의 적정성 인식	49
<그림 4-10> 집단별 양식어업 법·제도상 규제의 적정성 인식	50
<그림 4-11> 집단별 양식어업의 구분규정 개선필요 인식	51
<그림 4-12> 집단별 양식어업의 종류규정 개선필요 인식	52
<그림 4-13> 집단별 양식방법의 규정 개선필요 인식	52
<그림 4-14> 집단별 양식물의 규정 개선필요 인식	53
<그림 4-15> 집단별 양식시설의 규모규정 개선필요 인식	53
<그림 4-16> 집단별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 규정 개선필요 인식	54
<그림 4-17>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결정 개요	55
<그림 4-18>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 선정 절차	60
<그림 4-19> 설문지 예시	63
<그림 4-20> 규제항목의 타당성 지수 추정 Normalization	67
<그림 4-21>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 결정	70
<그림 6-1> 규제완화 효과	94
<그림 6-2> 양식수산물 생산 증대 효과 추정 방법	9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국내 연근해 어업에 있어서 어획량의 감소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관리와 자원의 회복정책, 허가어업의 관리 등이 중요한 정책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양식어장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음
- 최근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외적인 환경으로 수산물의 생태계 변화가 심하여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한 어업생산량이 날로 줄어들어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양식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WTO/FTA 협상으로 수산보호를 위하여 면세유를 금지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어업생산에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면세유 금지사항에 제외되어 있는 양식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대두됨
- 어업면허제도가 제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면허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양식 산업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 현실에 맞는 법령개정을 통하여 양식생산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양식어업의 종류를 법에서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양식어업자가 새로운 양식 방법을 개발하여도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여 새로운 양식 기술의 개발 저해 요소로 작용함
 - 새로운 양식품종을 개발할 경우 동 품종이 법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양식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을 저해함
 - 수산부문에 있어 양식수산물에 대한 공급의존도가 높아가면서 양식면허와 양

식물의 불일치로 인한 불법문제, 돌재, 과잉 시설 및 과밀 양식, 과다 투자 등에 의해 초래되는 양식어장 관리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한 양식면허와 양식대상물의 불일치 문제는 유힬어장 및 불법어업을 발생시키게 되며, 양식산업의 활성화 및 수산물 안정적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또한, 제도상 규정하고 있는 양식 시설기준(시설규모 및 어장면적 시설비율)은 어업현실과 맞지 않아 어촌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일부 어업인들은 불법시설물임을 인지하면서도 생계유지를 위하여 불법어업을 행하고 있음
 - 양식어업권은 법 및 시행령상 규정한 양식어업의 종류 내에서 규칙에서 규정한 양식방법과 양식물이 지정된 극히 제한된 어업권으로, 양식물의 선택은 철저하게 양식어업자가 시장예측을 통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이를 법으로 지정함으로써 양식업자의 자율성을 저해함
- 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식어장 및 품종, 시설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나 현재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음.
 - 양식어업의 구분 규정(수산업법 제8조) :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양식어업 등 규정
 - 양식어업의 종류 규정(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 : 각 양식어업 구분별 수하식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가두리양식어업 등 규정
 - 양식방법의 규정(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8조 및 별표2, 별표5) : 건홍식, 투석식 등 규정
 - 양식물의 규정(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8조 및 별표2, 별표5) : 김, 파래, 미역, 다시마 등 세부 품종 규정
 - 양식시설의 규정(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별표2) : 양식시설물의 규모 및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 등 규정
 -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등 규정(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별표5)

- 어업환경의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업인이 원하는 품종 등에 대하여 자유로이 선택하여 양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제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농수산어촌현장 애로 및 규제개선 지시(국무총리, '10.6)

2. 연구 목적

- 현재 우리나라 양식어업과 관련된 제도를 검토하고, 어업현실에 있어서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성 및 효율성이 높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 현행 법·제도에 있어서 규제정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이와 더불어 양식어업에 있어서 규제완화를 통한 기대효과를 정성적·정량적 방법으로 추정하여 제도개선의 타당성을 검토
- 양식어업 관련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품종의 자유선택 등 규제완화를 위한 수산업법 등 법령 개정안 마련하는데 기초자료 제공

<표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구분	내용
연구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장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 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 - 제도상 규정하고 있는 양식 시설기준(시설규모 및 어장면적 시설비율)은 어업현실과 맞지 않아 어촌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인식 - 면허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양식 산업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 현실에 맞는 법령개정을 통하여 양식생산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나라 양식어업과 관련된 제도를 검토 - 어업현실에 있어서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성 및 효율성이 높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 현행 양식어업의 품종별 면허를 개선하여 품종의 자유선택 등 규제완화를 위한 수산업법 등 법령 개정안을 마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 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제1장 서론에서는 양식어업 규제 개선에 있어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등을 검토하였음
- 제2장의 양식어업 현황 분석에서는 현행 양식어업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 하였으며, 현행 법·제도 상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 양식어업권의 법적 성격 검토 및 규제완화 측면에서 양식어업의 위치 등 분석
- 제3장 규제완화의 이론 및 국외사례 분석에서는 행정학적 측면 및 사회적 관점에서의 규제완화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으며, 양식어업과 관련한 국 외 선진국의 제도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제4장 양식어업 규제관련 인식도 분석에서는 어업인, 관련 공무원, 연구자의 세 집단에 대해서 현행 양식어업 규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양식어업 규제항목별 개선 필요성, 규제완화 시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하였음
 - 분석은 집단별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수화를 통한 집단별 비교분석을 하였음
- 이와 더불어 규제완화 항목 결정 분석을 실시하였음. 총 9개의 주요 규제항 목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근거로 규제완화 방법을 검토하 였으며, 규제완화 항목 선정에 위하여 판단요인 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이용하여 계량적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음
 - 규제완화 결정 판단요인인 적정성, 필요성, 효율성, 파급성에 대하여 각 주요 규제완화 항목별로 지수화를 실시하여 비교분석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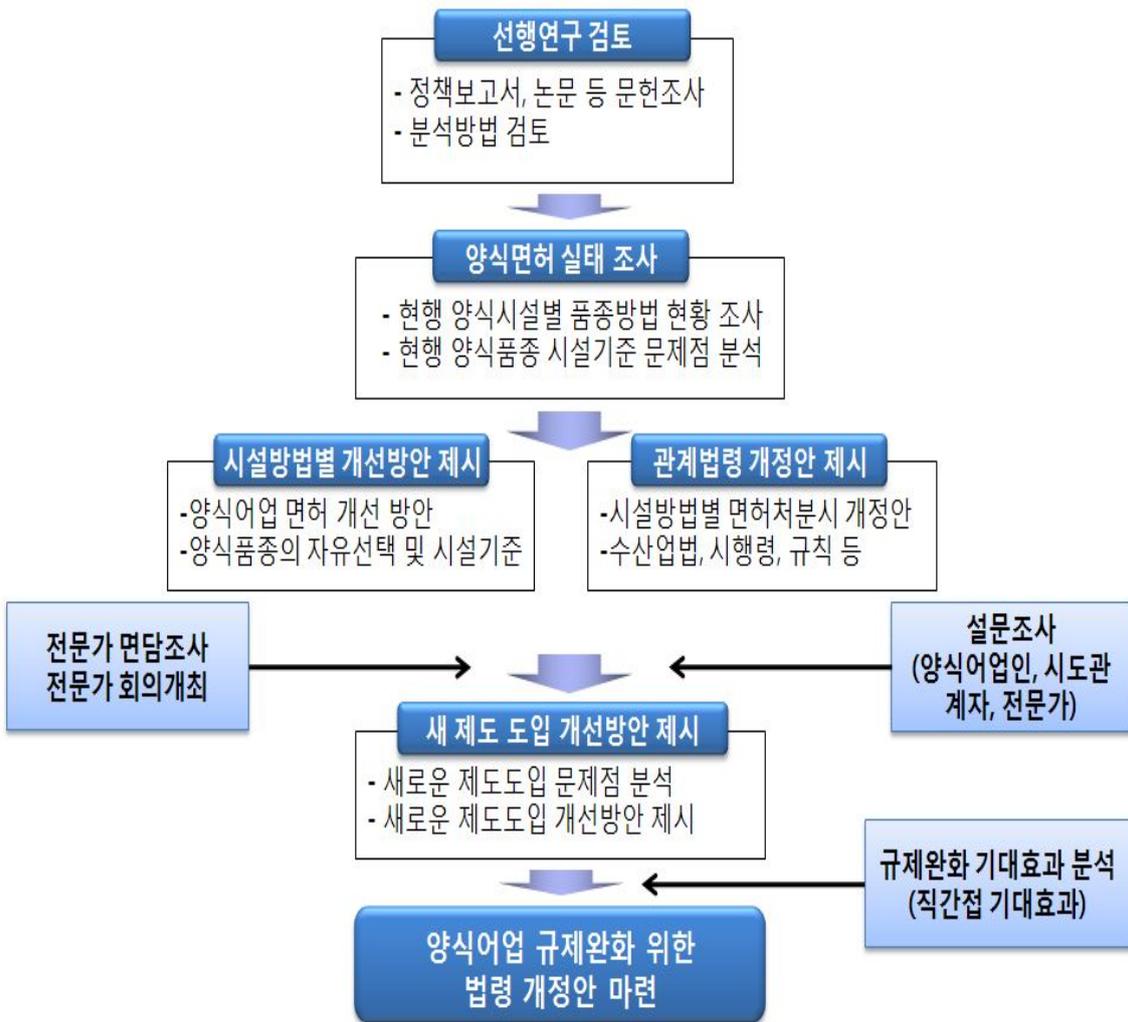
- 제5장에서는 양식어업 면허와 관련한 규제개선 방안을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규제개선 방안별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였음. 또한 규제개선 방안별로 관계법령 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였음
- 제6장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추정하였으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주요 효과로 양식수산물 생산 증대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였음

2.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사용된 연구의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분야별 전문분야 연구진 구성을 통한 유기적 연구체제로 연구의 품질을 높였음.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양식어업 및 법·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이러한 전문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연구자들을 연구진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음.
- 둘째, 객관적 근거자료에 기초한 계량 분석을 실시하였음.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기존의 선행연구 및 보고서, 관련기관 및 세미나자료, 외국 전문기관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최신의 자료를 수집·활용하였음.
- 셋째, 현지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한 현지 전문가 및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의 결과의 현실성을 제고하였음.
 - 어업인, 양식어업 관련 공무원, 연구자 집단 설문조사 실시
 - 어업인 심층 면담조사 실시
- 넷째, 연구품질 및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담당 분야별 연구 추진현황에 대해 연구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참여 연구진이 내용을 공유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품질을 향상시킴

- 전문가 및 관계자의 자문을 통한 상호의견 수렴체제 확립
 - 학계, 전문가 중에서 동 연구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구함
- 이러한 연구방법을 포함하여 연구의 추진 흐름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 1-1> 연구 추진 흐름도

제2장 양식어업 현황 분석

제1절 양식어업의 법적 성격

1. 어업권의 개념

- 본 연구의 대상인 양식어업¹⁾은 양식어업권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으며, 어업권의 개념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함
- ‘어업권’이란 통상적으로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와 관련되는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어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타인의 행위를 배제하고 해당 수면에 대해 독점하여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면허제도를 마련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어장 이용주체의 결정과 배타적 이용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규정하는 면허 및 허가제도에 관한 사항은 어장 이용관리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
- 실질적으로 어업권은 지형·해황·어업·어구 등에 따라 특정 수면에 한하여 특정 어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적합한 경우, 자연히 어업자들이 이 수면에 모여 쟁탈이 일어나게 되므로 안정적인 어로작업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어업면허제도에 따라 배타적·독점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면허어업이 성립
 - 천해 양식어업의 경우 이러한 어업권이 설정되는 면허어업에 속함. 양식어업권의 보유자는 통상적으로 일정 수면을 대상으로 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1) 본 연구에서 양식어업은 수산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대상 양식어업을 한정함.

- 헌법 제120조에 따르면,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광업권’ ‘어업권’ ‘댐 사용권’등 자연이용과 관련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가 직접 그 권리 형성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의 법에 규정된 어업권의 개념에 따르면, 일정 수면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법적 측면에서 ‘어업권’이란 「수산업법」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설정되는 권리임.²⁾
 - 법적으로 ‘어업권’이란 일정수면에 대해 배타적으로 면허를 부여받은 권리로써, 국가의 행정처분에 의해 형성되는 ‘형성권(Gestaltungsrecht)’이자 이와 같은 권리에 기초하여 어업권의 객체를 배타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특허권(patent right)임.³⁾

2. 양식어업의 법·제도 검토

- 우리나라에 있어서 양식어업에 규제와 관련된 법·제도는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들 수 있음.
 - 수산업법은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써 양식어업의 성립과 연관이 있는 법률적 요건인 면허와 이의 제한 및 촉진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은 부령(部令)으로써 수산업법이 지향 하는 기본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침 역할을 하는 법규임.
 - 양식어업의 구분 규정(수산업법 제8조) :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양식어업 등 규정
 - 양식어업의 종류 규정(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 : 각 양식어업 구분별 수하식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가두리양식어업 등 규정

2) 박기정, 2000, pp. 166~167; 차철표, 1994, pp. 222~224; 강봉모, 2002, pp. 16~17

3) 강봉모, 2002, p. 16

- 양식방법의 규정(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8조 및 별표2, 별표5) : 건홍식, 투석식 등 규정
- 양식물의 규정(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8조 및 별표2, 별표5) : 김, 파래, 미역, 다시마 등 세부 품종 규정
- 양식시설의 규정(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별표2) : 양식시설물의 규모 및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 등 규정
-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등 규정(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별표5)

양식어업 구분 규정	양식어업 종류 규정	양식방법의 규정
수산업법 제8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18조, 별표2,5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양식어업 등 규정	수하식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가두리양식어업 등 규정	건홍식, 투석식 등 규정
양식물의 규정	양식시설의 규정	기타 규정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18조, 별표2,5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10조, 별표2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15조, 별표5
김, 파래, 미역, 다시마 등 세부 품종 규정	양식시설물의 규모 및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 등 규정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등 규정

<그림 2-1> 양식어업의 규제분류

가. 수산업법

- 양식어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수산업법임. 동법 8조를 통하여 양식어업을 면허어업으로 규정하고,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 養殖漁業), 패류양식어업(貝類 養殖漁業),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 養殖漁業), 복합양식어업(複合 養殖漁業), 협동양식어업(協同 養殖漁業), 외해양식어업의 크게

6가지로 양식어업을 구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양식어업의 구분은 해조류, 패류, 어류 등 구분을 법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양식업자의 자율성 제한을 수반함
 - 여기에서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은 양식기술이나 양식대상이 아닌 양식면허주체에 의한 구분이기 때문에 양식어업의 기술적 구분과는 무관함
- 수산업법은 위와 같은 양식어업 면허에 대하여 처음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두었으나 1995년에 법을 개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위양하였음.

<표 2-1> 수산업법상 양식물 구분 규제

법령	내용
수산업법	<p>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한다.</p> <p>.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 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 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7.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8. 외해양식어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p>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호 중 어장의 수심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p> <p>2.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p> <p>3.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p> <p>4. 어선·어구(漁具)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p>
--

나. 수산업법시행령

- 수산업법 시행령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양식어업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제8조에서 양식어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양식어업의 종류는 수산업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어업의 구분(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 등)에 따라 각 각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 해조류양식어업 : 수하식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 패류양식어업 : 가두리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 어류등양식어업 : 가두리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 복합양식어업 : 수하식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혼합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표 2-2> 수산업법 시행령상 양식물 종류 규제

법령	내용
수산업법 시행령	<p>제8조(양식어업의 종류)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대·지주·뜸·밭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p>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패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두리양식어업: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2.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뜸·밭줄·채롱(採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3.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p>③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두리양식어업: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 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축계식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3.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뜸·밭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 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4.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 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p>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합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대·지주·뜸·밭줄 등을 이용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3. 혼합양식어업: 가두리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4. 축계식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두 종류 이상의 수산 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p>⑤ 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해양식어업의 종류는 가두리양식어업(수중 또는 표층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으로 한다.</p>

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⁴⁾

4) 이 규칙의 최초 제정은 1985년 4월 11일 농수산부령 제928호이다. 1991년 5월 4일 농림수산부령 1075호로 전문개정(全文改正)이 있었으며, 최근 2004년 8월 7일 해양수산부령 제277호로 개정되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2004년 8월 7일 개정을 통해 규칙의 명칭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 동 규칙은 수산업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부령(部令)으로 실제 양식어업에 있어서 행정적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또한 이들 법률이 지향하는 기본 목표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부의 양식어업 정책지침 역할을 하는 법규임
 - 양식어업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부령(部令)이상의 효력을 갖는 법령. 면허어업관련사항과 어장관리활동 모두를 포괄하는 성격

- 양식어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동 규칙에서는 양식물의 종류, 시설방법, 양식방법,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10조와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각 기준의 세부 내용은 별표 2와 별표 5에서 규정

<표 2-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양식어업 규제

법령	내용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p>제6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p> <p>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5. 양식어장의 시설량 6. 어업의 시기 7. 면허유효기간 8. 면허일자 9.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10.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p> <p>제10조(어장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하여야 할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18조(양식어업의 양식방법 등) ①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어장의 수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범위에서 양식물의 종류, 시설방법, 어장오염의 정도, 해역별 특성과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제2절 양식어업 법·제도 문제점

- 양식어업에 있어서 어업권은 배타적으로 일정의 어업을 영위하는 권리임. 어업권은 일정한 수면(어장구역)에서 모든 종류의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어업의 목적물인 수산동식물의 범위, 채포 또는 양식의 수단, 방법 등에 따라 수면의 범위가 다르고, 어업의 제한이 다르며, 그 내용인 어업도 통상 어구, 어법, 어획물의 종류, 어업시기에 의해 일정범위에만 특정됨

1. 현실과 맞지 않은 양식물 품종의 문제

- 현장에서는 기후와 해류의 변화에 따라 양식방법별로 규정하고 있는 양식물이 현실과 맞지 않아 어업을 영위하지 않는 유희어장 및 불법적으로 양식물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유희어장 사례 : 해조류양식어업 중 수하식양식어업에서 김, 파래·매생이가 생산될 수 없거나 생산성이 떨어져 유희어장으로 방치
 - 양식어업의 구분상 동일구분 내에서 변경하는 사례 : 해조류양식어업 중 수하식양식어업에서 김, 파래·매생이 이외의 해조류를 생산
 - 양식어업 구분상 타 구분으로 변경하는 사례 : 해조류양식어업 중 수하식양식어업에서 전복 및 홍합 등 패류를 생산
- 특히, 양식어업의 구분상 동일구분 내에서는 대부분의 어업 및 양식방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양식물에 ‘그 밖의 해조류, 패류, 어류’란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양식물의 규정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패류양식어업 중 연승식 수하식양식어업의 규정 양식물은 굴, 전복, 진주조개, 홍합, 가리비 그 밖의 패류임
- 양식어업인들은 양식수산물의 생산성 향상 및 어가경영악화 방지를 위하여 양식의 대내외 환경에 맞도록 양식 어업의 종류를 수시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패류 또는 어류 등으로 자율적 변경 희망
 - 수산업법 8조에 규정하고 있는 해조류 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양식어업 등의 구분에 대한 필요성 여부
- 또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양식종류 또는 방법에 의한 양식물(김, 파래, 굴, 전복, 어류 등) 규정

<표 2-4> 양식방법별 양식물의 종류 지정 현황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해조류 양식어업	가.수하식 양식어업	1. 건조식		
		나. 바닥식 • 부류망홍	김, 파래·매생이 김, 파래·매생이	
	2. 연승식	미역, 다시마, 톳, 파래, 갈래곰보 그 밖의 유용수산식물		
	나.바닥식 양식어업	투석식 • 천 해	돌김, 우뚝가사리, 꼬시래기 그 밖의 유용수산식물	
패류양식어업	가.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 수하연식 • 수평망식	굴 그 밖의 패류 굴	
		2. 연승식	굴 전복, 진주조개, 홍합, 가리비 그 밖의 패류	
		3. 뗏목식	굴, 진주조개 그 밖의 패류	
	나.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간석지	백합·고막·바지락·가무락·동죽 개량조개, 그 밖의 패류	
		• 천 해	피조개, 새고막, 홍합, 가리비, 키조개, 전복 그 밖의 패류	
		2. 투석식 등 • 간석지 • 천 해	굴 전복, 소라 그 밖의 패류	
		다.가두리식 양식어업	3. 침하식 • 천 해	전복
	가두리식		전복 그 밖의 패류	
	어류등양식어업		가.가두리식 양식어업	1. 가두리식
	나.축제식 양식어업	축제식	어류·갑각류·해삼	
다.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우렁챙이, 미더덕류 그 밖의 유용수산동물		
라.바닥식 양식어업	살포식 • 간석지 • 천 해	갯지렁이 그 밖의 유용수산동물 성게, 해삼 그 밖의 유용수산동물		

2. 현실과 맞지 않은 양식 시설물의 문제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및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시설기준(시설규모,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이 양식현실과 맞지 않아 불법어업 및 부정시설물, 과잉시설 등 문제 발생
- 특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양식 시설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어업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현재의 시설기준은 현실의 어가경영 수익측면을 반영하였을 때 약 60~70%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⁵⁾
- 양식어업과 관련하여 현지의 제도개선에 대한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시설기준의 완화 및 품종 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의 증가 및 시설규모의 현실화가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나타남

<표 2-5> 양식방법별 시설규모 현황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규모
해조류양식어업	가.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	
		• 지주망홍	100제곱미터당 1책 (2.2미터×40미터)
		• 부류망홍	100제곱미터당 1책 (2.2미터×40미터)
	2. 연승식	50제곱미터당 1줄 (100미터)	
	나.바닥식 양식어업	투석식	
		• 천 해	1헥타르당 투석량 1천200개 이상(1개당 40킬로그램 이상)
패류양식어업	가.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 수하연식	18제곱미터당 1대 (가로 6미터, 세로 3미터, 높이 2미터) 3.6제곱미터당 1대 (가로 1.2미터, 세로 3미터, 높이 1미터)
		• 수평망식	
		2. 연승식	5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1헥타르당 수하연은 7,000 줄 (삼해군을 제외한 경상 남도는 5,000줄)이하, 수하연 1줄의 길이는 5미터 (조립전 수하연 길이 6.5미터) 이하

5) 어업인 의견 청취 내용

			5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다만, 서해안, 강원도 및 경상북도에 있어서의 가리비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당 2줄(100미터)
		3. 팻목식	165제곱미터당 1대(9미터× 18미터)
		1. 살포식	
	나.바닥식 양식어업	• 간석지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2톤부터 3톤까지. 다만, 백함은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1톤부터 3톤까지
			• 천 해
		2. 투석식 등	
		• 간석지	1헥타르당 투석량 5천개 이상(1개당 40킬로그램 이상)또는 타이어 8천개부터 1만개까지
		• 천 해	1헥타르당 투석량 1천200개 이상(1개당 40킬로그램 이상) 및 종묘 2만마리 이상 살포
		3. 침하식	
	다.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25제곱미터당 1대(가두리 시설물의 내측으로부터 가로 5미터, 세로 5미터. 다만, 시설방법 또는 양식물에 따라 그물의 길이 및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어류등양식어업	가.가두리식 양식어업	1. 가두리식	25제곱미터당 1대(가두리 시설물의 내측으로부터 가로 5미터, 세로 5미터. 다만, 시설방법 또는 양식물에 따라 그물의 길이 및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나.축제식 양식어업	축제식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2만마리 이상
	다.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50제곱미터당 1줄(100미터) 다만, 우렁챙이는 1헥타르당 수하연 2,840줄 이하, 미더덕류는 봉그물 수하연(1헥타르당 6,680줄 이하) 또는 판그물 수하연(폭 4.5미터 이하, 연승 길이 기준 10퍼센트 이상의 조류 소통구를 중앙부에 설치) 시설
	라.바닥식 양식어업	살포식 • 간석지 • 천 해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1톤부터 1.5톤까지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 1톤부터 1.5톤까지

- 특히,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의 경우 해수의 유동, 수심, 수질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가능한 시설량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법·제도 상에는 품종별, 양식방법별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양식방법별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해조류양식어업	가.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	
		• 지주망홍	5부터 18까지
		• 부류망홍	5부터 18까지
		2. 연승식	5부터 10까지

패류양식어업	나.바다식 양식어업	투석식 • 천 해	90 이상
	가.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 수하연식	5부터 10까지
		• 수평망식	5부터 10까지
		2. 연승식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3. 뗏목식	3부터 10까지
	나.바다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간석지	90 이상
		• 천 해	90 이상
		2. 투석식 등 • 간석지	90 이상
		• 천 해	90 이상
3. 칩하식 • 천 해		5부터 10까지	
		5부터 20까지	
다.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5부터 20까지	
어류등양식어업	가.가두리식 양식어업	1. 가두리식	5부터 20까지
	나.축제식 양식어업	축제식	20 이상
	다.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5부터 10까지
	라.바다식 양식어업	살포식 • 간석지 • 천 해	90 이상 90 이상

3. 양식기술에 따른 어장수심의 지정문제

- 해역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식기술이 개발되고 이에 따라 양식업자들은 양식을 하고 있으므로 양식어업의 어장수심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인식이 강함
- 특히, 동일한 권역(서해안 및 동해안, 제주)에서도 해역에 특성에 따라 양식 어장의 수심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으로 수심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수심과 관련하여서는 면허어업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 계획 및 자연 과학적 검토를 통해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 있어서 적지에는 면허어장이 개발된 상태임

- 수심문제의 경우 정책적 판단, 기술적 수준 등 변화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권한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표 2-7> 양식방법별 어장의 수심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의 수심 (단위 : 미터)
해조류 양식어업	가.수하식 양식어업	1. 견홍식 • 지주망홍 • 부류망홍	7 이내 40 이내
		나. 바닥식 양식어업	30 이내(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40 이내)
	나.바닥식 양식어업	1. 투석식 • 천해	30 이내
패류 양식어업	가.수하식양식어업	1. 간이식	100 이상
		2. 연승식	100 이상
		3. 뗏목식	100 이상
	나.바닥식양식어업	1. 살포식 • 간석지 • 천해	100 이상 100 이상
		2. 투석식등 • 간석지 • 천해	100 이상 100 이상
		3. 침하식 • 천해	100 이상 100 이상
다.가두리식양식어업	가두리식		
어류 양식어업	가.가두리식양식어업	1.가두리식	35 미만
		2.삭제 <2010.8.5>	
	나.축제식 양식어업	축제식	20 이내
	다.수하식양식어업	연승식	30 이내(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70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40 이내)
복합 양식어업	가.수하식양식어업	1. 연승식	30 이내 30 이내(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70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40 이내) ※ 부산, 울산, 강원, 경북의 경우는 40 이내(2004.1.3)
		2. 견홍식과 연승식	30 이내
	나.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40 이내
		2.살포식과 투석식	0

	다.축제식 양식어업	축제식	20 이내
	라.혼합양식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7 이내
		2. 연승식과 천해 투석식	30 이내
		3. 침하식과 연승식	30 이내
		4. 가두리식과 연승식	30 이내

4. 어업규제 상 중복성 문제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와 [별표 5]에서 양식물, 양식방법 등 중복되어 규정되고 있어 혼란 초래하고 있음
 - 동 규칙 [별표 2]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으로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별표 5]에는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를 규정하고 있음

- 법·제도의 간편화 및 변경의 편리성 등으로 고려하였을 때 통합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8> 양식방법 및 양식물 중복 규정 부분

[별표 2]			[별표 5]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	김, 파래·매생이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	김, 파래·매생이
	• 지주망홍			• 지주망홍	
	• 부류망홍	김, 파래·매생이		• 부류망홍	김, 파래·매생이
	2. 연승식	미역, 다시마, 툇, 파래 갈래곰보 그 밖의 유용수산식물		2. 연승식	미역, 다시마, 툇, 파래 갈래곰보 그 밖의 유용수산식물
나. 바닥식 양식어업	투석식	돌김, 우뚝가사리, 꼬시래기 그 밖의 유용수산식물	나. 바닥식 양식어업	투석식	돌김, 우뚝가사리, 꼬시래기 그 밖의 유용수산식물
	• 천 해			• 천 해	

제3장 규제완화 이론 및 국외사례 검토

제1절 규제완화의 이론적 배경

1. 규제의 정의 및 분류

가. 규제의 정의

- 정부는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 향상 등 각종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도를 설정하거나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
- 이러한 포괄적 정부활동은 결국 개인 및 기업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강화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부가 사용하는 이러한 모든 정책 운용수단을 광의 규제라 함. 즉 정부가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규제라 할 수 있음

나. 규제목적에 의한 분류

- 규제는 특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가 이에 포함
- 경제적 규제란 시장진입,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규제의 형태로 직접적 시장기구에 관여하는 규제임
 - 경제적 규제의 목적은 첫째, 시장기구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을 경우 시장실패 보정. 둘째, 특정산업 보호. 셋째,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분배 등을 위하여 실시됨

- 사회적 규제는 환경의 질, 안전, 보건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정된 조치임
- 행정적 규제는 정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작업이나 행정적인 요식행위가 포함됨

다. 규제개선(개혁)의 정의

- 규제개선이란 현재 법·제도 상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현실 및 사회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것임
- 규제완화는 기존 규제의 폐지 및 강도 완화하는 것으로 최근 여러분야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시장원리를 좀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규제 대상에게 자율성 및 책임이 높아지게 됨
- 최근 규제강화의 트렌드는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담을 줄이는 규제강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규제과정의 투명화 및 효율화는 규제결정과정에서 민간참여 확대, 규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 규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2. 규제완화 이론

가. 일반적 규제완화 필요성 논리

1)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 규제의 비용이 효과를 초과하고 있다면 이런 규제들은 개선되어야 함. 정부 규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임(최병선, 사공영호.1996)
- 그리고 이런 비용은 개별규제의 비용-편익분석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부분 이면서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정부규제에서 발생하는 1차적인 경제적 비용은 경쟁을 제한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임
- 특히, 경제규제는 경제자원 뿐 아니라, 기업가적 자원(entrepreneurial resources)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Sturzenegger & Tomassi, 1994)

2)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의 고려

- Winston(1993)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규제완화의 대상이 되었던 주요산업에 대하여 규제완화의 결과로 미국의 소비자는 약 326억불에서 430억불에 달하는 추가적 이윤을 얻어 미국경제는 전체적으로 약 358억불에서 462억불의 추가적 경제잉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⁶⁾
 - 미국은 규제완화정책을 통해 매년 약 7~9%의 실질적 경제성장을 초과적으로 이룬 셈
- 이는 산업적으로 수산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규제완화가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경우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크다면, 불필요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있음

6)Winston은 규제완화의 효과를 이로 인하여 초래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이윤)의 변화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3) 시장기능의 회복 요청

- 정부는 시장의 기본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거시 경제적 차원의 배분만이 아니라 세세한 기업활동과 국민 일반의 경제활동에까지 깊이 관여하게 되었음
- 그러나 정부의 기능조정이 요구됨에 따라 그 핵심을 차지하는 규제기능의 축소가 필요함. 경제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뿐 아니라, 가부장적인 입장에서 (사공영호, 1998) 규제를 통해서 각종 이익집단들에게 시혜를 주는 의도로 포획되어서도 안될 것임. 따라서 정부와 시장간의 근본적인 역할의 재설정이 필요함

4)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

- 정부규제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과 기업의 기본적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볼 수 있음
- 규제완화의 핵심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축소함으로써 개인간의 자율적이며 공정한 거래에 의하여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개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임

나. 전통적 규제완화 이론

- Peltzman(1989)은 규제의 정치적 과정은 물론 규제완화의 정치적 과정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주장
 - 규제하의 균형(regulated equilibrium)과 규제완화로 나타나게 될 정치적 균형간의 갭이 좁혀지면, 지속적인 규제가 의미를 상실

- 지대의 정치적 재분배(redistribution)에 사용될 부(wealth)가 아주 작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정치적 보상도 따라서 적어지게 되므로 규제완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규제가 비효율성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규제완화가 최상의 정치적 선택이 될 수 있음
- Hood는 주요 생산자 집단 스스로가 규제완화에 호응하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할 때에도 규제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

3.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원칙

1) 일반적인 규제개선의 필요성

-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 유지. 소비자와 최종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전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가격인하 및 제품과 서비스 질의 향상
- 공공목적을 달성하는데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규제로 전환
- OECD 회원국으로서 1998년 이후 심사 대상이 되어 규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수산분야의 규제개선의 필요성

- 수산분야의 사전적 규제강도와 방법이 계속 증가

- 면허 및 허가 우선순위 제도에 의한 진입규제로 신규 어업인의 진입불가
- 양식어업의 규제가 전국적인 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해역별, 어장별 특성이 충분히 감안되지 못하고 어업인의 자율성 저해
- 행정적 편의에 의한 규제가 많아 신뢰성과 효과성 감소
- 지방자치화와 부합되지 않는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가 대부분

3) 규제개선의 원칙

- 규제개선의 목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 주요 규제개선의 원칙은 아래와 같음 원칙
 - 동일목적의 중복규제를 폐지하고 여러 부처에 관련된 규제를 통합
 - 준수율이 낮은 규제는 폐지하거나 다른 합리적 규제수단을 강구
 -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 관리적 규제로 전환
 -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인가와 허가조건 및 영업 준수사항 등의 규제를 완화
 - 생계유지형 소규모어업의 관련규제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완화

제2절 양식제도 국외 사례분석

1. 일본

가. 수산관계법령상 양식관련 제도

- 일본의 양식어업권은 구획어업권과 관련이 깊음. 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에 의하여 설정된 일정 수면을 배타적으로 일정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메이지어업법 이래 양식어업을 구획어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구획어업의 어업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어업법 제6조 제4항에서는 양식 방법에 따라 다음 3종류로 분류하고 있음.
 - 제1종 구획어업 : 일정 구역 내에서 돌, 기와, 대나무, 나무 등을 부설 하여 양식하는 어업
 - 제2종 구획어업 : 흙, 돌, 대나무, 나무 등으로 둘러싸인 일정 구역 내에서 양식하는 어업
 - 제3종 구획어업 : 일정 구역 내에서 상기 ①, ② 외의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 일본 어업법 제11조 1항에서는 어업종류, 어장의 위치 및 구역, 어업의 시기, 면허예정일, 신청기간, 지선(관계)지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11조 1항 : 도도부현 지사는 그 관할에 속하는 수면 대해 어업의 종합 이용을 도모하고 어업 생산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업권의 내용 한인 어업의 면허를 해야 하며 해당 어업의 면허 유효도 어업 조정 기타 공익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어업의 면허에 대해 해구 어업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어업 종류, 어장 위치 및 지역, 어업시기 기타 면허의 내용 한인 할 사항, 면허 예정일, 신청 기간 및 정치 어업 및 구획 어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 지구 (자연 및 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 해당 어업의 어장 속

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공동 어업에 대해서는 그 관계 지구를 결정
해야 함

<표 3-1> 일본어업법상 양식분류의 정의

양식종류		정의	내용예시
어 류 양 식	은연어양식	주로 은연어를 양식	은연어
	방어류양식	주로 방어류를 양식	방어, 부시리, 잭방어
	참돔양식	주로 참돔을 양식	참돔
	넙치양식	주로 넙치양식	넙치
	기타어류양식	주로 前記이외의 어류를 양식	전갱이, 줄전갱이, 복어류, 혈돔, 흑돔, 귀치류등
패 류 양 식	가리비양식	주로 가리비를 양식	가리비
	굴류양식	주로 굴을 양식	굴
	기타패류양식	주로 前記이외의 패류를 양식	국자가리비, 쫄부채조개
보리새우양식		주로 보리새우를 양식	보리새우
멍게류양식		주로 멍게류를 양식	참멍게, 붉은멍게
기타수산동물류양식		주로 前記이외의 수산동물류를 양식	꽃게류, 성게류, 대하,
해 초 류 양 식	다시마류양식	주로 다시마류를 양식	다시마, 긴다시마
	미역류양식	주로 미역류를 양식	미역
	김류양식	주로 김류를 양식	김, 파래
	기타해초류양식	주로 前記이외의 해초류를 양식	큰실말류
진주양식		해수산의 진주 모패(母貝)에 의한 진주를 생산	진주
종 묘 양 식	방어류종묘양식	방어류종묘를 생산하고 판매	방어 1·2년생
	참돔종묘양식	참돔종묘를 생산하고 판매	참돔치어, 참돔1·2년생
	넙치종묘양식	넙치종묘를 생산하고 판매	넙치종묘
	진주모패양식	진주양식에 사용하는 해수산진주 모패를 생산하고 판매	진주조개
	가리비종묘양식	가리비종묘를 생산하고 판매	가리비종묘
	굴류종묘양식	굴류 종묘를 생산하고 판매	굴류종묘
	보리새우종묘양식	보리새우종묘를 생산하고 판매	보리새우종묘
	미역류종묘양식	미역류종묘를 생산하고 판매	미역류종묘
	김류종묘양식	김류 종묘를 생산하고 판매	김류종묘
	(지방설정종묘양식)	지방에서 설정한 前記이외의 종묘를 생산하고 파내	

<표 3-2> 양식방법분류의 정의

양식방법	정의	내용예시
축제식(築提式)	강 입구, 灣(만) 등의 해면을 제방으로 구획하여 양식	어류, 보리새우 등의 양식에 이용된다.
망구획식(網仕切式)	강 입구, 만 등의 해면을 망으로 구획하든지 또는 일정의 해면을 망으로 둘러쌓아 양식	어류, 보리새우 등의 양식에 이용된다.
소할식(小割式)	해면에 활어조망, 활어조상자 등을 띄우던지 또는 중간층에 매달아 양식	어류, 문어류 등의 양식에 이용된다.
뗏목식	뗏목에 종묘를 부착시킨 조개를 로프등을 직접 수하(垂下)하는 것 또는 종묘를 넣은 통발 또는 망대를 垂下하여 양식	굴류, 가리비, 전복류, 미역류 등의 양식에 이용된다. 또한 미역류 야식등에서 보여지는 3-4m의 간격으로 대나무를 로프에 연결하여 이용하는 뗏목식에 포함된다.
수하식(垂下式)	바닷속에 통나무, 대나무 등으로 틀을 세워 여기에 나무, 대나무등을	굴류, 가리비 등의 양식에 이용된다.
연승식	합성수지제 부자 등을 사용하여 해면에 줄을 늘어뜨리고, 여기에 종묘를 부착시킨 로프 등을 직접 垂下하는 것 또는 종묘를 넣은통발 또는 망대를 垂下하여 양식	굴류, 가리비, 진주, 미역류 등의 양식에 이용된다.
지선식(地卷式)	해저에 종묘를 뿌려 양식	굴류 양식에 이용된다.
망대식(網罟式)	망대에 종묘를 부착시켜 양식을 하는 것으로 지주식과 부류식이 있다.	김류 양식에 이용된다.
콘크리트 수조식	육상에 콘크리트수조에 동력으로 해수를 양수하고 曝氣장치를 설치, 해수의 흐름을 도모하는 양식	어류, 보리새우 등의 양식에 이용된다.
기타	前記이외의 양식방법으로 실시되는 것	

<표 3-3> 양식어종분류의 정의

양식어종		정의등(표준 일본명칭)	
어류	은연어		
	방어류	방어	
		부시리	
		기타 방어류	前記 이외에도 분류되지 않은 방어류(부시리 등)
	전갱이		
	줄전갱이		
	참돔		
	넙치		
	방어류		자지복, 참복
	기타어류		前記 어느쪽에도 분류되지 않는 어류(혈돔, 흑돔, 쥐치 등)
패류	가리비		
	굴류		참굴,
	기타패류		前記 어느쪽에도 분류되지 않는 어류
보리새우		보리새우	
멍게류		참멍게, 붉은멍게	
기타수산동물류		前記 어느쪽에도 분류되지 않는 수산동물류 (꽃게류, 성게류, 대하 등)	
해초류	다시마류		참다시마, 긴다시마
	미역류		미역류
	김류		파래
	큰실말		큰실말
	기타해초류		前記 어느쪽에도 분류되지 않는 해초류(솔잎말)
진주		진주(해수산의 진주모패에 의해 생산된 것)	
종묘	방어류 종묘		부화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의 것중 치어를 제외한 것 및 부화의 익년 6월 1일부터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의 것
	참돔종묘	치어	자연종묘 및 인공적으로 채란, 부화, 사육한 인공종묘
		1·2년생	부화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의 것중 치어를 제외한 것 및 부화의 익년 6월 1일부터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의 것
	넙치종묘		넙치종묘
	진주모패		진주조개
	가리비종묘		가리비종묘
	굴류종묘		굴류종묘
	보리새우종묘		보리새우종묘
	미역류종묘		미역류종묘
	김류종묘	망대	김의 포자를 부착시킨 망
패각		김의 포자가 패각에 침투하여 싹형태로 된 것	
지방설정종묘		지방에서 임의로 설정한 前記이외의 생산된 종묘	

나. 방어 양식에 관한 지도방침 사례

1) 양식어장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도도부현(이하 '현'이라한다.)는 방어 양식에 적합한 어장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외적요인에 의한 어장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과밀양식 등 방어양식 자체에 의한 어장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충분히 주의한 뒤 어업협동조합(이하 '어협'이라한다.), 양식업자(생산조합 등을 포함. 이하 같음)를 지도할 것

(1) 방어 양식어장의 양식허용량과 수용밀도

(가) 현은 산하의 방어양식어장에 대하여 적어도 년 1회 정기적으로 어장진단 (폐사율, 1m³당 방양량(放養量), 총투이량(總投餌量), 수질, 저질(底質)의 상황, 魚病의 발생상황 등)을 실시하고 각각의 양식어장에 대하여 어장진단결과를 정리하도록 노력할 것

(나) 현은, 하마치 양식이 실시되고 있는 수역 또는 방어양식을 예정할 수역에 대하여 DO등의 수치계산을 실시(이 경우, 방어 이외의 어패류가 양식되고 있는 경우는 그들의 DO 등의 수치도 고려할 것.)하여 해당 수역에서 양식허용량을 산출한 뒤, 어장진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목표 방양(目標放養) 마리수를 결정하고, 과밀양식방지를 도모하도록 어협, 양식업자(이하 '어협등'이라한다.)를 지도할 것. 또한, 이 경우 폐쇄성 내륙지역에서 방어의 수용밀도는 양식어장환경을 매우 악화되는 여름 시기에는 1m³당 7kg정도를 기준으로 할 것(유효수심 5m).

(다) 현은, 산하기관에 있어서 방어의 방양상황(放養狀況)을 파악하기 위해 어협 등이 양식어장별로 매년 7월 1일 및 1월 1일 현재의 양식업자별, 어령별 방양 마리수 및 자연산 방어 치어(이하 '모자코'라고 한다.)의

현별(縣別) 구입처에 대하여 현(縣)에 보고하도록 지도할 것.

(2) 유지해야만 하는 수질 및 저질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기준

현은 방어양식어장의 유지를 해야만 하는 수질 및 저질에 대하여 사단법인 일본수산자원보호협회가 규정한 '수산환경수질기준'을 당면의 목표로써 유지되도록 어협 등을 지도할 것.(단지, 수질의 COD에 대해서는 2ppm이하로 한다.)

(참고) '수산환경수질기준' (사단법인 일본수산자원보호협회)

(底質) 해저에 있는 진흙으로써 COD20mg /g이하, 硫化物(유화물)0.2mg/g이하, 노르마루헤킨산 추출물 0.1%이하일 것.

(水質) 일반 해역에서는 COD 1ppm이하일 것. 김양식장에서는 COD2ppm 이하일 것.

(3) 양식어장의 환경감시체제의 확립

(가) 현은 방어양식에 적합한 어장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질, 저질 등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적조, 저산소층의 발생에 대해서는 특단의 감시를 실시할 것. 특히 양식 방어에 유해한 호르네리아층 플랑크톤에 대해서는 피해방지에 대하여 최선의 방책을 강구할 것.

(나) 현은 어협등이 해당면허에 관련된 양식어장내의 수질 및 저질을 년 2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현에 보고하도록 지도할 것. 또한, 현은 방어양식년도(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의 연도말 시점에서 해당어장내의 저질이 (2)의 목표기준치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어협 등을 지도할 것.

(다) 현은, 양식업자가 방어양식기간을 통해 적의 잠수하고 양식어장의 환경, 어류의 상태, 시설의 상황 등을 점검, 감시하도록 지도할 것.

(4) 양식어장의 환경의 개선 등

현은 어협 등이 양식어장내의 수질 및 저질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저(海底) 경운(耕耘), 폭기(曝氣), 복토(覆土), 준설(浚渫) 등의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도할 것.

* 폭기(曝氣) : 폐수처리에서 폐수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시킴)

또한 현은, 근년에 있어서 어병(魚病), 적조, 저산소에 의한 대량 폐사 등의 현상이 발생한 양식어장에 대해서는 관계어협 등이 방어양식어장으로써의 기능회복을 위해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질 수 있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방어양식의 적지성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할 것.

2) 양식어장의 이용에 대하여

현은 양식어장의 이용에 있어서는 어장의 과다사용을 피하도록 양식시설의 배치, 휴지(休止)기간의 설정 등에 따라 4의(1)의 기준과 관련시켜 기준을 작성토록 노력함과 동시에 어협 등이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지도할 것.

또한, 4의(1)기준 또는 현이 작성한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어협 등에 대해서는 현은 해당기준에 일치시키도록 권고하도록 한다.

(1) 양식어장에서의 시설의 배치

내만(內灣)등의 폐쇄성 수역에서 방어양식어장의 사용에 있어서는 해수교류를 조해(阻害:저해라는 뜻으로 쓰임)하지 않도록 수량 및 간격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하여 설치하도록 할 것.

(2) 어장의 사용휴식

양식어장의 자정력을 넘는 오염부하를 방지하고 양식어장의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적의(適宜) 어장의 사용을 휴식할 것. 또한 방어를 꺼낸 뒤 어망 등은 재빠르게 설치장소에서 철거할 것.

3) 양식관리에 대하여

현은, 양식 어장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적정한 양식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양식업자 등이 다음의 사항에 충분히 유의하도록 지도할 것.

(1) 사료의 입수 및 해동처리 등

(가) 사료의 동일 종류의 연속투여를 실시하지 않을 것. 또한 선도가 좋은 사료의 공동구입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보관에 있어서는 선도유지에 노력할 것.

(나) 사료의 해동에 있어서는 직사광선에 방치하지 않도록 담수에 의한 살수해동 등을 실시하고 선도저하를 방지하도록 할 것.

(다) 해동에 의한 폐수가 직접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육상에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등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고, 바다 속에서의 해동은 하지 않는다.

(2) 사료량의 조정 및 사료의 투척에 의한 오염방지

(가) 현재의 배급사료량은, 일반적으로 과다하며 남은 사료에 의한 양식어장의 오염이나 과식으로 인하여 건강하지 못한 어류의 발생원인이 되기 때문에 연간 증식 개체수를 5-6정도로 내려 급유량의 절감에 노력할 것.

(나) 여름철에서 가을철에 걸친 성장기에 있어서도 주 1회 정도의 무배급사료일을 설정하고 양식중의 방어 건강관리에도 노력함과 동시에 포식의 완화와 긴급 시에 약제투여를 배려하여 배합사료와 생사료(生飼料)와의 혼합투여를 적의적으로 실시할 것.

(다) 사료투척에 있어서는 사료의 청결, 유분확산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양식어장에서의 오염 확산이 방지되도록 배려할 것.

(라) 사료의 조정에 있어서는 양식어장의 오염을 조장하는 사료의 과도한 배포는 하지 말 것.

4) 기타

(1) '방어 적정양식협의회' 등의 설치

현은, 어협, 동연합회, 養魚협회, 시험연구기관 등에 의한 협의회 등을 설치하고 동협의회에 각 현의 실태에 대응하는 양식어장의 환경관리, 이용 및 양식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적정양식기준 등(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양식어장별)을 설치하여 양식업자가 적정한 양식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것.

(2) 종묘의 채포마리수의 한도에 대하여

방어 양식의 종묘는 현재 거의 모자코(モジャコ:방어의 치어를 부르는 일본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채포량은 자연산 방어자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모로도 되어 있다.

치어의 채포는 방어자원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는 현의 어업조정규칙에 금지되어 있으나, 양식용 종묘에 대해서는 현지사의 특별채포허가에 의하여 채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은 치어채포에 관하여 방어자원으로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정한 채포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주의할 것.

(가) 채포의 허가

치어의 채포허가를 실시에 있어서는 이를 양식용 종묘의 공급을 위해 채포금지의 적용제외가 되는 것에 유의한 뒤, 별도로 현이 정한 취급방침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킬 것.

(a) 채포마리수

치어의 채포마리수는 수산청이 방어자원에 대하여 영향을 충분히 감안하여 매년 정한 채포계획에 준하여 현의 총 어획폭으로써 정하는 것으로 하나 필요에 의해 허가를 받은 채포자별로 최고제한을 정할 것.

(b) 허가의 기간

허가의 기간은 치어의 회유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최소한의 기간으로써 대체적으로 1개월을 기준으로 할 것.

(c) 어구, 어법, 어선 등

치어의 채포를 위한 어구 및 어법은 종묘로써 건전한 상태에서 채포가 능한 것으로 한정하고, 치어의 운반 및 수용에 있어서는 치어를 폐사시키지 않도록 어망 등에 의한 양망은 피하고 해수도 함께 바꿔주는 등의 특단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준비에 노력할 것.

또한, 사용어선에 있어서는 각 현간의 어업조정의 문제도 있으므로 당면한 원칙으로써 15톤 미만(주기관은 농림마력 115마력미만)으로 하나, 이후에는 일정의 경과기간을 두고 가능한한 사용어선을 5톤미만(50마력미만)으로 억제하도록 할 것.

(나) 채포마리수의 파악

현은, 채포한 치어의 마리수를 조속히 파악하기 위해 보고연락체재를 확립할 것.

(3) 어업권 면허 등과의 관련

(가) 어장계획

현은, 어장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본 방침에 제시한 양식허용량을 감안하여 해당수역에서 방사량, 어장배치의 적정화를 도모할 것.

또한, 현이 어업조정 후 설치대수, 설치면적에 대해서 제한을 내용으로 한 제한 또는 조건을 어업권에 부여하는 것은 지장이 없으므로 필요할 경우는 해당제한 등을 첨부할 것.

(나) 어업권행사규칙

현은, 특정구획어업권의 방어양식업의 행사에 관해서 설치대수, 설치면적, 방사마리수 등의 사항 중 어업권행사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양식어장의 실태를 감안하면서 동 규칙에 정하도록 지도할 것.

(4) 보조사업 및 제도용자와의 조정

현은, 연안어업 구조개선사업, 어업공해지도사업 기타국가, 현 등이 실시하고 있는 방어양식업에 관한 보조사업 또는 어업근대화 자금 등의 용자실시에 있어서는 방어양식의 적정화와의 관련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사전에 관계부국간의 조정협의를 충분히 실시할 것.

(5) 방어 양식공제와의 관련

현은, 어업공제조합에 대하여 방어양식에 대한 현 지도사항을 충분히 연락함과 동시에 필요에 응하여 이를 방어양식공제의 인수에 있어서는 조건에 포함시키도록 필요한 조치에 따라 지도할 것.

2. 중국

- 중국에서 수산양식과 관련된 법률은 중국내에서는 주로 어업법과 농업부수 산종묘관리방법이 큰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에서는 중국의 수산양식과 관련된 전반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수산양식상의 품종, 시설 규모와 관련된 내용은 규정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특히 어업법의 제10조 규정을 살펴보면, 중국은 수산양식을 격려한다고 적혀 있으며 규모와 관련되어서는 어떠한 제한이 없음
-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을 참고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 간석, 영해, 배타적경제수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관할하는 모든 기타해역에서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의 포획 및 양식 등의 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면 이 법률을 준수해야함
 - 제3조 국가는 어업생산에서 양식을 가장 중점으로 두며 양식, 포획, 가공도 동시에 실시한다.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각각 중점이 되는 방침이 있음.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어업생산을 국민경제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서 조치를 취하고 수역의 일관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이용을 강화함
- 수산양식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중국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업무를 중국내 성(省)에 위임하고 있으며 성(省) 자체에서 중국법률의 큰 골격 아래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 중임
 - 공통적 사항으로는 수산양식업자들에게 ‘수산종묘생산허가증’혹은 ‘양식해역사용증’을 교부하여 종묘의 번식과 양식업무를 진행
- 예를 들어 푸지엔성의 수산양식업자들이 만약 수산양식(어류, 패류, 갑각류 등)을 하고자 한다면 푸지엔성의 주관부문(푸지엔성해양과어업국)에 양식해역사용증을 신청해야 함

- 양식 시설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최근 수산약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 및 규정이 존재함

3. 노르웨이

- 노르웨이에서 수산양식면허는 'B일반적인 금지 행위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B의 의미를 담고 있음. 즉, 법률에는 양식어업의 행위를 위한 어업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업권자가 준수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명시되어 있다. 이때 권리는 특정 종을, 특정 양만큼, 특정한 장소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배타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며, 의무는 면허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고려되어야 하는 해양환경의 보전과 지역의 여건 등의 요건에 대한 규율임
- 그리고 노르웨이의 양식 면허할당은 어종에 따라 제한할당면허와 연속할당면허의 두 가지로 대별됨. 제한할당면허는 할당량에 비해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연어·송어양식에 적용되고 있음. 그리고 연속할당면허는 연어·송어 이외의 양식에 적용되고 있음
- 수산양식법에 따르면, 양식경영체가 양식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며, 폐기(abandonment)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율하고 있음
- 노르웨이 수산해양부의 법규나 결의에 의하면, 수산양식 어업권을 소지하고 있는 어업자가 어장환경조사를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수산양식시설을 설치·가동·폐기할 장소의 환경상태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수산양식 어업자는 예외 없이 유기체, 시설, 장비 등의 제거를 포함한, 생산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중단될 경우 해당 장소와 인접 지역을 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그리고 수산해양부가 해양 유기체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금지령, 이주 명령, 다른 수산

양식 활동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 소결

- 이상으로 살펴본 우리나라와 주요 수산국간의 양식방법의 규제에 관련된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는 중앙단위에서 양식방법 및 시설규모를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여 일방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지방분권화가 잘 되어있어 도도부현 단위로 지역에 실정에 맞게 양식방법 및 규정이 설정되어 있음
- 또한 중국은 큰 범위에서 전반적 기준만 설정되어 있을 뿐, 양식 규모와 관련되어서는 어떠한 제한이 없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성단위에서 이루어짐
- 노르웨이는 양식경영체가 양식관련 시설을 설치, 가동, 폐기하는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환경에 대한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음

<표 3-4> 우리나라와 주요 수산국간의 양식방법 규제 비교

국가명	양식방법 규제현황	특징
한국	중앙단위에서 양식방법 및 시설규모를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중앙단위 일방적 규제
일본	지방분권화가 잘 되어있어 도도부현 단위로 지역에 실정에 맞게 양식방법 및 규정이 설정되어 있음	도도부현단위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
중국	큰 범위에서 전반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양식 규모와 관련되어서는 어떠한 제한이 없음	큰 틀의 기준만 있을 뿐, 세부적인 것은 성단위에서 이루어짐
노르웨이	양식경영체가 양식관련 시설을 설치, 가동, 폐기하는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율하고 있음	양식업자 개인에게 양식방법 및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나 환경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음

제4장 양식어업 규제 인식도 분석

제1절 양식어업 규제 인식

1. 설문조사 개요

- 양식어업 규제 관련 설문조사를 위해서 본 연구소에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우선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 전남지역을 중점으로 하여 전남, 경남, 경북,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대형 양식장을 위주로 실시하였음
- 조사인력은 연구소 팀장을 중심으로 연구원 3명과 수산관련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지역 별로 나누어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 설문조사는 9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15일에 걸쳐서 지역별로 현장조사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경북 일부지역과 충남지역은 교통의 문제가 있어 유선 및 E-mail의 방법을 통해서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에 앞서 8월26일 한국수산회 회의실에서 지자체 수산담당 공무원 및 양식 산업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 회의에서 정부의 규제완화계획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찬성을 하였으며 다만 일부 전문가는 규제완화로 인하여 상품성이 많은 양식 품종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양식산업 규제에 관해서는 설문결과에 나타나듯이 양식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대부분이 찬성을 하였으며, 일부 지자체 공무원 일부는 양식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조업의 증가를 우려해서 반대하였음
- 설문조사에 앞서 양식장을 방문한 결과, 양식물의 허가를 받아놓고 환경의

변화와 어업의 여건변화로 말미암아 허가받은 양식물의 양식이 불가능하여 양식이 가능한 다른 양식물을 양식하고 싶어도 허가절차의 시간적, 절차적 복잡성으로 허가변경을 포기하고 불법양식을 하거나 아니면 양식을 포기하고 양식장을 휴업하여 비싸게 투자된 양식시설을 방치하는 양식장이 다수 눈에 띄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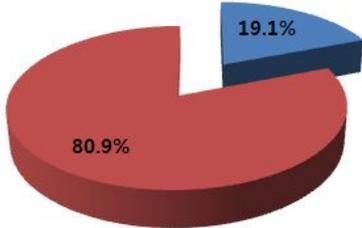
-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양식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양식어업 나아가 어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음

2. 현행 규제의 적정성

- 현재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등 우리나라 양식어업에 규제에 관한 인식도 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80.9%가 걱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의 면담에서 현행 양식어업 규제는 매우 복잡하며, 여러 사항에 대해서 법상 명시를 하고 있어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음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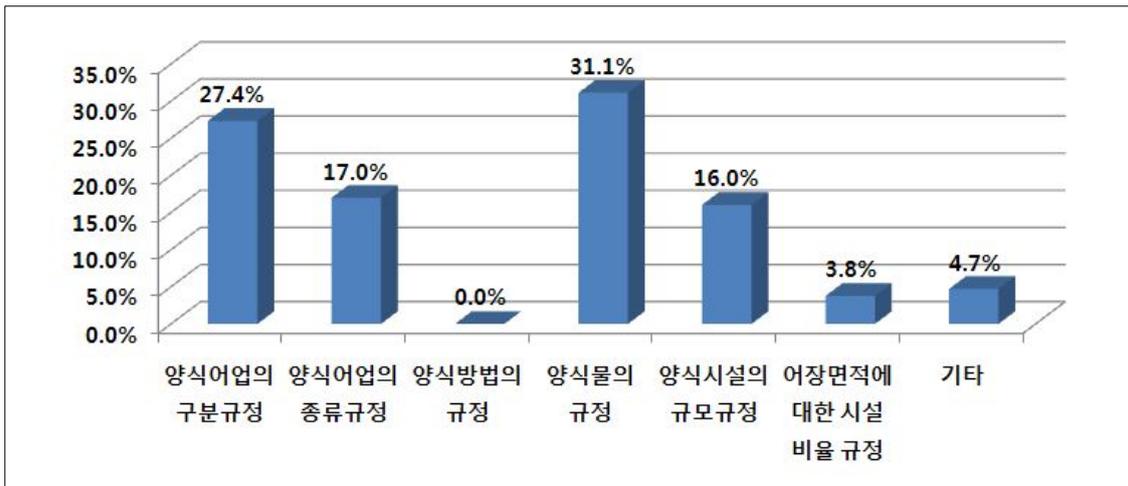
<표 4-1> 양식어업 법·제도상 규제의 적정성 인식

구분	빈도	비율
적정함	25	19.1%
적정치 않음	106	80.9%
합계	131	100.0%



■ 적정함 ■ 적정치 않음

- 양식어업의 규제는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양식어업의 구분 규정, 양식어업의 종류 규정, 양식방법의 규정, 양식물의 규정, 양식시설의 규정,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등 규정으로 분류가 가능함.
- 앞서 규제의 적정성 여부에서 걱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행 양식어업과 관련한 법·제도적 규제 중 가장 규제정도가 높거나 문제점이 있는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양식물의 규정이 31.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양식어업의 구분규정, 양식어업의 종류규정, 양식시설의 규모규정 등으로 나타났음.
 -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등 기타 비율도 4.7%가 응답하였으며, 이는 불필요한 규제가 존재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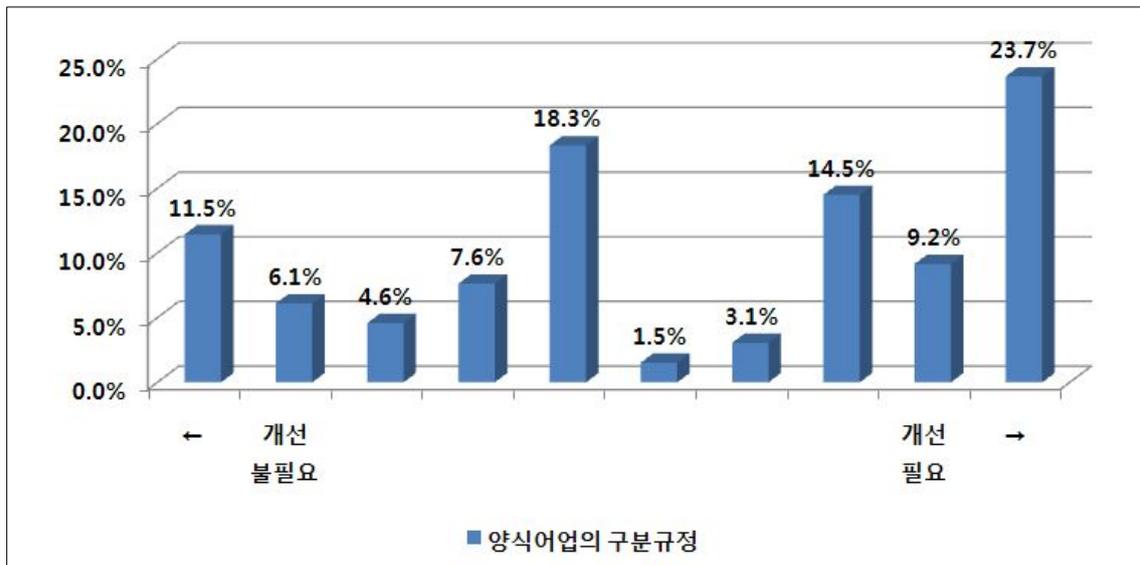


<그림 4-1> 현행 규제의 문제점 인식정도

3. 세부 양식규제항목의 개선(완화)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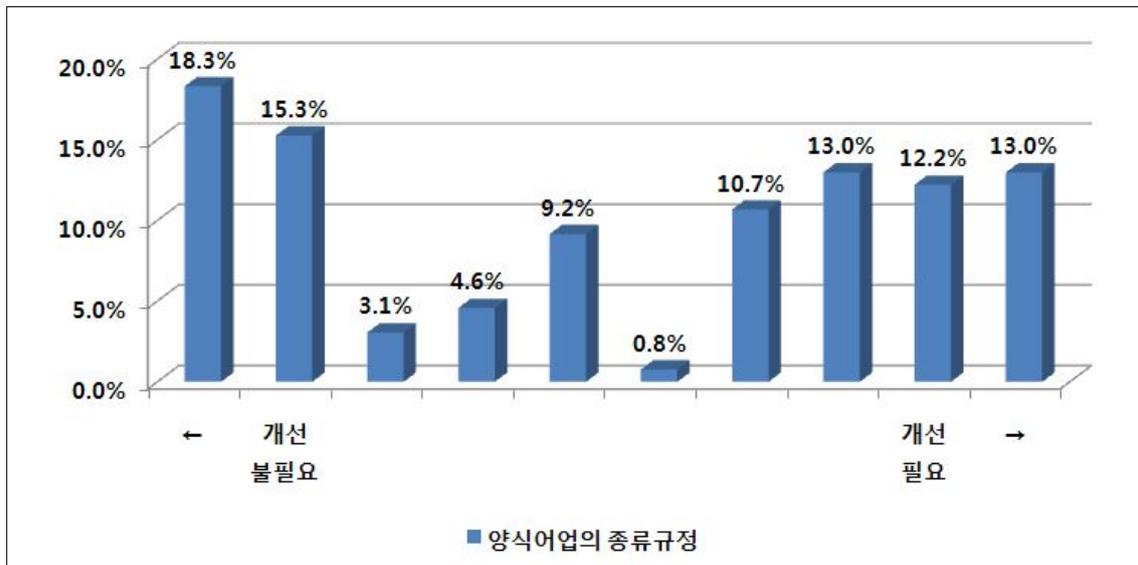
- 양식어업의 구분 규정은 수산업법 제8조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양식어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양식어업 구분 규정의 완화는 결국 어업인의 양식어업 자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양식어업의 구분규정의 개선(완화) 필요성을 살펴보면 매우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3.7%로 높게 나타났음. 조사는 리커드 10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7점이상으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47.3%임
- 이에 반하여 양식어업 구분의 개선이 불필요 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도 약 11.5%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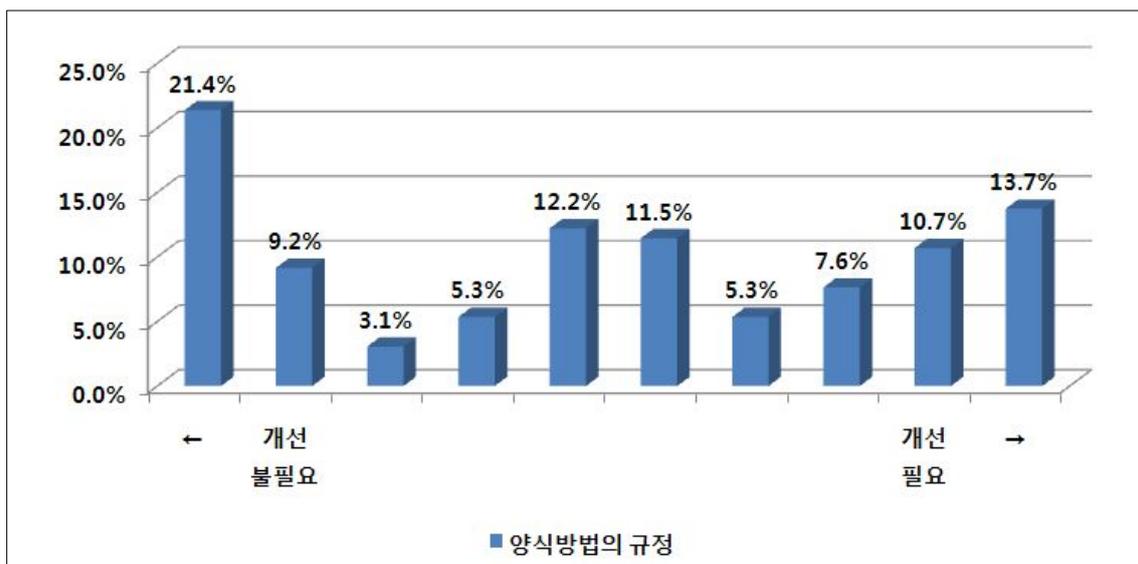
<그림 4-2> 양식어업의 구분규정 개선필요 인식

- 양식어업의 종류 규정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양식어업 구분별 수하식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가두리양식어업 등으로 규정됨.
- 양식어업의 종류규정에 대한 개선필요성 인식을 살펴보면 개선이 불필요 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약 5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양식어업 종류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양식방법별로 양식어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양식어업자가 기술, 자본 및 경영여건을 감안할여 신축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이유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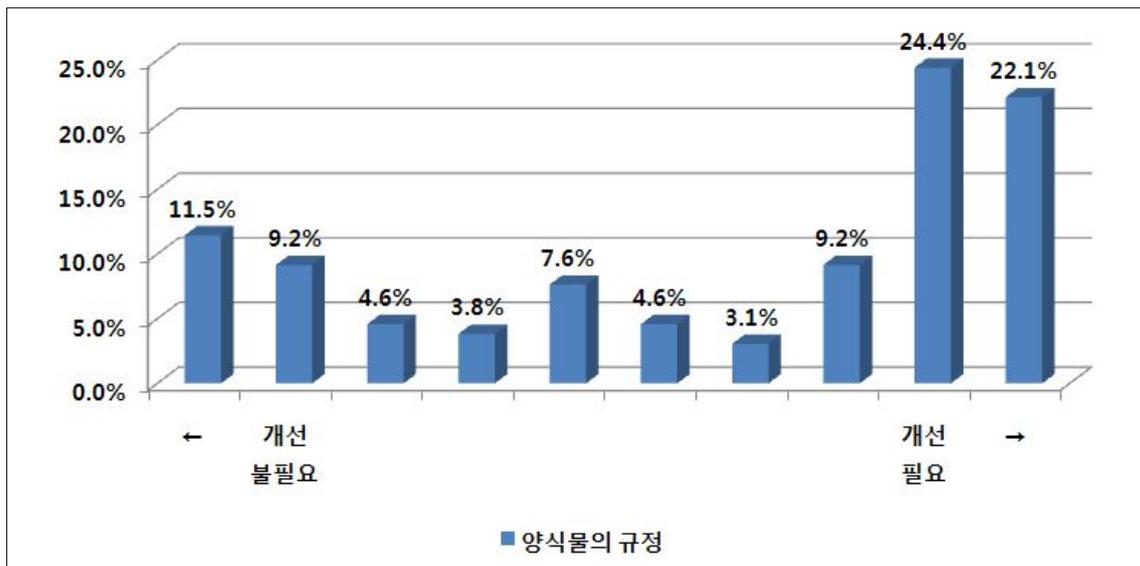
<그림 4-3> 양식어업의 종류규정 개선필요 인식

- 양식방법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8조 및 별표2,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홍식, 투석식 등에 대한 규정임
- 양식방법의 규정에 있어 조사된 응답자는 매우 불필요가 약21.4%로 나타나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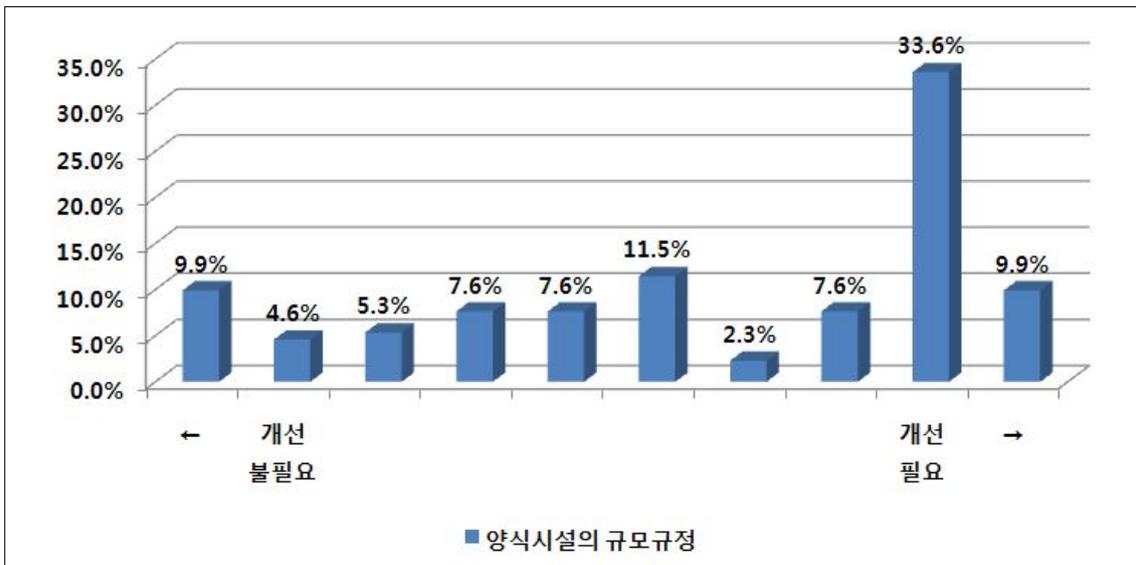
<그림 4-4> 양식방법의 규정 개선필요 인식

- 양식물의 규정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8조 및 별표2, 별표5에서 양식어업 구분별, 양식방법의 종류별로 김, 파래, 미역, 다시마 등 세부 품종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개선필요 인식을 살펴보면 개선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개선 필요성이 9,10점이 약 46.5%로 상대적으로 타 양식규제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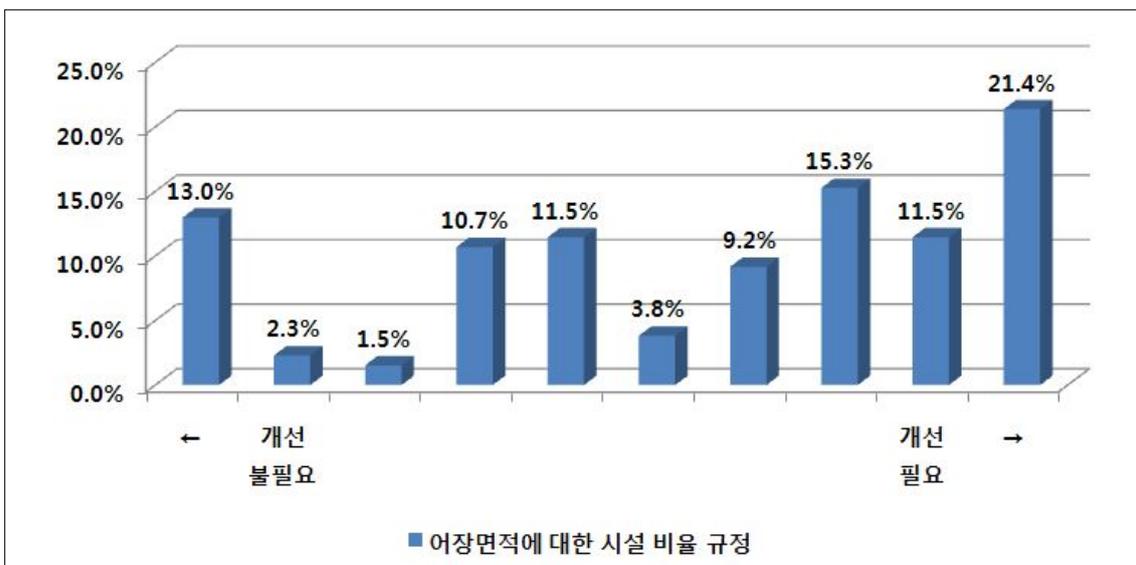
<그림 4-5> 양식물의 규정 개선필요 인식

- 양식시설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별표2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개선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이유는 양식시설의 규모가 현실적이지 못하며,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실제 일부 어업인들은 양식시설의 규모규정에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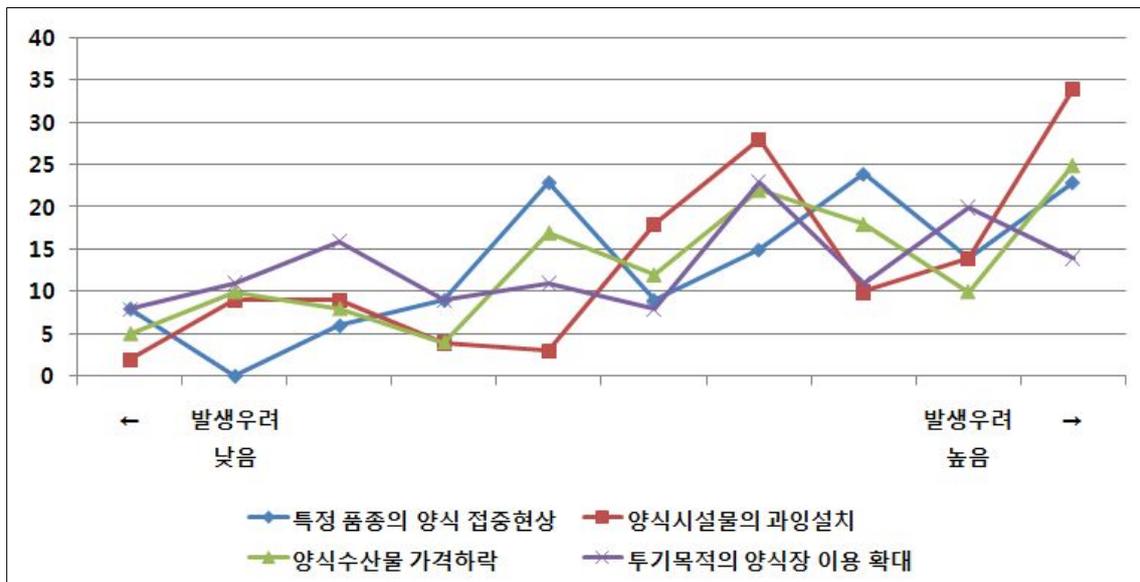
<그림 4-6> 양식시설의 규모규정 개선필요 인식

-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은 면허를 받은 어장에 있어서 시설을 설치하는 비율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상한치의 경우 과도한 밀식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일부 응답자의 경우 시설비율의 하한치는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경우 상한치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4-7>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 규정 개선필요 인식

- 기타 규제사항으로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등 규정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별표5에서 정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약 67%가 어장의 수심은 규제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양식어업의 규제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서는 특정 품종의 양식 집중현상, 양식시설물의 과잉설치, 양식수산물 가격하락, 투기목적의 양식장 이용확대 등이 있음.
- 이러한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 중 발생우려가 높은 항목으로 양식시설물의 과잉설치가 79.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양식수산물 가격하락 문제(66.4%), 특정 품종의 양식집중 현상(64.8%) 순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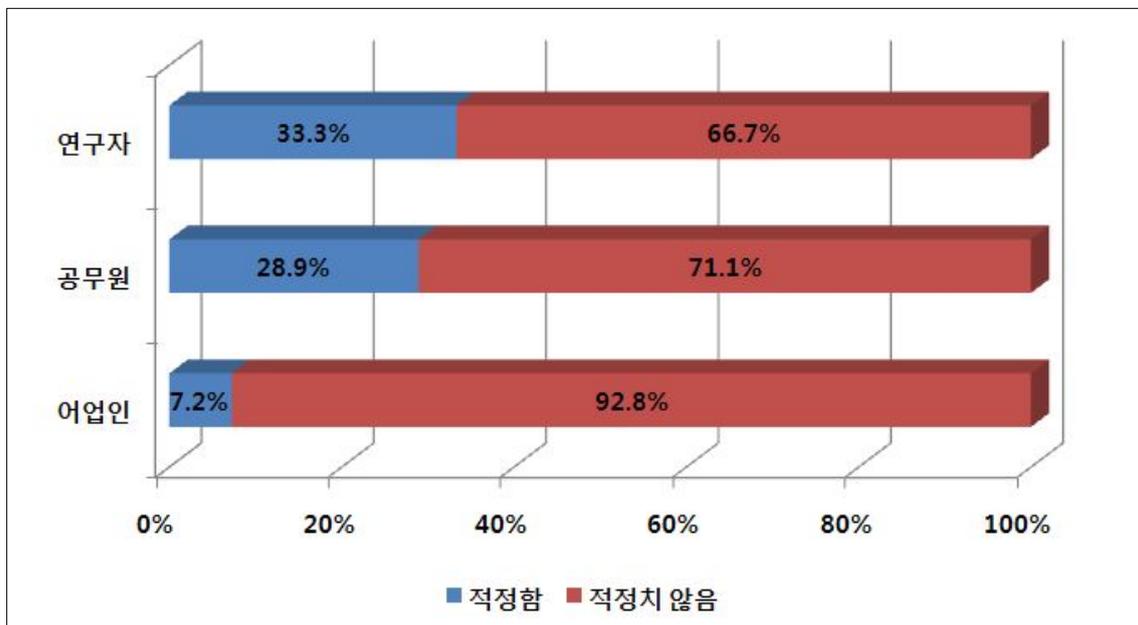


<그림 4-8> 양식어업 규제완화 시 문제점 발생 인식

제2절 집단별 규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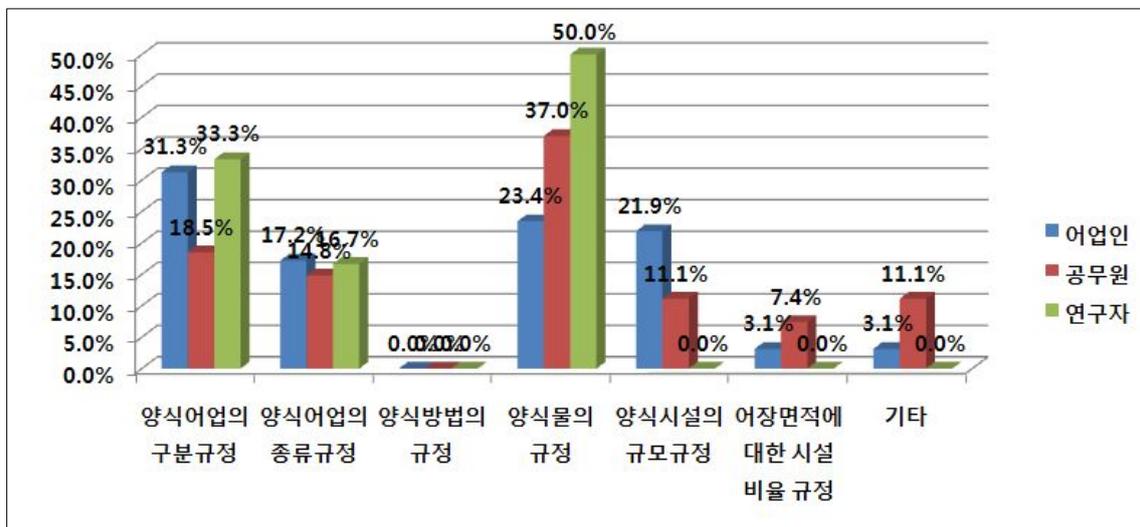
1. 현행 규제의 적정성

- 집단별로 양식어업 법·제도상 규제의 적정성 인식을 살펴보면 어업인의 약 92.8%가 현행 제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 연구자 순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은 결과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어업현장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은 현행 규제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세 집단 모두 적정치 않음이 50% 이상으로 현행의 양식어업 제도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4-9> 집단별 양식어업 법·제도상 규제의 적정성 인식

- 양식어업의 구분 규정, 양식어업의 종류 규정, 양식방법의 규정, 양식물의 규정, 양식시설의 규정, 어장면적 시설비율 규정, 기타규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항목별 문제점을 인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어업인의 경우 양식어업의 구분규정 및 양식물의 규정이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는 양식물의 규정(37.0%)이 가장 문제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
- 연구자는 양식물의 규정(50.0%)이 가장 문제점이 많으며, 그 다음으로 양식어업의 구분규정이라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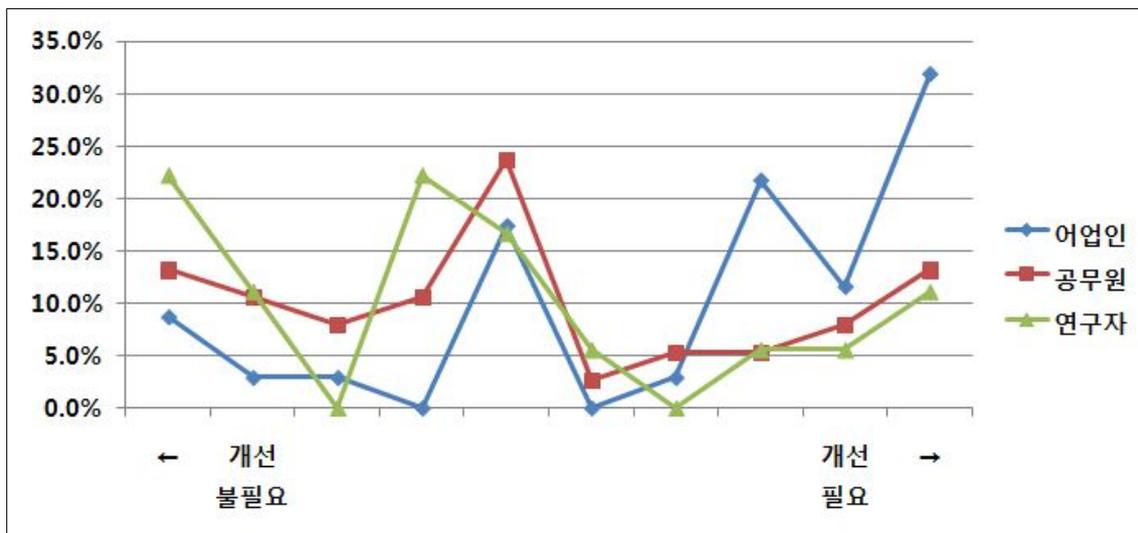
<그림 4-10> 집단별 양식어업 법·제도상 규제의 적정성 인식

2. 세부 양식규제항목의 개선(완화) 필요성

- 집단별 양식규제항목의 개선에 대한 세부 필요성 인식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남
- 양식어업의 구분규정에서는 연구자집단이 개선 불필요가 22.2%로 규제완화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인은 약 31.9%가 매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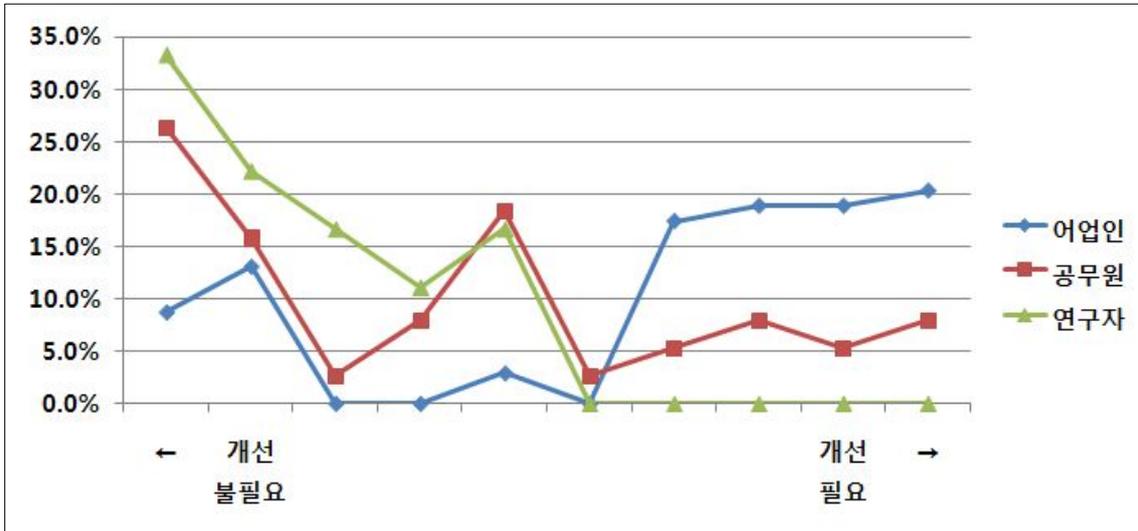
<표 4-2> 집단별 양식어업 범·제도상 규제의 개선 필요성

항목 구분	집단	개선 필요성									
		←개선 불필요					개선 필요→				
양식어업 의 구분규정	어업인	87%	29%	29%	00%	174%	00%	29%	21.7%	11.6%	31.9%
	공무원	132%	105%	79%	105%	237%	26%	53%	53%	79%	132%
	연구자	222%	11.1%	00%	222%	167%	56%	00%	56%	56%	11.1%
양식어업 의 종류규정	어업인	87%	130%	00%	00%	29%	00%	174%	188%	188%	203%
	공무원	263%	158%	26%	79%	184%	26%	53%	79%	53%	79%
	연구자	333%	222%	167%	11.1%	167%	00%	00%	00%	00%	00%
양식방법 의 규정	어업인	11.6%	72%	00%	00%	29%	174%	72%	145%	174%	21.7%
	공무원	31.6%	53%	79%	79%	289%	53%	26%	00%	53%	53%
	연구자	444%	167%	56%	167%	11.1%	56%	00%	00%	00%	00%
양식물의 규정	어업인	87%	87%	29%	00%	29%	00%	00%	72%	362%	333%
	공무원	132%	105%	105%	53%	132%	105%	105%	105%	53%	105%
	연구자	167%	11.1%	00%	11.1%	167%	56%	00%	11.1%	222%	56%
양식시설 의 규모규정	어업인	58%	29%	29%	00%	00%	87%	29%	11.6%	493%	159%
	공무원	105%	105%	132%	53%	21.1%	184%	26%	53%	105%	26%
	연구자	222%	00%	00%	333%	11.1%	11.1%	00%	00%	222%	00%
어장면적 에 대한 시설비율 규정	어업인	87%	29%	00%	00%	58%	29%	58%	21.7%	174%	348%
	공무원	105%	26%	53%	158%	184%	79%	158%	105%	79%	53%
	연구자	333%	00%	00%	333%	222%	00%	11.1%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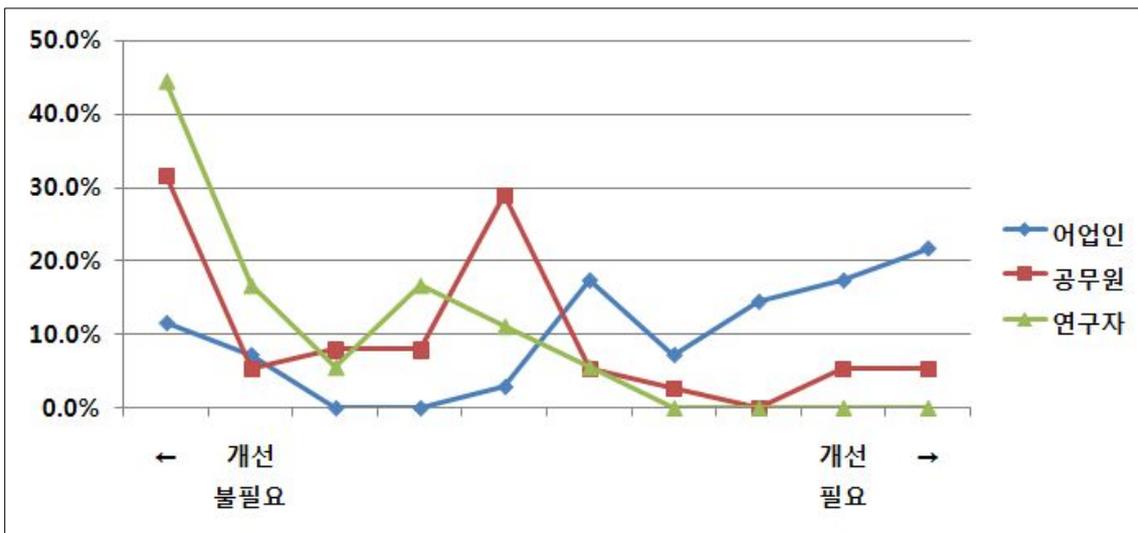
<그림 4-11> 집단별 양식어업의 구분규정 개선필요 인식

- 양식어업의 종류규정은 대부분의 집단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어업인은 타 집단보다 개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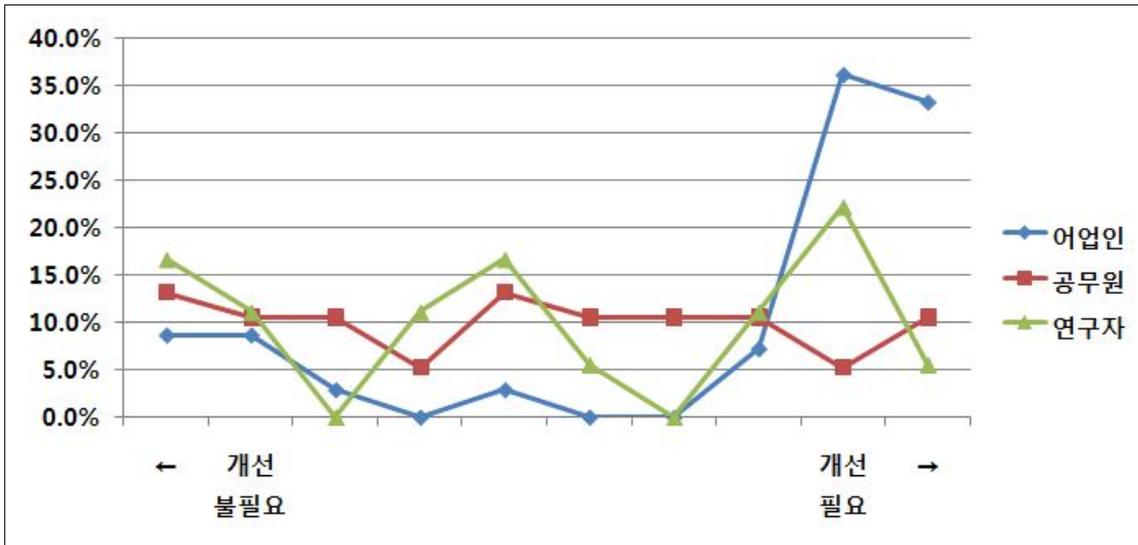
<그림 4-12> 집단별 양식어업의 종류규정 개선필요 인식

- 양식방법의 규정 역시 양식어업의 종류규정과 비슷한 응답 분포를 가짐. 어업인의 경우는 개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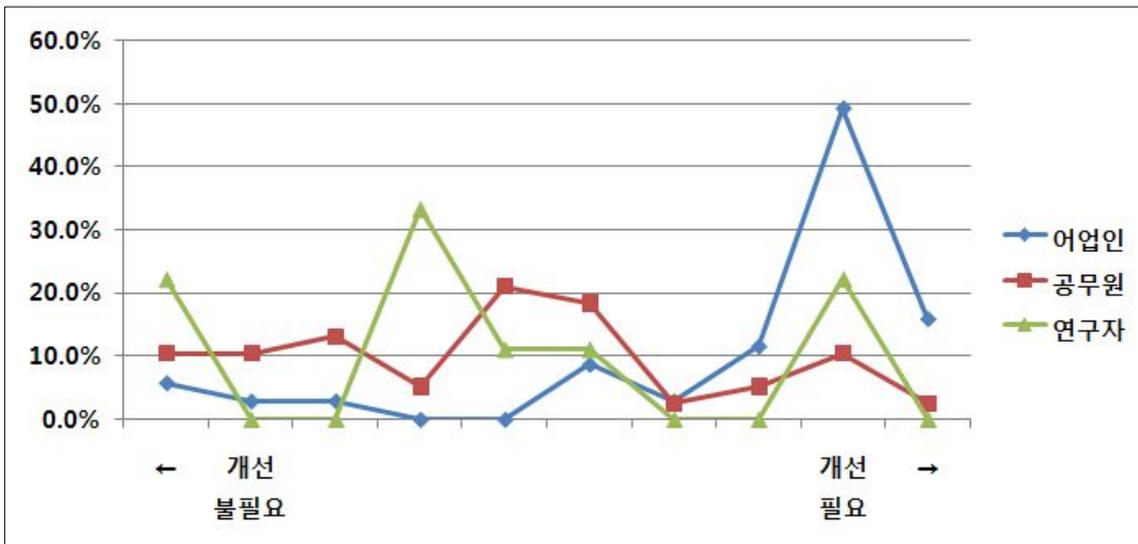


<그림 4-13> 집단별 양식방법의 규정 개선필요 인식

- 양식물 및 양식시설의 규모규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어업인의 경우 양식물은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롭게 시장상황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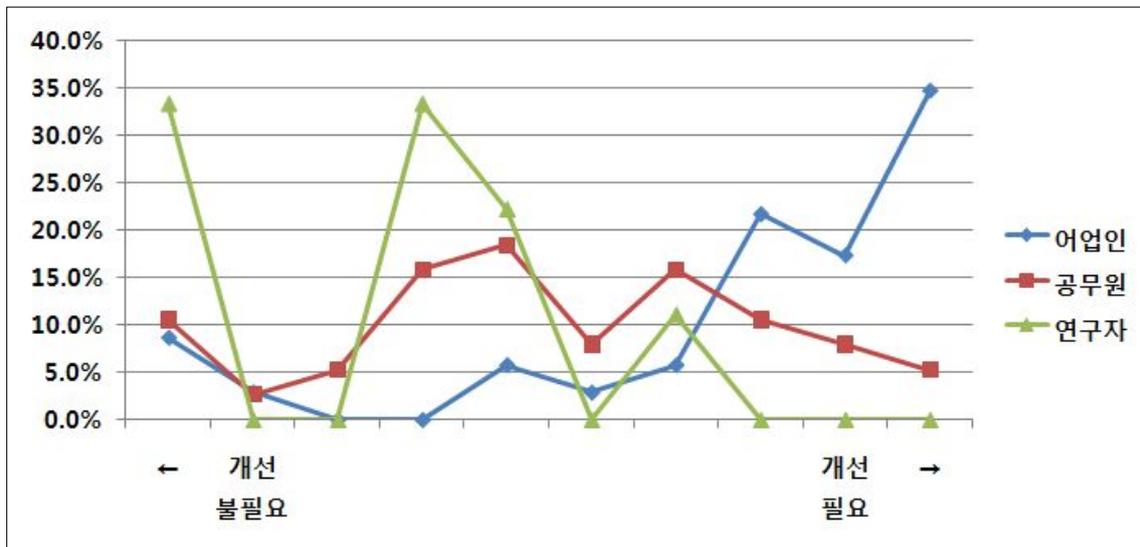


<그림 4-14> 집단별 양식물의 규정 개선필요 인식



<그림 4-15> 집단별 양식시설의 규모규정 개선필요 인식

-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 규정에 대한 인식은 연구자의 경우 개선이 매우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결국 시설 비율의 증가는 양식을 하는데 있어서 해양환경을 악화 시켜 추후 생산량이 더 낮아지게 되므로 완화를 하는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반하여 어업인은 현실적으로 현재 규정의 시설비율은 어가경영 및 생산에 있어서 낮은 수준으로 규제완화를 통하여 증가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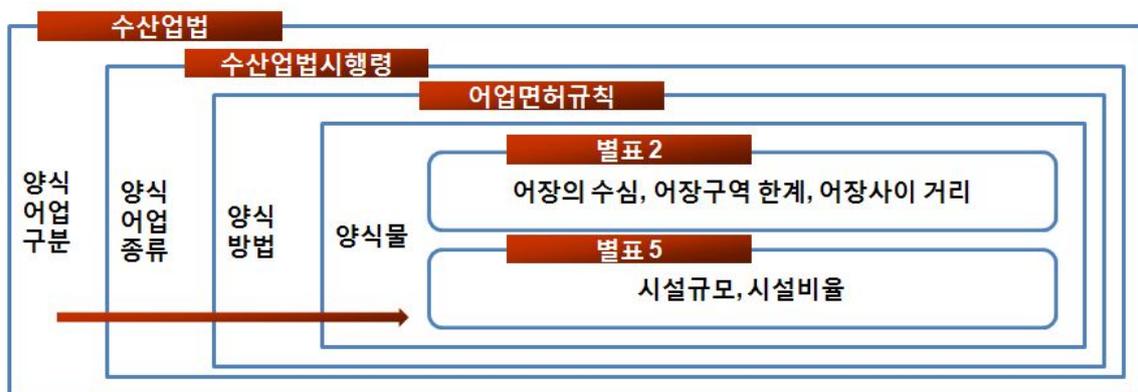


<그림 4-16> 집단별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 규정 개선필요 인식

제3절 규제완화 항목 결정 분석

1.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 선정 개요

- 양식어업에 있어서 제도상 주요 규제항목은 9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음.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조류, 패류, 어류 등 양식어업 구분이 가장 큰 틀을 가지고 있으며, 이 틀 내부에 양식어업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등이 규제되고 있음
- 이러한 양식어업 규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상위규제(수산업법)와 하위규제(어업면허규칙)로 분류가 가능하며, 상위규제로 갈수록 포괄적인 특성을 가짐
 - 어업면허규칙 별표에서 규제하고 있는 어장의 수심, 시설규모 등은 상위규제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상위계층으로 이동 할수록 제도의 변경에 따른 어업현실에 있어서 규제의 혼란 및 순응비용 등에 문제점이 생김
- 양식어업에 있어서 주요 규제항목에 대한 개선(완화)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7>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결정 개요

2.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별(9개항목) 규제완화 방법

- 앞서 제시된 총 9개의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에 대하여 규제완화 방법 및 변경 시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검토하였음
- 첫째, 양식어업 구분규정의 완화 방법으로는 수산업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양식어업 등 규정을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방안과 하위체계(양식어업의 종류·방법 등 규정)에 포함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둘째,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양식어업의 종류 규정의 완화 방법으로는 수하식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가두리양식어업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양식어업 구분규정 하에서 자유롭게 어업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 양식어업의 종류 규정의 삭제 시에는 양식방법의 규정도 삭제가 필요함
- 셋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는 양식방법의 규정의 완화 방법으로는 건홍식, 투석식 등 규정을 삭제하여 양식어업 종류 규정 하에서 자율성을 가지는 방법이 있음
- 넷째, 동 규칙에 근거하여 양식어업의 종류 및 방법 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물에 대한 규제완화 방법으로는 양식물규정을 삭제하여 방법을 검토하였음
 - 현재 양식물의 지정현황은 앞서 문제점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식방법별로 품종을 지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방법에서 ‘그 밖의 패류, 유용수산동물’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음
- 다섯째, 시설규모는 동 규칙 제10조에 따라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항이 양식기술

의 발전에 따른 기술개발 및 어업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한 실정임. 이러한 시설규모에 대한 완화방안으로는 우선 시설규모를 법상 삭제하는 방안과 일본 및 중국과 같이 지자체에서 지역별·해역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리를 이관하는 방법이 있음

- 그러나 시설규모는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양식지침과 같이 사용될 수 있으며, 시설규모가 없을 경우에 자연재해로 인한 지원 및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 등 여러 행정적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준이 모호해지는 문제점을 가짐. 그러므로 시설규모의 삭제 시에 양식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농림수산 식품부 고시 등을 통하여 규정해 놓을 수 있음

○ 여섯째, 시설비율은 역시 동 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하한치와 상한치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우렁챙이의 경우 시설비율이 어장면적의 5%~10%만 시설할 수 있음. 이러한 시설비율에 대한 규제완화 방법으로는 시설비율의 삭제하는 방안, 시설비율에 있어 하한선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 시설비율 상한치를 어업현실을 반영하여 증가시키는 방안 등이 고려 가능함

- 시설비율의 삭제시에는 경쟁적 시설비율의 확대로 인해 양식어업의 특성상 과잉시설로 인한 해양환경에 대한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⁷⁾

○ 일곱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별표 5에 에 근거하고 있는 어장의 수심에 대한 규제완화 방법은 어장 수심 항목 삭제 또는 수심 제한 폭의 완화 등이 있음

○ 여덟째, 어장구역 한계의 경우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별표 5에 에 근거하고 있으며 규제의 완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어장구역 한계 완전 삭제 방안과, 어장구역 한계의 하한치 삭제 방안 등임

7) 외부불경제는 어떤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이며, 대표적인 예로는 대기 오염, 해양 오염, 소음 공해 등임.

- 아홉째, 어장사이 거리는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이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어장사이 거리 삭제 및 어장사이 거리 축소 등을 고려할 수 있음

<표 4-3>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별(9개항목) 규제완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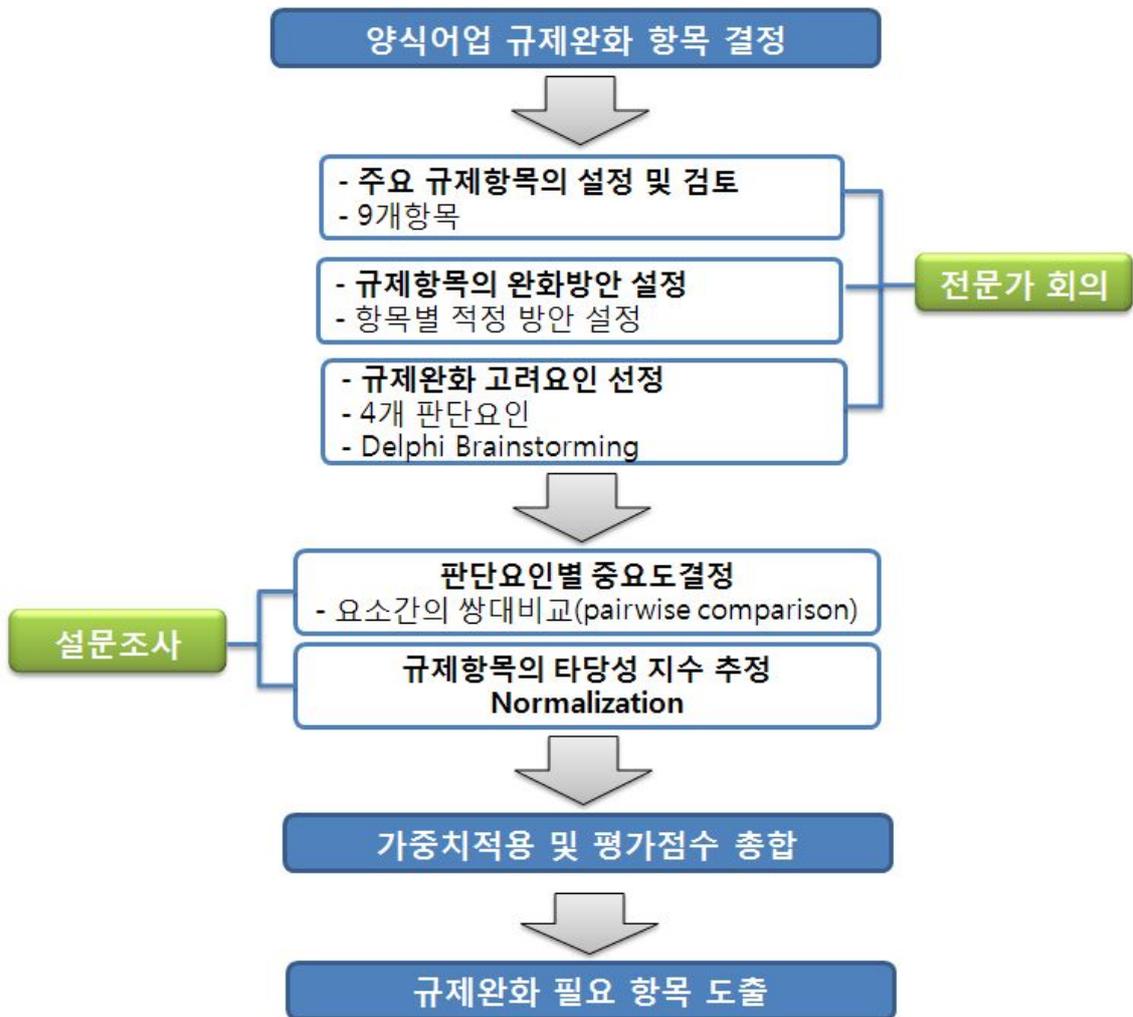
규제완화 항목	규제완화 방법	법 개정 필요
양식어업의 구분 규정	1. 양식 구분 삭제 2. 양식어업 종류에 포함	수산업법 제8조
양식어업의 종류 규정	1. 양식어업 종류 삭제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
양식방법의 규정	1. 양식방법 규정 삭제	어업면허규칙 제10조 18조 별표 2, 별표 5
양식물	1. 양식물규정 삭제	어업면허규칙 제10조 18조 별표 2, 별표 5
시설규모	1. 시설규모 완전삭제 2. 지자체에 이관 3. 고시 등으로 시설규모 규정	어업면허규칙 제10조 별표 2
시설비율	1. 시설비율 완전삭제 2. 시설비율 하한치삭제 3. 시설비율 상한치 증가	어업면허규칙 제10조 별표 2
어장의 수심	1. 어장 수심 항목삭제 2. 고시 등으로 시설규모 규정	어업면허규칙 제15조 별표 5
어장구역 한계	1. 어장구역 한계 완전 삭제 2. 어장구역 한계 하한치 삭제	어업면허규칙 제15조 별표 5
어장사이 거리	1. 어장사이 거리 삭제 2. 어장사이 거리 축소	어업면허규칙 제15조 별표 5

3.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 선정 절차

- 양식어업에 있어서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완화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규제항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임
 - 일부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사례연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성적 방법에 의한 개선사항의 제시는 객관성을 가지기에는 미약하며, 또한 여러 규제개선항목이 있을 경우 이들 간의 중요도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우선순위 선정 등에 문제점을 발생시킴
- 본 연구에서는 앞서 도출된 양식어업의 주요 규제항목(9개 항목)을 대상으로 각 규제항목별로 계량적 기법을 이용하여 규제완화의 필요항목을 제시하였음
- 규제완화 항목 결정 분석방법은 1단계로 양식어업 주요 규제항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규제항목별 적정 규제완화방안을 설정하였음. 그 다음으로는 규제완화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고려요인을 선정함
 - 규제항목의 완화방안 설정 및 규제완화 판단요인은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Delphi Brainstorming 기법을 사용하였음. 도출된 규제완화 판단요인은 적정성, 필요성, 효율성, 과급성의 4개 요인임
- 2단계에는 판단요인별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판단요인 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하여 중요도 가중치를 추정하였음
 - 추정을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3단계에는 9개의 주요 규제항목에 대하여 판단요인의 지수값을 추정하였으며, 지수값의 추정에는 앞서 어업인, 관련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설문조사의 결과값을 이용하였음.⁸⁾

8) 과급성은 연구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완화방법에 대한 과급인식에 대하여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 4단계는 앞서 도출된 판단요인별 중요도 가중치와 규제항목의 판단요인별
지수값을 이용하여 규제항목별 평가점수를 도출하였음
- 분석의 절차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그림 4-18>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 선정 절차

추정하였음.

4. 양식어업 규제완화 결정 판단요인 선정

- 양식어업의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주요 규제항목에 대하여 ‘어떤 판단기준을 가지고 완화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Delphi Brainstorming 기법을 통해 판단요인을 총 4개로 선정하였음
- 첫째, 적정성은 주요 규제항목의 현행 규제정도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인임. 결국 어업현실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규제항목은 완화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둘째, 필요성은 얼마나 규제항목의 완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판단요인으로 필요성이 높을수록 규제완화의 시급성을 가지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요인이 될 수 있음
- 셋째, 효율성은 규제항목별로 규제완화를 시행하였을 때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규제완화를 통하여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 증대 및 어업인 소득의 증대 등 경제적인 효과를 포함하여, 양식 어업인의 정주환경 개선, 양식어업에 대한 인식 전환 등 비경제적인 효과도 고려 가능함
- 넷째, 파급성은 규제항목의 완화가 어업인 및 관련인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판단요인임. 이에선 규제완화를 위해 법·제도의 개정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 등 규제완화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규모 등 여부와 어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제도의 변경 가능성, 양식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주요 규제항목별로 이러한 판단요인을 이용한 평가 및 중요도를 산출할 경우 규제완화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도

출된 규제완화 판단요인 및 분석에 사용된 지수 추정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4-4> 양식어업 규제완화 결정 판단요인 선정

판단요인	내 용	지수 추정방법
적정성	- 현행 규제정도가 타당한지 여부 - 어업현실에 있어서 문제점 발생 여부	설문조사 결과 (적정성 및 문제점 발생)
필요성	- 규제완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여부	설문조사 결과 (개선 필요성)
효율성	- 규제완화시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여부	설문조사 결과 (개선 시 생산증가)
파급성	- 규제완화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여부(어업질서 혼란) - 제도의 변경 가능성 여부 - 양식어업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조사 결과 (Likert척도, 3개항목)

5. 양식어업 규제완화 결정 판단요인 가중치 선정

- 양식어업 규제완화를 결정하는 판단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항목의 결정에 있어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됨
- 판단요인별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하여 동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요소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분석을 실시하였음. 분석에는 T. Saaty가 제안한 17점 쌍대척도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분석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관성의 정도를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 CI)를 통하여 검증하였음⁹⁾
- 판단요인의 중요도 가중치는 이후 단계의 각 규제완화 항목의 지수값과 연계하여 항목별 종합 완화 점수를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값임
- 판단요인에 대한 중요도를 산출하기 위한 설문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짐

9) 일관성 지수는 $(CI) = (\lambda_{\max} - n) / (n - 1)$ 을 통하여 산출가능함

예시)
 (1) 양식어업 규제항목의 완화를 위한 판단요인 중 <적정성>과 <필요성> 중 어느 판단요인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 <-----비슷함-----> 중요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적정성> <필요성>

원하시는 항목에 √ 해 주세요

<그림 4-19> 설문지 예시

-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규제완화의 판단요인 중 필요성이 0.3153점으로 가장 중요도가 높은 판단요인으로 분석되었음. 결국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어서 어업인 및 관계인의 필요정도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 다음으로는 파급성, 효과성, 적정성 순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파급성의 경우는 실제적 제도의 개선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음.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는 0.0013으로 응답에 대한 신뢰성을 가짐
 - 일반적으로 CI <0.1 일 경우 신뢰성 있음

<표 4-5> 양식어업 판단요인별 중요도 가중치 분석결과

판단요인 항목	적정성	필요성	효과성	파급성	종합점수	Consistency Index
점 수	0.1950	0.3153	0.2165	0.2731	1	0.0013

6.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별 판단요인 추정결과

- 양식어업에 있어서 주요 규제항목에 대한 각 판단요인별 지수값의 추정을 위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가중값을 도출하여 Normalization을 통해 최소값과 최대값을 0~1사이로 추정함
 - 지수화과정에서 각 지수값이 1에 가까울수록 완화의 필요 및 중요도가 높도록

추정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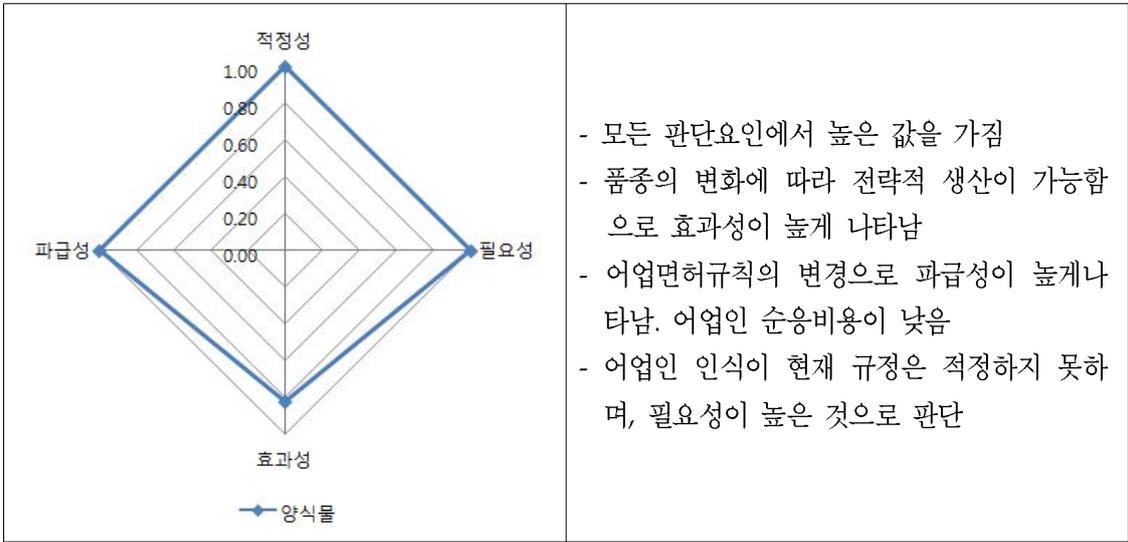
- 일반적으로 필요성, 효과성은 높을수록 규제완화에 긍정적이며, 과급성 및 적정성은 높을수록 규제완화를 부정적이게 반응함. 그러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과급성 및 적정성은 역수를 이용하여 그 값이 높을수록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정리를 하였음
- 규제항목의 추정된 지수를 살펴보면 적정성 측면에서는 양식물 규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식방법의 규정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필요성역시 양식물 규정이 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비율, 시설규모 양식어업의 구분 순으로 분석되었음
- 효과성에 있어서는 양식어업구분이 가장 큰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양식물 어장구역 한계 순으로 나타났음. 효과성의 경우는 이 3개의 규제항목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시설량의 증가 및 양식품종의 자율성이 어업생산에 크게 증가를 가지며, 이외 항목은 생산성 변화를 가지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제도개선에 따른 사회적 비용, 변경의 편리성 등이 부정적임(수산업법 개정)
- 과급성에 있어서는 양식어업의 구분이 매우 낮게 나타나며, 이는 수산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양식어업질서에 있어서 큰 틀의 체계를 바꾸게 되므로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표 4-6> 규제항목의 타당성 지수 추정 Norm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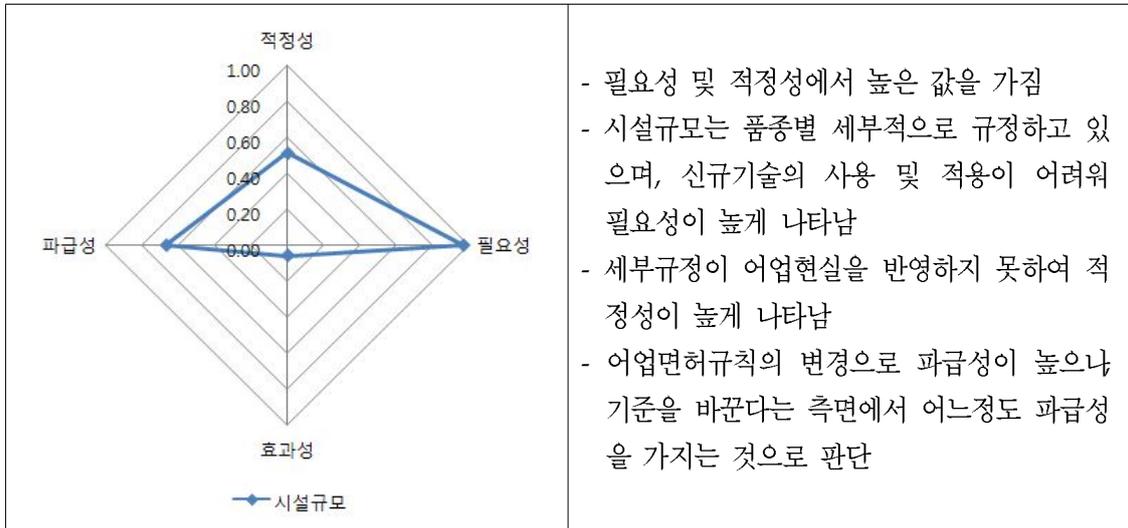
구분	양식어업의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규정	양식방법의 규정	양식물	시설 규모	시설 비율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 한계	어장사이 거리
적정성	0.88	0.55	0.00	1.00	0.52	0.12	0.15	0.15	0.15
필요성	0.87	0.56	0.51	1.00	0.97	0.95	0.58	0.48	0.00
효과성	1.00	0.02	0.00	0.82	0.06	0.08	0.03	0.14	0.07
과급성	0.08	0.00	0.17	1.00	0.67	1.00	0.67	0.58	0.00

○ 각 규제항목별 판단요인의 지수값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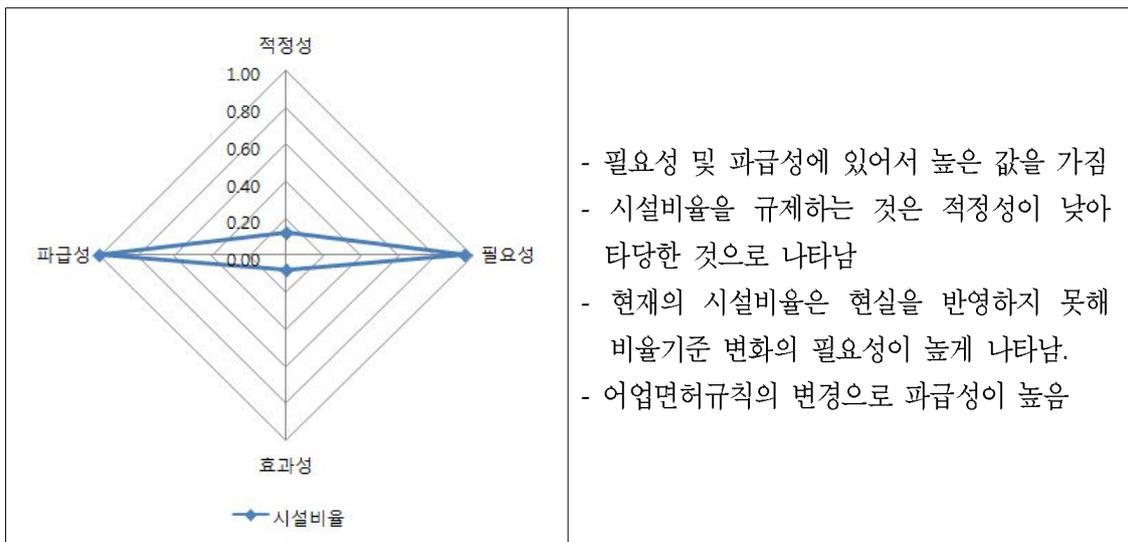
<p>적정성 1.00 0.80 0.60 0.40 0.20 0.00</p> <p>파급성</p> <p>필요성</p> <p>효과성</p> <p>— 양식어업의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성 및 적정성, 필요성은 높으나 파급성이 낮음 - 어업인 자율성이 높아지므로 전략적 생산 등으로 효과성이 높음 - 수산업법 개정 필요 및 양식어업질서 혼란 등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파급성 낮음 - 단기적 변화보다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규제완화 필요
<p>적정성 0.60 0.50 0.40 0.30 0.20 0.10 0.00</p> <p>파급성</p> <p>필요성</p> <p>효과성</p> <p>— 양식어업의 종류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성 및 필요성이 높으며, 파급성과 효과성 낮음 - 품종의 변화 및 시설량의 증대를 가지고 오지 못하므로 효과성이 낮음 -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필요 및 양식어업질서 혼란 등으로 인해 파급성 낮음
<p>적정성 0.60 0.50 0.40 0.30 0.20 0.10 0.00</p> <p>파급성</p> <p>필요성</p> <p>효과성</p> <p>— 양식방법의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이 높으며, 적정성, 효과성이 매우 낮음 - 품종의 변화 및 시설량의 증대를 가지고 오지 못하므로 효과성이 낮음 - 면허규칙 변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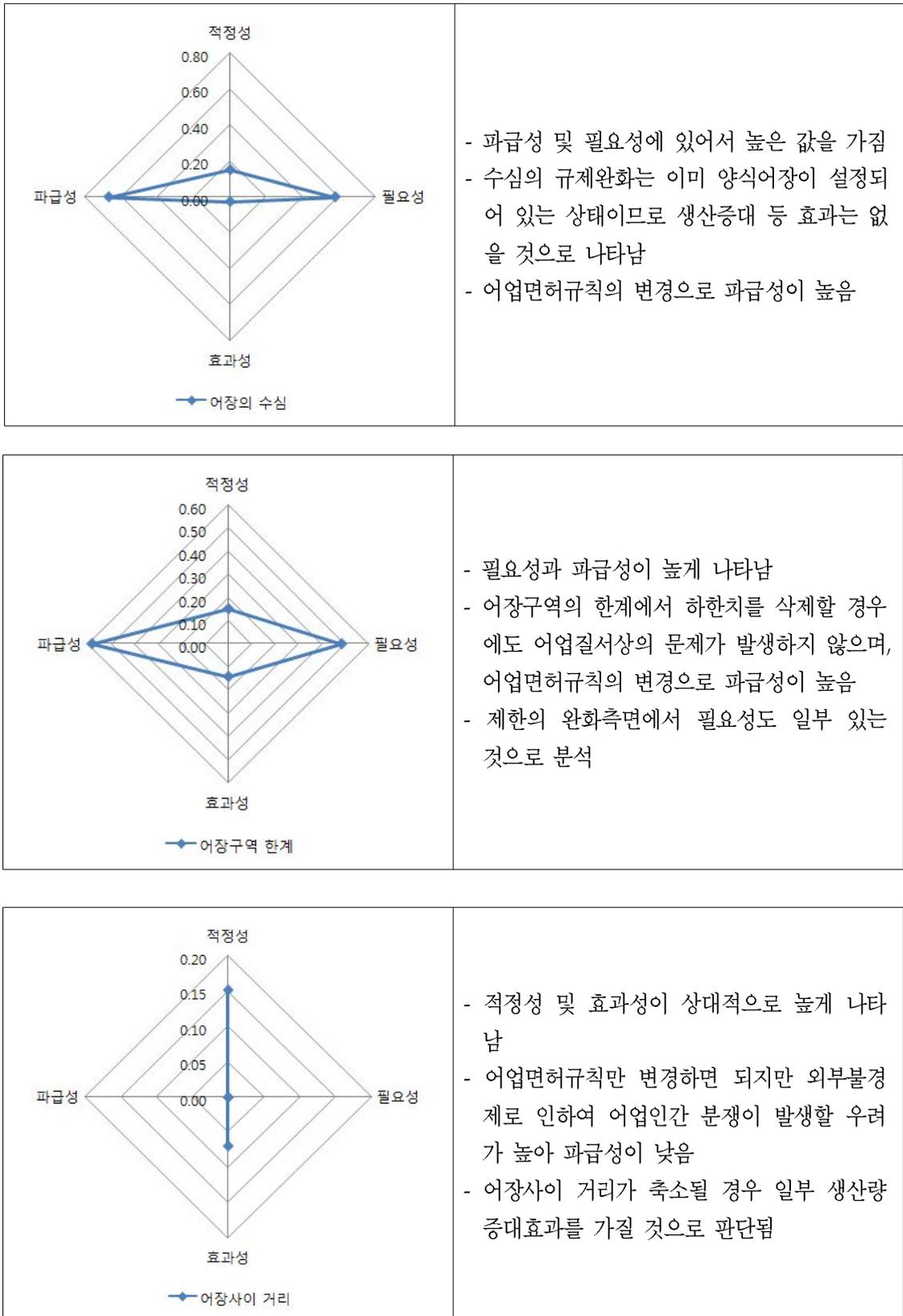
- 모든 판단요인에서 높은 값을 가짐
- 품종의 변화에 따라 전략적 생산이 가능함으로 효과성이 높게 나타남
- 어업면허규칙의 변경으로 파급성이 높게 나타남. 어업인 순응비용이 낮음
- 어업인 인식이 현재 규정은 적정하지 못하며,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필요성 및 적정성에서 높은 값을 가짐
- 시설규모는 품종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기술의 사용 및 적용이 어려워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세부규정이 어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적정성이 높게 나타남
- 어업면허규칙의 변경으로 파급성이 높으나 기준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파급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



- 필요성 및 파급성에 있어서 높은 값을 가짐
- 시설비율을 규제하는 것은 적정성이 낮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시설비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비율기준 변화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어업면허규칙의 변경으로 파급성이 높음



<그림 4-20> 규제항목의 타당성 지수 추정 Normalization

7.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 결정

- 앞서 도출된 주요규제항목의 지수값과 판단요인별 중요도 가중치를 이용하여 양식어업 규제항목에 대한 완화의 중요도를 분석하였음
- 규제완화에 있어서 중요도¹⁰⁾를 살펴보면 양식물이 0.9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양식어업의 구분, 시설비율 순임

<표 4-7> 규제항목의 완화 중요도 분석결과

	양식어업 의 구분	양식어업 의 종류 규정	양식방법 의 규정	양식물	시설규모	시설비율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 한계	어장사이 거리
적정성 (0.1950 가중)	0.171	0.106	0.000	0.195	0.100	0.024	0.030	0.030	0.030
필요성 (0.3153 가중)	0.273	0.177	0.162	0.315	0.304	0.301	0.182	0.153	0.000
효과성 (0.2165 가중)	0.217	0.004	0.000	0.178	0.012	0.018	0.006	0.031	0.015
과급성 (0.2731 가중)	0.023	0.000	0.046	0.273	0.182	0.273	0.182	0.159	0.000
종합점수	0.684	0.288	0.207	0.961	0.599	0.615	0.399	0.372	0.044

- 양식어업 주요 규제항목 중 규제완화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정된 중요도 점수를 이용하여 규제완화 중점집단, 규제완화 필요집단, 규제완화 불필요집단의 3집단으로 분류를 하였음
- 규제완화 중점 집단에는 양식물(품종), 양식어업 구분, 시설비율 등이 포함됨. 그러나 양식어업 구분의 경우 규제완화의 과급성을 고려하였을 때 중·장기적 관점으로 완화를 실시하여 어업인 순응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10) 여기서 중요도란 규제완화를 시행해야하는 필요정도 및 우선순위정도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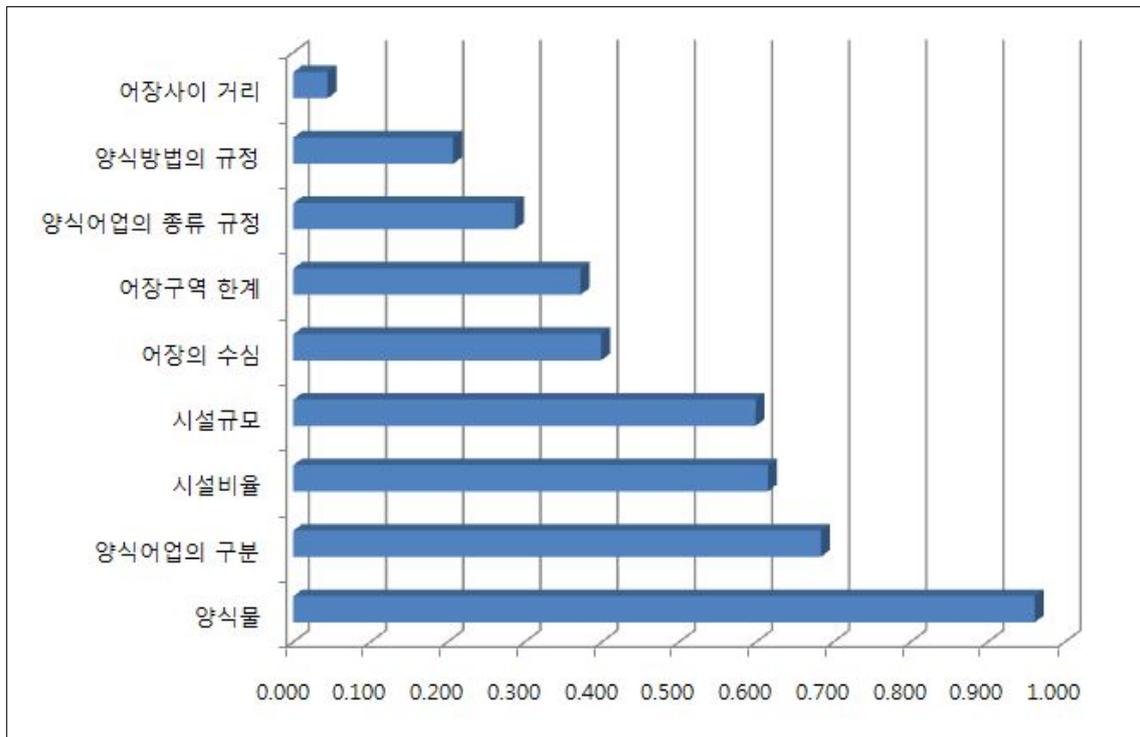
- 시설의 비율은 규제완화에 있어 그 중요성 및 필요성은 높지만 시설비율에 대한 적정선은 자연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
 - 양식어업 종류 및 방법에 따라 적정선은 서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별·해역별로도 차이를 가질 것으로 사료됨
 -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자연과학적 적정선에 대한 반영이 어렵다는 한계점으로 개선안 제시에서는 현행 제도의 시설비율기준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향후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해양 환경적 부분, 양식생물의 생태적 부분 등을 고려한 시설비율의 완화가 필요

- 규제완화 필요집단은 규제완화 중점집단보다 완화의 시급성 및 필요성은 낮으나 규제완화를 시행해야할 규제들이 포함됨
 - 시설규모,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 한계 등이 이에 포함되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규제완화 불필요집단은 중요도가 낮은 3개 집단으로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의 규정, 어장사이 거리 등이 포함됨

<표 4-8>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 결정

구분	종합점수	순위	집단구분
양식물	0.961	1	규제완화 중점집단
양식어업의 구분	0.684	2	
시설비율	0.615	3	
시설규모	0.599	4	규제완화 필요집단
어장의 수심	0.399	5	
어장구역 한계	0.372	6	
양식어업의 종류	0.288	7	규제완화 불필요 집단
양식방법의 규정	0.207	8	
어장사이 거리	0.044	9	



<그림 4-21> 양식어업 규제완화 항목 결정

제5장 양식어업 규제개선 방안제시

제1절 규제개선의 방향

1. 규제개선 주요 방향

- 양식어업의 현행 기준은 현재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면허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대상품종, 시설규모 및 시설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양식어업의 주요 규제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 양식어업인의 자율성을 높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
 - 둘째 : 양식물 및 시설기준, 시설비율, 어장의 수심 등을 양실 현실과 부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셋째 : 현행 규정상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규정에 대한 정리
 - 넷째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중복된 내용이 포함되는 [별표 2]와 [별표 5]의 통합화
- 해역의 환경변화, 시장의 수요변화, 어업경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어업인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양식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양식 시설기준 마련
 - 양식물의 선택은 양식어업인이 시장예측을 통하여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며, 현행 양식대상품종의 규정은 양식어업인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규제완화에 따라 면허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삭제되는 양식물 및 양식 시설 규모, 수심 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및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양식어업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이 필요함. 예를 들어 양식어업 전반적인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양식어업의 구분 규정의 변경은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큰 틀에서 변화로 인해 양식어업인의 기존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양식수산물 생산의 집중화 현상, 행정비용의 과다 발생 등의 문제점이 발생
- 그러므로 양식어업에 규제의 큰 틀에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중·장기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 규제개선 방안은 양식어업에 있어서 현행의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에 규칙변경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어업인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이 되어야 함

<표 5-1> 양식어업 규제개선 방향

구분	단기적 규제완화	중·장기적 규제완화
	단기적 효율성 중심	중장기 양식질서 재편 중심
규제완화방향	- 양식어업 구분 내에서 양식물의 규제완화 - 시설기준 및 시설비율 규제완화 - 어장의 수심 등 규제완화 - 중복 규정 통합 - 어장구역의 한계 규제완화	- 양식어업 구분 규제완화 - 양식어업 종류·방법 규제완화
법개정항목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별표 5] 개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별표 5] 개정 수산업법 제8조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 양식어업의 법·제도 개선은 첫째, 양식업자의 양식 자율성을 확보하여 주인의식의 강화. 둘째, 정부 행정비용의 축소. 셋째, 유희어장의 이용가능. 넷째, 불법어업 및 부정시설물의 정리로 어업질서 확보 가능. 다섯째, 양식수산물

의 생산량 상승 등 기대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됨

<표 5-2> 양식어업 규제개선 기대효과

구분	세부내용
효율적 생산관리	- 어업 경영성 제고 -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가
양식업자의 양식 자율성 확보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양식물 선택 가능 - 양식어업인 주인의식 강화 - 어촌 정주환경 개선
정부의 행정비용의 축소	- 양식규제관련 어업인 민원 감소 - 행정처리 건수 감소
유힬어장의 이용가능	- 어장관리의 효율성 확보
어업질서 확보	- 불법 및 부정 시설물의 감소 - 어업인간 상충문제 해결가능

2. 세부 규제개선 내용

- 양식어업에 있어서 세부 규제개선 내용은 앞서 어업인 인식조사 및 양식어업 문제점 검토, 주요 규제항목의 전문가 개선방안 검토에서 나타났던 주요 문제점을 위주로 전문가 회의 및 자문을 통하여 도출하였음.

가. 양식물 및 시설기준 개선(단기)

- 개선안의 큰 방향은 현행 양식어업 제도의 규제완화를 통한 어업인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수하식 양식어업, 바닥식 양식어업 등을 규정하는 양식어업의 종류 및 양식 방법은 수산업법 시행령상의 규정이며 통계자료 및 정책방향의 설정을 위해서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양식장은 배타적인 물권적 성격을 가짐. 농업에 있어서 개인의 토지와 유사

한 성격이라 할 수 있음. 토지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소유자가 상황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토지의 상황 변화 및 작물의 가격 변화 등에 따라 생산품종을 변경하게 됨

- 그러나 양식장의 경우는 바다라는 공유적인 특성을 가지며, 외부효과가 농지보다 크게 발생하게 됨.
 - 즉, 밀식 등 과도한 자연자원의 이용은 타 양식장 및 인근의 수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그러므로 어장에서 시설의 비율의 규정의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양 환경적 측면, 생물학적 측면,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함
- 어장의 수심 및 어장구역의 한계의 하한치 등 실질적으로 양식어업에 영향도가 낮은 규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
 - 어장의 시설기준, 어장의 수심, 양식물 규정은 '가이드라인'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칙상 명시

나. 양식어업 구분 개선(중·장기)

- 어업현실에 있어서 양식어업 구분은 어업경영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규제로 작용
- 현재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으로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으로 분류하고 있는 양식어업의 구분을 통합화 하여 양식품종을 자유롭게 어업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양식물의 집중화 현상, 일부 양식수산물 가격하락 등 사회적 문제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양식어업에 있어서 질서를 재편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5-3> 양식어업 규제개선 세부항목별 검토

개선방안		비고	법률 개정
- 양식어업의 구분을 [별표 2] 및 [별표 5]의 양식어업의 종류에 포괄적으로 포함		- 양식업자의 양식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식 어업 구분 간 변경이 필요함. (어류 양식 ▶ 패류 양식 등) - 양식어업의 구분은 수산업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양식어업의 종류의 변경은 시설물의 신규제작 및 변경이 필요하므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 - 일부 양식물에 대해서 시설 기준 별도 표기 - 어업의 쏠림현상의 방지대책 필요	수산업법 8조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및 [별표 5]의 통합		-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등 중복항목 존재. 법상 간편화를 위해 통합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8조 [별표 2],[별표 5]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양식물 규정 삭제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어업인의 탄력적인 양식물 선택 및 유희어장의 이용 가능 - 가이드라인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해 관리 할 수 있도록 명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별표 2],[별표 5]
- 어장구역의 한계 하한치 삭제		- 어장구역의 한계의 하한치는 어업현실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함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별표 5]
- 어장의 수심 삭제		- 양식어업의 면허에서 어장의 수심을 규정할 이유는 없음. 어장간 거리 및 시설비율이 중요 (밀식 및 인근양식장으로의 영향 문제) - 가이드라인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해 관리 할 수 있도록 명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별표 5]
- 어장면적 시설비율의 완화		- 자연과학적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현재 비율의 폭을 현실적으로 완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시설규모 기준완화	지자체 위임	- 시설규모의 기준에 대한 자연과학적 근거가 모호 - 시설의 규모는 지역적·해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표준 기준을 제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기준재조정	- 시설규모의 기준을 자연과학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재조정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표준 기준을 제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표 5-4>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

주요 규제개선 방안	단기 개선방안		중·장기 개선방안
	제1-1안	제1-2안	제2안
- 양식어업의 구분을 [별표 2] 및 [별표 5]의 양식어업의 종류에 포괄적으로 포함	×	×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및 [별표 5]의 통합	×	○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양식물 규정 삭제	○	○	○
- 어장구역의 한계(하한치 규제 삭제)	○	○	○
- 어장의 수심 삭제	○	○	○
- 어장면적 시설비율의 완화(재설정)	○	○	○
- 시설규모 기준 삭제	○	○	○

제2절 양식어업 규제개선(안) 제시

1. 단기 개선(안)

가. 별표 2, 별표 5 유지 개선안(1-1)

1) 규제개선 방안 및 장단점 분석

<표 5-5> 규제항목별 선택 (1-1안)

개선방안	비고	법률 개정
- 양식어업의 구분	- 기존의 수산업법 제8조의 구분으로 유지	수산업법 8조
- [별표 2] 및 [별표 5]	- 기존의 별표 2와 별표 5 구분 유지 - 양식어장의 시설기준(별표2) - 양식어업의 종류, 방법, 양식물, 어장구역의 한계(별표5)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8조 [별표 2], [별표 5]
- 양식물 규정	- 양식물 품종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별표 2], [별표 5]
- 어장의 수심	- 어장의 수심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별표 5]
- 어장면적 시설비율	- 어장면적 시설비율 재설정 및 완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어장구역의 한계	- 어장구역 한계 중 하한치의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시설규모 기준	- 시설규모 기준 삭제 - 시설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해 관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표 5-6> 규제개선에 따른 장·단점분석(1-1안)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만 변경하므로 변경에 대한 편리성을 가짐 - 양식어업 구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어업질서 혼란 약화 - 양식물 규정 삭제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양식물 선택 가능 - 시설규모 삭제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 가능 - 어장관리의 효율성 확보 (유휴어장의 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업 구분에 있어서 변경 불가능으로 어업인 자율성 제한 - 지역별·해역별 시설규모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비용 발생 - 별표2와 별표5가 기존과 같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일부 중복성 문제 발생

2) 개정안

<별표 2>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해조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 • 지주망홍 • 부류망홍 2. 연승식	5부터 18까지 5부터 18까지 5부터 10까지
나. 바닥식 양식어업	투석식 • 천 해	90 이상

2. 패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 수하연식	5부터 10까지
나. 바닥식 양식어업	• 수평망식	5부터 10까지
	2. 연승식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3. 뗏목식	3부터 10까지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간석지 • 천 해	90 이상 90 이상
	2. 투석식 등 • 간석지 • 천 해	90 이상 90 이상
	3. 침하식 • 천 해	5부터 10까지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5부터 20까지

3. 어류등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1. 가두리식	5부터 20까지
나. 축제식 양식어업	2. 삭제 <2010.8.5> 축제식	20 이상
다.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5부터 10까지
라. 바닥식 양식어업	살포식 • 간석지	90 이상
	• 천 해	90 이상

4. 복합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과 연승식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과 투석식	10부터 25까지 80 이상
라. 혼합양식 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5부터 18까지 80 이상
	2.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5부터 10까지 80 이상
	3. 침하식과 연승식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4. 가두리식과 연승식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별표 5>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제18조 관련)

1. 해조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	1 이상	20까지	200 이상
	• 지주망홍 • 부류망홍	1 이상	20까지	200 이상
나. 바닥식 양식어업	2. 연승식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1. 투석식 • 천해	30까지	20까지	200 이상

2. 패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양식어업	1. 간이식	5까지	5까지	100 이상
	2. 연승식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3. 뱃목식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나. 바닥식양식어업	1. 살포식 • 간석지	100까지	20까지	100 이상
	• 천해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2.투석식등 • 간석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 천해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다.가두리식양식어업	3. 침하식 • 천해	0. 10까지 0. 10까지	0. 5까지 0. 10까지	100 이상 100 이상
	가두리식			

3. 어류등양식어업

양식어업의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가두리식양식어업	1.가두리식	0. 10까지	0. 10까지	300 이상
나. 축제식 양식어업	2.삭제 <2010.8.5> 축제식	0. 20까지	20까지	-
다. 수하식양식어업	연승식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라. 바닥식양식어업	1. 살포식 • 간석지	100까지	20까지	100 이상
	• 천해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4. 복합양식어업

양식어업의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 리 (단위 : 미터)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양식어업	1. 건홍식과 연승식	20까지	20까지	200 이상
나. 바닥식 양식어업	1.살포식과 투석식	100까지	20까지	100 이상
다. 축제식 양식어업	축제식	0. 20까지	20까지	-
라. 혼합양식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100까지	20까지	200 이상
	2. 연승식과 천해 투석식	20까지	20까지	200 이상
	3. 침하식과 연승식	0. 10까지	0. 5까지	100 이상
	4. 가두리식과 연승식	0. 10까지	0. 10까지	100 이상

3) 개정시 법·제도 개선 항목

<표 5-7>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1-1안)

개정 전	개정 후
<p>제6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 대장에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5. 양식어장의 시설량 6. 어업의 시기 7. 면허유효기간 8. 면허일자 9.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10.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p>제6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 대장에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어업의 시기 5. 면허유효기간 6. 면허일자 7.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8.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p>제10조(어장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하여야 할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10조(어장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하여야 할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별표 2 이외에 시설의 규모, 시설방법 등은 가이드라인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18조(양식어업의 양식방법 등) ① 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어장의 수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범위에서 양식물의 종류, 시설방법, 어장오염의 정도, 해역별 특성과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18조(양식어업의 양식방법 등) ① 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은 별표 5와 같다.</p> <p>② 별표 5 이외에 양식물의 종류,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하한치 등은 가이드라인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나. 별표 2, 별표 5 통합 개선안(1-2)

1) 규제개선 방안 및 장단점 분석

<표 5-8> 규제항목별 선택 (1-2안)

개선방안	비고	법률 개정
- 양식어업의 구분	- 기존의 수산업법 제8조의 구분으로 유지	수산업법 8조
- [별표 2] 및 [별표 5]	- 기존의 별표 2와 별표 5 통합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8조 [별표 2], [별표 5]
- 양식물 규정	- 양식물 품종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별표 2], [별표 5]
- 어장의 수심	- 어장의 수심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별표 5]
- 어장면적 시설비율	- 어장면적 시설비율 재설정 및 완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어장구역의 한계	- 어장구역 한계 중 하한치의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시설규모 기준	- 시설규모 기준 삭제 - 시설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해 관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표 5-9> 규제개선에 따른 장·단점분석(1-2안)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만 변경하므로 단기적 변경 가능 - 양식물 규정 삭제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양식물 선택 가능 - 시설규모 삭제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 가능 - 어장관리의 효율성 확보 (유휴어장의 이용 등) - 별표2와 별표5가 통합하여 규칙의 간결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업 구분에 있어서 변경 불가능으로 어업인 자율성 제한 - 지역별·해역별 시설규모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비용 발생

2) 개정안

<별표 2>, <별표 5> 통합 <별표 5>

1. 해조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견홍식	5부터 18까지	1 이상	20까지	200 이상	
	• 지주망홍 • 부류망홍	5부터 18까지	1 이상	20까지	200 이상	
나. 바닥식 양식어업	2. 연승식 투석식	5부터 1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 천 해	90 이상	30까지	20까지	200 이상	

2. 패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5부터 10까지	5까지	5까지	100 이상	
	• 수하연식	5부터 10까지	5까지	5까지	100 이상	
나. 바닥식 양식어업	• 수평망식	5부터 1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2. 연승식	5부터 1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3. 뗏목식	5부터 10까지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1. 살포식	3부터 10까지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 간석지	90 이상	100까지	20까지	100 이상	
	• 천 해	90 이상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2. 투석식 등	90 이상	20까지 3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100 이상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 간석지	90 이상	20까지 3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100 이상	
	• 천 해	90 이상	20까지 3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100 이상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3. 침하식	90 이상	10까지	10까지	100 이상	
	• 천 해 가두리식	5부터 10까지 5부터 20까지	10까지	10까지	100 이상	

3. 어류등양식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1. 가두리식	5부터 20까지	10까지	10까지	300 이상	
나. 축제식 양식어업	축제식	20 이상	20까지	20까지	-	
다.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5부터 1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라. 바닥식 양식어업	살포식	90 이상	100까지	20까지	100 이상	
	• 간석지					
	• 천 해	90 이상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4. 복합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퍼센트)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어촌계 (지구별조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과 연승식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20까지	20까지	200 이상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과 투석식	10부터 25까지 80 이상	100까지	20까지	100 이상	
라. 혼합 양식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5부터 18까지 80 이상	100까지	20까지	200 이상	
	2. 연승식과 천해 투석식	5부터 10까지 80 이상	20까지	20까지	200 이상	
	3. 침하식과 연승식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0. 10까지	0. 5까지	100 이상	
	4. 가두리식 과 연승식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0. 10까지	0. 10까지	100 이상	

3) 개정시 법·제도 개선 항목

<표 5-10>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1-2안)

개정 전	개정 후
<p>제6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 대장에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5. 양식어장의 시설량 6. 어업의 시기 7. 면허유효기간 8. 면허일자 9.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10.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p>제6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줌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 대장에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어업의 시기 5. 면허유효기간 6. 면허일자 7.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8.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p>제10조(어장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하여야 할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10조(양식어업의 양식방법 및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하여야 할 양식어장의 시설기준 및 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별표 2 이외에 양식물의 종류, 시설의 규모, 시설방법, 어장 수심, 어장구역 하한치 등은 가이드라인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18조(양식어업의 양식방법 등) ① 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어장의 수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범위에서 양식물의 종류, 시설방법, 어장오염의 정도, 해역별 특성과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삭제)</p>

2. 중·장기 개선(안)

1) 규제개선 방안 및 장·단점 분석

<표 5-11> 규제항목별 선택 (2안)

개선방안	비고	법률 개정
- 양식어업의 구분	- 양식어업의 구분을 [별표 2] 및 [별표 5]의 양식어업의 종류에 포괄적으로 포함	수산업법 8조
- [별표 2] 및 [별표 5]	- 기존의 별표 2와 별표 5 통합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8조 [별표 2], [별표 5]
- 양식물 규정	- 양식물 품종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별표 2], [별표 5]
- 어장의 수심	- 어장의 수심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별표 5]
- 어장면적 시설비율	- 어장면적 시설비율 재설정 및 완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어장구역의 한계	- 어장구역 한계 중 하한치의 규제 삭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시설규모 기준	- 시설규모 기준 삭제 - 시설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해 관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표 5-12> 규제개선에 따른 장·단점분석(2안)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업의 구분 및 양식물규정의 삭제로 어업인의 자율성 최대 확보 - 양식물규정 삭제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양식물 선택 가능 - 시설규모 삭제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 가능 - 어장면적의 비율의 재성정으로 생산성 증대 - 어장관리의 효율성 확보 (유휴어장의 이용 등) - 별표2와 별표5의 중복부분을 통합하여 법적 간결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어업의 구분 삭제로 인해 어업질서의 혼란 발생 우려 높음 - 양식어종의 쓸림현상 및 과잉양식어업 발생 우려 가능 - 지역별·해역별 시설규모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비용 발생

2) 개정안(통합 별표 5)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업 구분	양식방법	시설기준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 헥타르)		어장 사이의 거리 (단위 : 미터)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단위 :%)	어촌계 (지구별조합)	어촌계 (지구별조 합) 외의 자	
가. 수하식 양식어업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연승식	5부터 1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건홍식 • 지주망홍 • 부류망홍	5부터 18까지 5부터 18까지	1 이상 1 이상	20까지 20까지	200 이상 200 이상
		간이식 • 수하연식 • 수평망식	5부터 10까지 5부터 10까지	5까지	5까지	100 이상
		뗏목식	3부터 10까지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나. 바닥식 양식어업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살포식				
		• 간석지	90 이상	100까지	20까지	100 이상
		• 천 해	90 이상	30까지	20까지	100 이상
		투석식 • 간석지 • 천 해	90 이상 90 이상	20까지 30까지	20까지 20까지	100 이상 200 이상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어류등양식	3. 침하식 • 천 해	5부터 10까지	10까지	10까지	100 이상
		가두리식	5부터 20까지	10까지	10까지	300 이상
라. 축제식 양식어업	어류등양식	축제식	20 이상	20까지	20까지	-
마. 혼합 양식어업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건홍식과 살포식	5부터 18까지	100까지	20까지	200 이상
		연승식과	5부터 10까지	20까지	20까지	200 이상
		천해 투석식 침하식과	5부터 10까지	0. 10까지	0. 5까지	100 이상
		연승식 가두리식과 연승식	5부터 10까지	0. 10까지	0. 10까지	100 이상

<표 5-13> 수산업법 개정 내용(2안)

개정 전	개정 후
<p>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複合養殖漁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결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7.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p>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양식어업(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조류, 패류 및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3.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결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4.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표 5-14>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2안)

개정 전	개정 후
<p>제8조(양식어업의 종류)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대·지주·뜸·밭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p>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패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두리양식어업: 수중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2.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뜬·밭줄·채롱(採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3.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p>③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두리양식어업: 수중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축제식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3.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뜬·밭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4.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p>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합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대·지주·뜸·밭줄 등을 이용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3. 혼합양식어업: 가두리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4. 축제식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p>제8조(양식어업의 종류)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하식양식어업: 수중에 대·지주·뜸·밭줄, 채롱(採籠)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 패류 및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 패류 및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3. 가두리양식어업: 수중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 패류 및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4. 축제식양식어업: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양식하는 어업 5. 혼합양식어업: 가두리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두 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표 5-15>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2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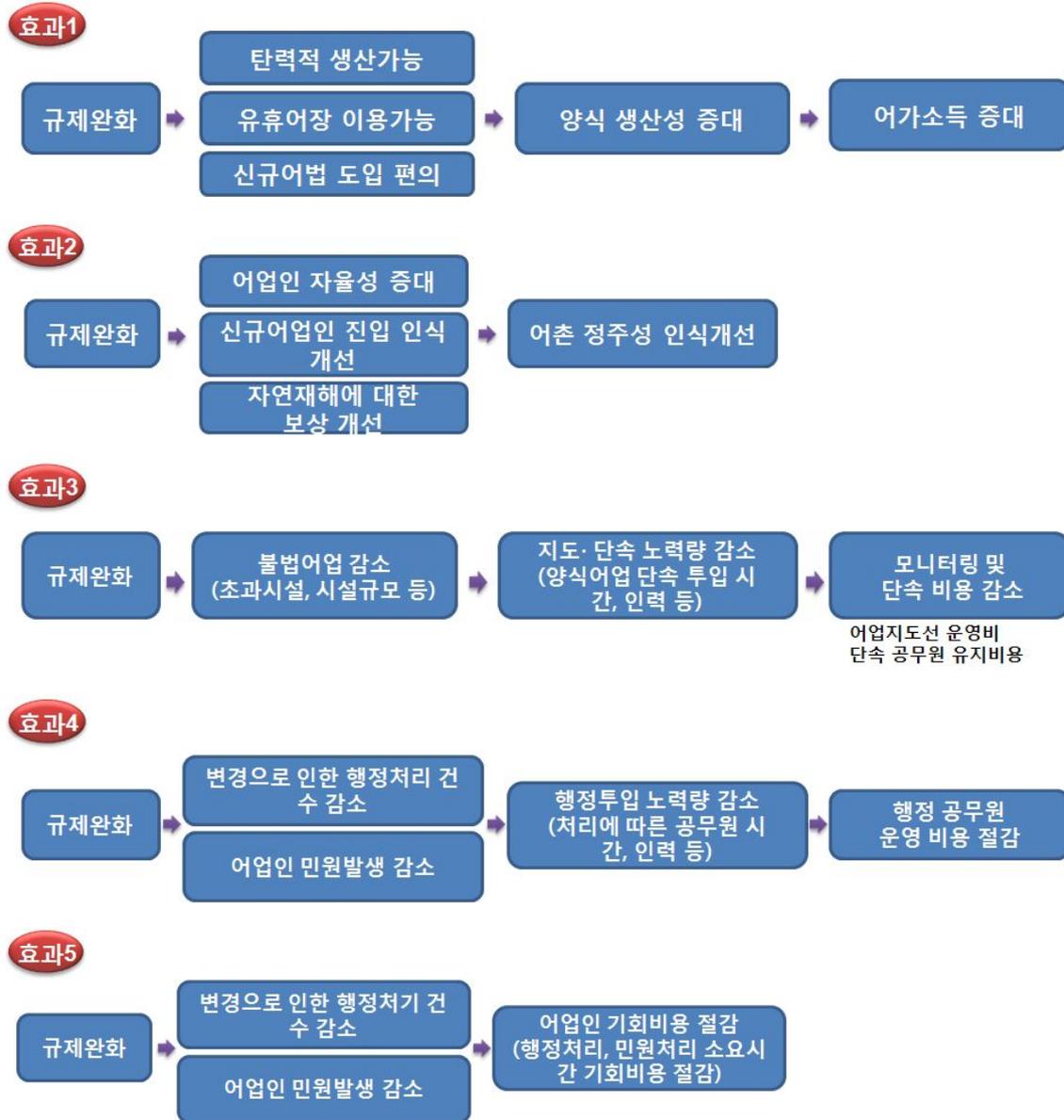
개정 전	개정 후
<p>제6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 대장에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5. 양식어장의 시설량 6. 어업의 시기 7. 면허유효기간 8. 면허일자 9.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10.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p>제6조(면허신청 및 면허 등)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관리 대장에 적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어업의 시기 5. 면허유효기간 6. 면허일자 7.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어촌계의 경우에는 어촌계명을 말한다)과 주소 8.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p>제10조(어장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하여야 할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10조(양식어업의 양식방법 및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시설하여야 할 양식어장의 시설기준 및 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별표 2 이외에 양식물의 종류, 시설의 규모, 시설방법, 어장 수심, 어장구역 하한치 등은 가이드라인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제18조(양식어업의 양식방법 등) ① 양식어업의 종류별 양식방법,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어장의 수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범위에서 양식물의 종류, 시설방법, 어장오염의 정도, 해역별 특성과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삭제)

제6장 규제완화 기대효과 분석

제1절 규제개선 효과 개요

- 규제의 완화는 양식경영성 제고, 생산량 증가, 행정비용 축소, 유힬어장 이용 가능, 어업질서 확보, 어업인 정주성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킴
- 첫째, 어가소득 증대 효과는 규제완화의 가장 중요한 기대효과라 할 수 있으며, 규제완화의 목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짐
 - 규제완화를 통하여 양식의 자율성이 확보 될 경우 이용하지 못하던 유힬어장의 이용 및 시장예측을 통하여 탄력적 생산이 가능해지며, 이는 결국 양식어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지고 오게 됨
 - 생산성의 증가는 어업인의 입장에서 어가소득의 증대라는 효과를 발생
- 둘째, 어촌 정주성 인식개선 효과는 결국 어업인 자율성 증대,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 개선 등으로 인하여 어업인이 양식어업을 영위하는데 대외 환경이 개선 됨에 따라 어업의 지속성이 이루어지며, 이는 정주환경의 개선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됨
- 셋째, 모니터링 및 단속비용의 감소효과는 규제완화로 인하여 초과시설 및 시설규모 등 불법양식어업이 감소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임. 현재 지도·단속에 투입되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 등의 노력량이 감소 됨에 따라 어업지도선 운영비, 단속 공무원 유지비용 등이 절감됨
- 넷째, 행정비용 감소 효과는 민원 및 양식어업과 관련된 행정업무가 감소 됨에 따라 행정투입 노력량이 감소하여 나타나는 효과임
- 다섯째, 어업인 기회비용 감소 효과는 규제완화에 따라 행정처리 건수가 감

소하게 되며, 현재에 발생하는 민원이 역시 감소함에 따라 어업인이 행정처리, 민원처리에 소요하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감소임. 결국 행정처리시간은 어업인이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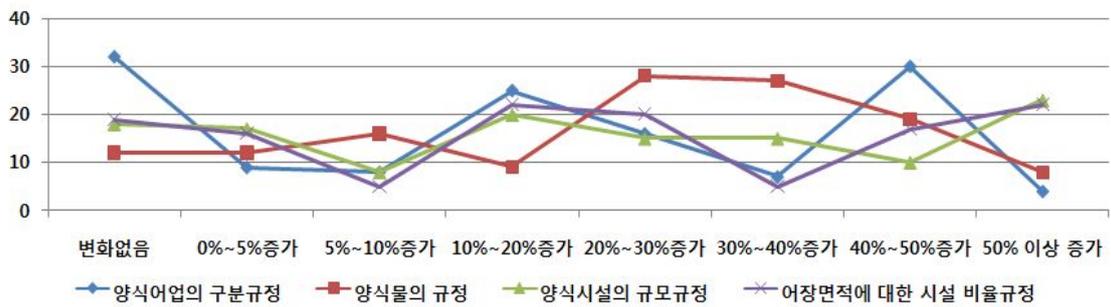
<그림 6-1> 규제완화 효과

제2절 양식수산물 생산 증대 효과 추정

- 본 연구에서는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효과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생산량 증대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였음
- 양식수산물 생산증대 효과의 추정은 생산량 증가비중 추정, 양식부류별 생산량 증가량 추정, 생산증가량 및 생산증가금액 추정의 3단계로 실시되었음
- 1단계인 생산량 증가비중 추정은 규제완화로 인하여 기대되는 생산량의 비중을 산정하는 과정임
 - 총 생산 증가비중 설문결과치 가중지수 전환법으로 증가비중값 추정
 - 설문결과의 분포 및 잔차를 고려하여 최저 및 최대구간 설정
- 2단계로 양식부류별(패류, 해조류 등 구분) 생산량 증가량 추정은 규제완화 개선안에 따른 각 규제개선 항목별로 양식부류별 영향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부류별 영향치 추정하는 단계임
- 3단계는 생산증가량 및 생산증가금액 추정으로 어업 생산통계(2010년 기준)의 천해양식 부류별 생산량 및 생산금액 이용하여 정량적 결과를 도출하였음
- 분석 결과 양식어업의 주요규제항목 중 양식물 규정에 대한 규제완화 시 생산량에 증가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음
 - 양식물(품종) 규제 완화 시 20.1%~24.5%의 생산량 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 규제 완화의 총합적 효과는 설문조사 생산량 증가 결과의 가중지수 전화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약 11.0%~13.3% 정도 현재 생산량에서 증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표 6-1> 양식수산물 생산 증대 효과 추정 방법

	양식구분	양식물	시설규모	시설비율	종합증가
보통	16.1%	22.3%	4.9%	5.3%	12.2%
최대	17.9%	24.5%	5.2%	5.7%	13.3%
최저	14.3%	20.1%	4.6%	4.9%	11.0%



<그림 6-2> 양식수산물 생산 증대 효과 추정 방법

- 규제완화 시 양식수산물의 총생산에는 1,127억원~ 1,363 억원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생산량은 패류 23.5천톤~28.5천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류별로는 가장 높음
- 이는 규제완화 시 전복 및 홍합 등 고가 어종으로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

<표 6-2> 부류별 증가 비중

구분	생산량 증가 비중
패류	60.31%
해조류	13.74%
어류등	14.50%
기타수산물·식물	11.45%



<표 6-3> 증가량 및 증가금액

	최소		보통		최대	
	증가량 (톤)	증가금액 (억원)	증가량 (톤)	증가금액 (억원)	증가량 (톤)	증가금액 (억원)
패류	23,591	338	26,062	373	28,534	409
해조류	5,375	23	5,938	25	6,501	27
어류등	5,674	615	6,268	679	6,863	743
기타수산물	4,479	152	4,949	168	5,418	184
합계	39,119	1,127	43,217	1,245	47,315	1,363

〈참고문헌〉

- 강봉모, '어업권에 대한 구체적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 김남진 외, '행정법 I', 박영사, 2008.
- 김명길, '행정벌의 법리', 법학연구 제49권 제2호
- 김종석, 김재홍, 문정숙, '외국의 규제제도 및 규제완화 추진사례 : 미국, 영국, 일본의 경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완화 시책의 평가와 경쟁력 강화방안, 심포지움자료, 1994.
- 김영훈,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선학사, 1995.
- 김용우, '규제 행정론' 서울. 대영출판사, 1996.
- 류정곤, '우리나라 수산업 여건과 자원관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수산자원 회복 계획 심포지움, 해양수산부, 2004.
- 류정곤 · 김대영 · 이정삼 · 김수진, '어업관리 수단 효과분석을 위한 생물경제모델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 박구병, '어업권 제도와 연안어장 소유 · 이용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부산수대논문집, Vol.30, 부산수산대학, 1983.
- 변충규, '수산양식개발사', 신흥출판사, 1989.
-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2010 어업경영조사보고(요약)', 2008.
- 사공영호, '규제완화 제약요인의 해소방안 모색' 한국행정연구원, 1997
- 양세식, '한국수산업 연구', 부산수산대학, 1981.
- 이용환 · 김재홍 · 이승철 · 김강수 · 홍성중, '규제완화의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93.
- 차철표, '우리나라 어업권제도에 관한 연구', 해사법 연구, Vol.6, 한국해양대학교, 1994.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구조재편 방안 연구」, 2008.
- 최병선, '정부규제론: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2
- Bolick, Clint. 'Thatcher's Revolution: Deregulation and Political Revolution,' Yale: Journal on Regulation (Summer). 1995.

- Crozier, Michel. 'Bureaucratic Phenomen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 Dempsey, Paul S. 'The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Deregulation' New York: Quorum. 1989.
- Derthick, Martha and Paul J. Quirk. 'The Politics of Deregulati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5.
- Doron, Gabriel.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an Industry: The Cigarette Cas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79.
- Downs, Anthony. 'Inside Bureaucracy Boston: Little, Brown & Co.' 1967.
- Eads, George C. and Michael Fix. 'The Reagan Regulatory Strategy: An Assessment'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1984.
- Eisner, Marc Allen. 'Regulatory Politics in Transi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 Gamble, Andrew. 'The Free Economy and the Strong State: The Politics of Thatcherism'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8.
- LaBorde, Allyson. Learning the Hard Way. 'Wall Street Journal', 1998.
- Lal, Deepak. 'Why Growth Rates Differ: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 Capability in 21 Developing Countries', UCLA. 1991.
- Maloney, Michael T. Robert E. McCormick, and Raymond Sauer. 'On Stranded Cost Recovery in the Deregulation of the U.S. Electric Power Industry'. *Natural Resources Journal*. 1997.
- Sidak, J. Gregory and Daniel F. Spulber. 'Deregulation Taking and Breach of the Regulatory Contract'. New York University. 1996.
- Vogel, Steven K. 'Freer Markets, More Rules: Regulatory Reform in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 Weidenbaum, Murray. 'Regulatory Process Reform: From Ford to Clinton', *Regulation*(Winter). 1997.
- Weingast, Barry R. 'Regulation, Reregulation, and Deregulation: The Political Foundations of Agency Clientele Relationships',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Winter). 1981.

〈부록 1〉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발포 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발포 일시 : 1986년 1월 20일

실시 일시 : 1986년 7월 1일

개정 :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2004년 8월 28일) 통과

제1장 총칙

제2장 양식업

제3장 포획업

제4장 어업자원의 증식과 보호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어업자원의 보호, 증식, 개발, 합리적인 이용을 강화하고, 양식업의 발전과 어업 생산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어업생산의 발전을 촉진하며, 이상적인 사회주의 건설과 국민의 필요에 의해 본 법률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 간석,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관할하는 모든 기타해역에서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의 포획 및 양식 등의 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면 이 법률을 준수해야한다.

제3조 국가는 어업생산에서 양식을 가장 중점으로 두며 양식, 포획, 가공도 동시에 실시한다.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각각 중점이 되는 방침이 있다.

각급 인민정부는 반드시 어업생산을 국민경제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조치를 취하고 수역의 일관적인 계획과 종합적인 이용을 강화한다.

제4조 국가는 어업과학기술연구를 격려하고, 선진기술을 널리 보급하며, 어업과학기술수

준을 향상시킨다.

제5조 어업자원의 증식과 보호, 어업생산의 발전 어업과학기술의 연구 등의 방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는 개인이나 조직은 각급 인민정부에서 정신적 혹은 물질적 보상을 한다.

제6조 국무원어업행정주관부문은 전국의 어업 업무를 주관한다.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문은 행정구역내의 어업업무를 주관한다. 현 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은 중점 어업수역과 어항에 어정감독관리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현 급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과 그 소속된 어정감독관리 기구는 어정 조사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어정 조사인원은 어업행정주관부문과 그 소속 어정감독관리 기구에서 위임한 임무를 실행한다.

제7조 국가는 어업의 감독 관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행하며 급에 따라 관리한다. 해양어업, 국무원에서 정한 국무원 어업행정 주관부문과 그 소속되는 어정감독관리 기구에서 감독 관리하는 해역과 특정 어업 자원어장 이외에는 인접한 해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에서 감독 관리한다.

강, 호수 등의 수역에서의 어업은 행정구획에 따라 관련된 현 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에서 감독 관리한다. 행정구역을 걸쳐있는 경우 관련된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협상하여 관리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혹은 한 단계 높은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과 그 소속 어업감독관리 기구에서 감독 관리한다.

제8조 외국인 외국어업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관할수역에 진입하고, 어업생산에 종사하거나 어업자원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국무원의 관련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본법을 존중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타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체결한 조약이나 협정이 있으면 조약과 협정에 따라 처리 한다.

국가 어정어항 감독 관리기구 대외행사 어정어항 감독 관리권

제9조 어업행정주관부문과 그 소속된 어정감독 관리기구 및 그 직원은 어업생산경영활동에 종사 참여하여서는 안된다.

제2장 양식업

- 제10조 국가는 전민소유제단위(국가가 소유한 조직 등), 집체소유제단위(지방에 농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조직 등)와 개인이 양식에 적합한 수면과 간석지를 이용하는 것을 격려하여 양식업을 발전시킨다.
- 제11조 국가는 수역의 이용에 대하여 일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양식업에 사용되는 수역과 간석지를 확정할 수 있다. 조직과 개인은 국가계획에서 확정된 양식업에 사용되는 국가의 수역 간석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사람들은 현 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에 신청해야한다. 이에 해당하는 급의 인민정부에서 양식증서를 심사 발행하고 그 수역 간석지에서 양식생산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양식증서의 구체적인 발급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집체적으로 소유한(지방의 농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혹은 전 인민소유(국가소유)의 농업집체 경제조직에서 사용하는 수역 간석지는 개인 혹은 집체(지역농민들)이 책임지고 떠맡아서 양식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 제12조 현 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양식증서를 심사 발급할 때 현지의 어업생산자를 우선으로 한다.
- 제13조 당사인이 국가에서 계획 확정하여 양식업에 사용되는 수역과 간석지에서 양식함에 있어서 생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률규정의 따라 처리하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느 한쪽도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 제14조 국가 건설로 인하여 집체적으로 소유한(지방의 농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수역, 간석지를 사용하게 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의 관련 토지징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5조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상품어류 생산기지 와 도시, 교외 지역의 중요한 양식수역 보호를 강화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6조 국가는 수산 우량품종을 골라서 육성, 배양하며 널리 보급토록 격려 지지한다. 수산신품종은 반드시 전국수산원종(全國水產原種)과 양종심정위원회(良種審定委員會)의 심사와 결정을 거쳐야 하며 국무원 어업행정 주관부문에서 공고한 후에 널리 시행한다. 수산종묘의 수입, 수출은 국무원 어업행정 주관부문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에서 심사하여 비준한다. 수산종묘의 생산은 현 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에서 심사하여 비준한다. 어업 생산자 스스로 육성하여 스스로 사용하는 수산종묘는 제외한다.

제17조 수산종묘의 수입수출은 검역을 실시하여 병충해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는다. 구체적인 검역작업은 동식물 수출입경 검역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외국에서 들여온 유전자가 변형된 수산종묘는 반드시 안전성평가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업무는 국무원에서 정한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8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은 양식생산 상의 기술지도와 병충해업무를 강화해야한다.

제19조 양식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유독 유해물질 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20조 양식 생산에 종사하면 수역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양식밀도를 과학적으로 조절하며, 합리적으로 사료와 비료를 투입하고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 수역내이 오염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부록 2〉 저지양성수산종묘관리법률

저지양성수산종묘관리법률은 이미 성 인민정부 제52회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공포되어 있다. 2001년 6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제1장 총칙

제1조 수산종묘관리를 강화하고 수산종자자원의 보호와 합리적인 이용 수산종묘의 품질을 높이고 수산양식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과 관련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성의 실질현황에 맞게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률에서 칭하는 수산종묘는 수산양식 증식에 사용되는 원종(原種), 양종(良種)과 종묘를 가르킨다.

제3조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수산종묘의 선육(選育/골라 기르다.), 생산, 경영, 사용과 관리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은 <어업법>과 관련 법규 본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역내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수산종묘의 검사 검역관리는 관련 동식물입출경검감시, 검역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 관리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수산종묘업무를 주관한다. 공상, 동물검역, 공안, 기술감독, 환경보호, 수리공사, 물가, 관세, 교통 등의 부문은 각자의 직책의 준하여 수산종묘 관리업무를 한다.

제5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산종묘의 과학기술연구를 격려하고 종자자원의 보호와 우량품종의 선육(選育/골라 기르다.),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지

지한다.

제2장 종자자원보호

제6조 성 인민정부는 현 에서 비교적 높은 경제가치와 유전, 육종(育種/종자를 기르다)가치가 있는 수산종묘자원의 주요 성장 번식구역에 수산종자자원 보호구를 설립한다.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문의 비준과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조직 혹은 개인은 수산종자자원보호구에서 포획활동을 할 수 없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수산종자의 생존과 번육(繁育/번식시키다.), 수역환경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수산종묘 번육(繁育/번식시키다.), 수역에 오염물 혹은 폐기물을 쏟아내는 것을 금지하고 수질이 국가에서 규정한 어업수질표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한다.

제8조 수산신품종은 반드시 성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의 심사 동의 후에 관련프로세스에 따라 국무원어업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요청하고 승인이 없으면 보급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 어떠한 조직, 개인은 육성이 가능한 개체를 교잡하거나 생물프로세스의 변화를 통하여 유전적인 성질이 띤 개체나 그 후대를 변화하여서 강과 호수 저수지 해역과 기타 수역에 투입하여서는 안된다.

육성이 가능토록 다른 생물끼리 교배한 개체와 생물 프로세스 등의 기술을 통하여 유전성질이 변한 개체와 그 후대를 양식하는 그 장소는 반드시 엄격하게 격리되어야 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어업의 중점보호 품종의 유체(幼體/유생), 치체(稚體/어린몸체), 묘종은 포획을 금지한다. 과학연구 인공 육성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분명히 잡아야할 필요가 있으면 소재한 지역의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에 신청하여야 하며 성 인민정부 어업행정관리부문에서

승인하고 전문 포획허가장을 받은 후에 포획이 가능하다.

어업증점보호품종과 그 유체(幼体/유생), 친체 묘종의 규격은 성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에 어업자원과 생산 상황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제11조 희귀하고 위기에 처한 수산 야생동물종묘의 보호와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야생동물보호법>과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3장 생산 경영관리

제12조 성 인민정부 어업행정 관리부문은 생산발전의 수요, 자연조건과 종자자원현황에 근거하여 전 지역 수산원(水産原), 양종(良種)체계 건설계획을 조직 제정한다.

제13조 수산종묘 생산실행 허가증 제도는 생산자 스스로 육성 스스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가 급 원종장(原種場), 양종장(良種場)의 생산허가증을 신청하여 받은 다음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성 급 원종장(原種場), 양종장(良種場)의 생산허가증은 성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에서 심사 비준하여 증서를 발행하고, 시 급 원종장(原種場), 양종장(良種場)의 생산허가증은 시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에서 심사 비준하여 증서를 발행하고 성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이 접수하여 보고한다. 종묘장의 생산허가증은 소재한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어업행정 관리부문에서 심사하여 증서를 발행하고 한 단계 위의 인민정부어업주관부문이 접수할 수 있도록 보고한다.

생산허가증은 발행기관에서 2년에 한차례 검증작업을 한다.

생산허가증의 검사발행 검증방법은 성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에서 제정하고 성 인민정부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보고한다.

제14조 원종장(原種場), 양종장(良種場)의 생산허가증을 신청하여 받는다. 소재한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어업행정 관리부문에 신청하여야 한다. 급에

따른 심사 동의 후에 심사발행권이 있는 인민정부 어업행정 관리부문에
서 심사하여 발행한다.

종묘생산 허가증은 현 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에서 직접
심사하여 발행한다. 심사기관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심사발행기관은 접수된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증서를 발행한다. 심사 비준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5조 생산허가증을 신청하여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
다.

- (1) 고정적인 생산지가 있으며 물이 충분하고, 샤월실의 수질이 어업용 수
질기준에 부합한다.
- (2) 환경보호부문에서 발행한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가 있고 오염방지 조치
가 국가 환경보호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3) 수산종묘생산에 요구되는 설비, 시설, 실험실 등의 생산조건이 부합되
어야 한다.
- (4) 종자 표준의 수산종묘 번식 친본(親本/동식물의 교배에 사용되는 수컷
혹은 암컷 개체)이 부합되어야 한다.
- (5) 수산종묘생산에 적합한 전문 기술인원이 있고 전문직종인 수산종묘검
증에 합격한 인원이 있다. 원종장(原種場), 양종장(良種場)을 세우려면
성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에서 조직, 제정한 원(原), 양종장(良種)
체계 건설계획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6조 생산허가증에 심사하여 결정된 장소 품종 등의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
을 때에는 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심사하여 증서를 발급받는 수
속을 밟아야 한다.

제17조 수산종묘생산허가증은 사고팔거나 대여 또는 기타방식으로 넘길 수 없으
며 위조, 변조, 지우고 고쳐서는 안된다.

제18조 수산종묘의 생산은 반드시 상응하는 생산기술조작규정과 검증 검역규정

에 따라 실시한다.

제19조 수산종묘생산기업은 반드시 기술 자료와 문서 관리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친본(親本/동식물의 교배에 사용되는 수컷 혹은 암컷 개체)을 받은 시간 중의 원산지 사용기한 번육(繁育/번식시키다.), 선별하는 작업, 새롭게 바꾼 작업 등의 상황을 상세하기 기록 하고 보존한다. 원종장(原種場), 양종장(良種場)에 공급되는 친본(親本/동식물의 교배에 사용되는 수컷 혹은 암컷 개체)과 후대의 친본(親本/동식물의 교배에 사용되는 수컷 혹은 암컷 개체)은 관련기술문건자료에 덧붙인다.

제20조 양종장(良種場) 종묘장은 친본(親本/동식물의 교배에 사용되는 수컷 혹은 암컷 개체)을 정기적으로 바꾸어서 친본(親本/동식물의 교배에 사용되는 수컷 혹은 암컷 개체)품질을 확보한다. 경제적으로 품종이 다른 생물끼리 교배한 친본(親本/동식물의 교배에 사용되는 수컷 혹은 암컷 개체)은 셀룸개체이다. 육성이 가능한 친본(親本/동식물의 교배에 사용되는 수컷 혹은 암컷 개체)과 그 종묘는 번육(繁育/번식시키다.) 친본(親本/동식물의 교배에 사용되는 수컷 혹은 암컷 개체)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21조 수산종묘의 수출입은 성 인민정부 어업행정 관리부문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수산종묘의 경영은 반드시 종묘품질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게다가 품질합격증과 상표를 부가적으로 붙여야 한다. 수산종묘 경영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측량기구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역을 넘는 수산종묘를 경영하게 되면 법에 근거하여 검역합격을 받아야 하고 검역합격증을 덧붙여야 한다. 수산종묘의 방역, 검역 장업은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어업행정 주관부문에서 조직 실시한다.

제23조 수산종묘 품질기구에 종사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자질을 구비하여야 하며 성 품질 기술 감독과 성 어업행정 부문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제24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 관리부문은 수산종묘품질과 경영활동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법정프로세서와 권한이행, 책임에 근거하여 수산종묘생산 경영의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유지 보호한다.

제25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 관리부문이 법에 근거하여 감독 조사 직책을 수행 할 때 검사받는 조직과 개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복제, 열람할 수 있으며 생산 경영하는 곳에 들어가서 검사 샘플을 뽑을 권리가 있다.

검사 받게 되는 조직, 개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관련문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26조 종묘사용자는 종묘의 품질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종묘를 판매하는 종묘의 경영자는 배상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배상한 후의 책임은 종자생산자와 혹은 기타경영자에게 있다. 경영자는 생산자 혹은 기타 경영자에게 재촉하여 받아낼 권리가 있다.

제4장 법률책임

제27조 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어업법>과 관련법률 법규에는 처벌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본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수산종묘생산에 종사하기위한 생산허가증을 미취득하면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어업행정 관리부문에서 기한 내에 수정을 요구하며 종묘와 위법소득은 몰수하고 5,000위안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본 법률의 제6조 2항,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현 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 관리부문에서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지시하고 1,000위안 이상 10,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0조 행정 법률 집행 관계자는 직책에 충실하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 아래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관련부문에서 관리권한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 (1) 법에서 정한 권한과 프로세스 조건으로 심사하여 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위반
- (2) 불법으로 감독조사를 진행
- (3) 불법으로 행정처벌을 실시
- (4) 불법생산 경영 행위를 지지 혹은 비호
- (5) 생산 경영기술비밀 누출
- (6)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에서 행정처분의 행위를 한경우

제31조 본 법률 규정을 위반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기관의 법에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부록 3〉 양식어업 규제완화를 위한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양식어업의 규제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실시하는 설문입니다. 현행 규제에 대한 인식 및 규제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수산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양식어업의 규제완화를 위한 기본 자료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사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으며**, 본 연구목적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분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1.9

연구책임자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소장 이 광 남

담당연구원 : 박광호 02-589-4610

1. 양식어업 규제 인식도 조사

1. 귀하께서 현재 양식어업에 있어서 규제정도가 어업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3번으로 가세요) ② 그렇지 않다.(☞ 2번으로 가세요)

2.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셨다면 귀하께서는 어떠한 점에서 제도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양식어업의 구분 규정(해조류, 패류, 어류 등 구분)
- ② 양식어업의 종류 규정(수하식, 바닥식, 가두리식 등 구분)
- ③ 양식방법의 규정(건홍식, 투석식 등 구분)
- ④ 양식물의 규정(김, 파래, 미역, 다시마 등)
- ⑤ 양식시설의 규모 규정(100제곱미터당 1책 등 규정)
- ⑥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 규정(5~18% 등 규정)
- ⑦ 기타 규정(_____)

3. 양식어업과 관련한 제도상 규제에 관한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규정항목에 대한 귀하의 개선 필요성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매우불필요 매우필요→										보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양식어업의 구분 규정 (해조류, 패류, 어류 등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양식어업의 종류 규정 (수하식, 바닥식, 가두리식 등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양식방법의 규정 (건홍식, 투석식 등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양식물의 규정 (김, 파래, 미역, 다시마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양식시설의 규모 규정 (100제곱미터당 1책 등 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 규정 (5~18% 등 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I. 양식어업 규제개선 효과 측정

4. 귀하께서는 양식어업 규제개선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어장관리의 효율성 증가(유휴 어장의 이용 가능 등)
- ② 어업소득의 증가
- ③ 행정비용의 감소(불법어업감시 및 면허관리 비용 등)
- ④ 불법·부정시설물의 감소
- ⑤ 기타(_____)

5. 귀하께서는 현재 양식어업의 규제 중 해당 내용이 삭제 또는 개선될 경우 생산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구 분	생산량 감소	변화 없음	0% ~5% 증가	5% ~10% 증가	10% ~20% 증가	20% ~30% 증가	30% ~40% 증가	40% ~50% 증가	50% 이상 증가
양식어업의 구분 규정 (해조류, 패류, 어류 등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양식물의 규정 (김, 파래, 미역, 다시마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양식시설의 규모 규정 (100제곱미터당 1척 등 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 규정 (5~18% 등 규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양식어업의 구분 규정 및 양식물의 규정, 을 완화 또는 삭제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문제점없음				보통			매우높음→		
특정 품종의 양식 집중 현상 (전복, 홍합 등 수익성 높은 품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양식시설물의 과잉설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양식수산물 가격하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투기목적의 양식장 이용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II. 사회경제적 특성조사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상의 필요를 위하여 몇 가지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단지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될 뿐이니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성별	결혼여부	연령	가족 구성원수
(남 / 여)	(기혼 / 미혼)	만 ()세	(명)

1. 귀하의 종사하시고 있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양식업 구분	
양식업 종류	
주요 양식 품종	

3. 귀하께서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 _____년